

발 간 등 록 번 호

11-1760000-000010-14

www.mpm.go.kr

공직윤리 업무편람



2020. 6.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인사혁신처

발 간 사

2020년은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지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1년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강화하고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며 기관별 직무관련 주식취득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령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한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과 개정 법령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보완하여 공직윤리 업무담당자들이 공직윤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공직 윤리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직윤리업무편람』이 각 기관에서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업무담당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이 정민

차 례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3
I. 목 적	6
II.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6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2. 주식백지신탁제도	6
3. 선물신고제도	6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7
5. 징계 및 벌칙	7
가. 해임 또는 징계 / 7	나. 형벌 / 8
다. 과태료 / 8	라. 시정권고 / 9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	10
III.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10
IV. 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14
1. 재산등록 및 심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14
2.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대상자 조정	15
3.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16
4. 선물신고 사항의 효율적 관리 및 이관	16
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합리적 운영	17
6. 과태료 미비 보완	18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21
I. 재산등록	24
1. 등록대상	24
가. 재산등록의무자 / 24	
나.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 / 28	
다. 등록대상 재산 / 29	
2. 재산등록 기관	32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33
가. 최초 재산등록 / 34	
나. 변동신고 / 34	
4.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37
가.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 37	
나.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 39	
다.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수정 / 40	
5. 재산등록(신고) 요령	41
가.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방법 / 41	
나.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 41	
다.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 42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61
7. 고지거부제도	62
가. 고지거부란? / 62	
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 63	
다. 제출서류 / 64	
라. 고지거부 허가요건 / 64	
마. 고지거부 허가권자 / 64	
바. 고지거부 신청시 유의사항 / 65	
8.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70
가. 제도개요 / 70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70	
다. 처리절차(윤리업무 담당자) / 71	
II. 재산공개	76
1. 공개대상자	76
2. 공개시기 및 내용	78
3. 공개주체	78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79
가. 최초신고사항 공개 / 79	
나. 변동신고사항 공개 / 79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80
가. 작성시 유의사항 / 80	
나.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81	
III.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92
1. 제도개요	92
2. 허가사유	92
3. 허가권자	93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93
5. 위반시 제재	93
IV. 위반시 제재	100
1. 재산등록 거부죄	100
2.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100
3. 성실등록의무 위반	100
4. 주식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 위반	101
5.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위반	101
6.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101
7. 비밀엄수 의무 위반	102
8.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102
9.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103
10.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103
11. 출석거부의 죄	103
12.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103
13.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04
제3장 재산심사	105
I. 재산심사 개요	108
1. 심사의 내용	108
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 108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 108	



2. 심사기한	109
가. 재산공개 대상자 / 109	나. 비공개 대상자 / 109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	110
가. 보완명령 / 110	나. 소명요구 / 110
다.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 110	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 110
마. 출석요구 / 111	바.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111
사.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 112	
4. 심사결과의 처리	112
가. 법적조치 / 112	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 / 113
다.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113	
5. 심사관할	114
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 / 114	
나. 심사권의 위임 / 115	
II.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19
1. 재산심사 절차	119
2. 단계별 세부사항	120
가.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 120	나.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120
다. 심사 실시 / 127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 128
마. 심사결과 조치 / 129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130
가. 친족사항 / 130	나. 부동산(토지) / 131
다. 부동산(건물) / 132	
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133	
마. 현금 / 134	바. 예금 / 134
사. 증권 / 136	아. 채권·채무 / 137
자.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137	
차. 회원권 / 137	카. 지식재산권 / 138
타.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138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63
I. 취업제한제도 개요	165
1. 취업의 범위	166
2. 취업심사요건	166
3. 취업심사대상자	167
4. 취업제한기간	173
5. 취업심사대상기관	174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그 규모·범위 / 174	
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 및 고시 / 180	
6.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182
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182	
나.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183	
7.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185
8. 취업제한의 예외	187
가. 취업승인 / 187	
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 189	
9. 취업심사 시 고려사항	189
II.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90
1.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190
2.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절차	191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제출 / 191	
나. 소속기관장의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검토 및 이송 / 192	
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조사·확인 및 이송 / 193	
라. 심사·결정 사항의 통지 / 193	
3.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193
가. 확인·조사 및 검토사항 / 193	나. 제출서류 / 194
4. 우선취업제도	194
가. 우선취업제도 내용 / 194	나. 우선취업 신청 / 195



- 다. 우선취업 신청사유 / 195 라. 우선취업의 승인 / 195
- 마. 우선취업 심사결과의 통지 / 195 바. 우선취업 신청자의 취업심사 / 195

III.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197

- 1. 취업여부 확인 내용 197
- 2. 조사방법 197
- 3. 조사결과의 보고 197
- 4. 자료제출 요구 198
- 5. 조사결과 조치 198

IV.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200

- 1.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0
 - 가. 취업해제 조치 / 200 나. 처벌 / 201
- 2. 해임요구 불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 203
 - 가. 제재내용 / 203 나. 과태료 부과 절차 / 203
 - 다. 업무 흐름도 / 203

V.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204

- 1.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204
- 2.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204
- 3. 공시하는 항목 204
- 4.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204
- 5.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5

제5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207

I. 업무취급 제한 209

- 1.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209
 - 가. 취급금지내용 / 209 나. 대상자 / 209
 - 다. 적용대상업무 / 209
 - 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 210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2) 업무취급 금지	210
가. 업무취급 금지 내용 / 210	나. 대상자 / 211
다. 적용기간 / 211	라. 적용대상 업무 / 211
마.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211	
3. 업무취급승인제도	212
가. 내용 / 212	나. 대상자 / 213
다. 승인사유 / 213	라. 승인 절차 / 213
4. 위반시 제재	214
II.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216
1.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216
가. 대상자 / 216	나. 금지대상 / 216
2.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신고	216
가. 신고대상자 / 216	나. 신고절차 / 216
다. 신고자 보호 / 217	
3.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218
가.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청탁 금지 / 218	
나.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 218	
4. 위반시 제재	218
제6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219
I.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222
1. 대상자	222
2. 대상주식	222
가. 대상주식의 범위 및 하한가액 / 222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예외 / 223	
3. 신고기준일	225
II. 주식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226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226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227

III.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228
1.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228
가. 체결시기 / 228	나. 수탁기관 / 228
다. 백지신탁계약의 요건 / 228	
라.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229	
2.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230
가.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230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 230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231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231	
3.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231
IV.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233
1.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233
가.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233	나. 제출서류 / 233
다. 철회 및 각하 / 234	
라.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 234	
2.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235
가. 심사기간 / 235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235
다. 결정유형 / 235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 235
마.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236	
3. 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236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 / 236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통지된 주식 / 236	
다.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해야 하는 경우 / 237	
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설치	238
V. 직무 회피	240
1. 적용 대상	240
2. 회피 대상 직무	240
3. 직무회피 기간	240



- 4. 직무회피 방법 241
- 5. 직무회피의 예외 241
- 6.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241
 - 가. 신고대상 및 시기 / 241 나. 관련서식 및 신고기관 / 241
 -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 241
- VI. 의무위반시 제재 242
 - 1.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관여 위반 시 제재 242
 - 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243
 - 3.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243
- VI. 직무관련 주식의 신규취득 제한 243
 - 1. 적용 부서(업무) 범위 243
 - 2. 적용 대상 244
 - 3. 제한대상 주식 244
 - 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 / 244 나. 예외적 취득 허용 / 244
- 제7장 선물신고 247**
 - I. 선물신고 내용 250
 - 1. 선물신고제도 개요 250
 - 2. 신고의무자 250
 - 3. 대상선물 250
 - II.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250
 - 1.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250
 - 2. 신고서 접수(소속기관·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251
 - 3. 선물이관 절차(등록기관의 장) 251
 - III. 선물의 처분 253
 - 1. 처분대상 253



2.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253
3. 매각 대금의 처리	253
IV.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253
1.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253
2.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253
제8장 공직유관단체	261
I. 공직유관단체 개요	263
1. 공직유관단체 개요	263
2. 공직유관단체 지정효과	263
II.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264
1.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264
2. 지정제외 등	264
III. 재산등록·공개대상자	265
1.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 대상자	265
2.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	265
제9장 공직자윤리위원회	273
I.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275
1. 설치근거	275
2. 설치현황	275
II. 위원회 구성	276
1. 공직자윤리위원회	276
가. 구성 / 276	나. 임기 / 276
2. 분과위원회	277

III. 기능 및 권한	278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278
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278	나. 심사결과의 처리 / 278
2. 재산공개 및 기타	279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	279
4.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	279
5. 취업이력 공시	279
6.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279
7.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80
IV. 직권 재심사	280
V. 회의·의결	280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제1장 공직윤리시스템 이해	287
I. 용어의 이해	289
II. 재산신고의 종류	290
III. 업무 흐름도	291
1. 수시 신고	291
2. 정기변동신고	293
3. 재산심사	294

제2장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업무하기	295
I. 시스템 사용준비	297
1. 사전준비	297
가. 시스템 사용 신청 / 297	
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신청(교육청 등) / 297	
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신청 / 297	
2. 시스템 로그인	303
가. 프로그램 설치 / 303	나. 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 303
다. PC승인(업무용PC 교체 및 자리아동시) / 304	
라. 초기화면 / 305	
II. 수시신고	306
1. 신고서 생성	306
가. 최초신고(신규임용/승진) / 306	나. 의무면제신고 / 309
다. 퇴직신고 / 310	라. 재등록신고 / 311
마. 재공개신고 / 312	
2.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확인	313
3. 고지거부 심사	315
4. 수시조회대상자 선정 및 확정	317
5. 신고서 제출확인	320
6.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321
7. 재산공개(공개대상자)	322
가. 공개목록 관리 / 322	나. 공개목록 수정 / 323
III. 정기변동신고	325
1.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마감 및 확인	325
2. 정기조회 대상자 선정 및 확정	325
3. 정기자료 의뢰	328
4.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및 신고서 생성	331
가. 사전준비 / 331	나.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 332
다. 신고서 생성 / 333	



5. 고지거부 심사	335
6. 신고서 제출확인	335
7.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335
8. 재산공개(공개대상자)	335
IV. 의무자 관리	336
1. 전입·전출	336
2. 심사관할권 조정	338
3. 신고유예	339
4. 신고기간 연장 신청	341
5. 신고면제	342
V. 심사 관리	343
1. 심사자료 관리	343
가. 조회차수 생성 / 343	나. 심사대상자 선정 및 확인 / 345
다. 심사자료 의뢰요청 / 348	라. 회신자료 검증 및 확정 / 352
마. 회신자료 조회 / 354	바. 통보비 확인 및 처리 / 355
2. 재산심사	356
가. 심사담당자 지정 / 356	나. 자료대조(일괄대조) / 357
다. 개별 심사 / 357	라. 심사보고서 작성 / 374
마. 보완신고서 생성 / 377	

제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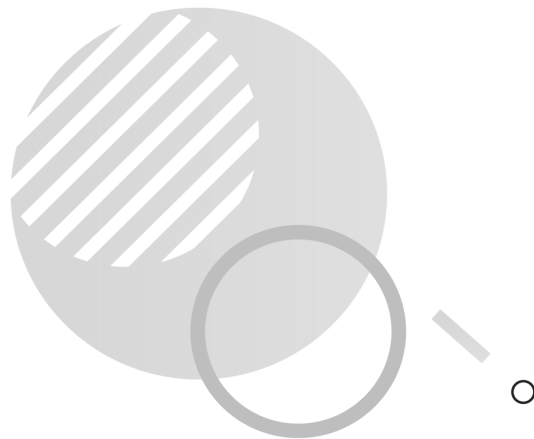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공직윤리제도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장	재산심사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5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6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7장	선물신고
제8장	공직유관단체
제9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1 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연혁

-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공무원 선서 및 공무원헌장 등이 있음
- 4. 19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가 자유당 정부 시절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부정 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산등록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5.16으로 폐기되었으며 1964. 7월 총리지시로 3급 이상 공무원 및 4급 행정기관장 13,003명이 제1회 재산신고를 한 바 있음
-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1.12.31 「공직자윤리법」이 제정(1983. 1. 1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제도 및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한정하였음
-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자진 재산공개로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및 개혁 의지 실천을 위하여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재산공개 제도화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의 의무화를 규정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본틀을 마련함
- 국민의 정부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1. 1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의 주식투자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범위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유예제도를 도입함
-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12월 가액변동신고제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고지거부 사전 허가제 등을 도입함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2009년 2월 혼인한 여성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대상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하고, 2011년 7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로펌·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재산공개자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금지,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등을 도입함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민관유착 관행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비영리분야까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제한기간을 연장(퇴직 후 2년 → 3년)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확대(부서 → 기관)하고 취업이력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5년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관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직무회피제 등을 도입함

I 목 적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 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II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 등록재산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2.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사무 관장 국)·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완료시까지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3.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 신고 선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이 금지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급이 금지되며 업무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신고를 해야 함

5. 징계 및 벌칙(법 제6장)

가. 해임 또는 징계(법 제22조)

1.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기한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변동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3-14. 백지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14-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했거나 관여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5.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요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 16.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은 경우
- 17. 퇴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8.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나. 형벌(징역 또는 벌금)(법 제24~2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재산등록 거부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조(출석거부죄)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8조제2항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다. 과태료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재산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장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기한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요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6.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했거나 관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은 경우
8.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취업이력공시제를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라. 시정권고(법 제2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법 제20조의2)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III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 공직자윤리법에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인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특정분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용됨

참고

「공직자윤리법」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구 분 (관련 법 조문)	대통령령	규칙				조례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 제1항 제13호)	○	○	○	○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3조의2 제2항)	○					
등록대상재산 가액산정 (법 제4조 제3항, 제4항)	○					
형성과정 기재대상 재산 (법 제4조 제5항)	○					
등록기관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3항)	○					
주식거래내역 신고 범위 및 방법 (법 제6조의2 제2항)	○					
변동사항 신고유예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법 제6조의5 제6항)	○	○	○	○	○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내용 자료제출 요구 (법 제8조 제5항)	○	○	○	○	○	
재산형성과정 소명 및 자료제출 (법 제8조 제15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자격·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등 (법 제9조 제4항, 제6항)	○	○	○	○	○	○
재산공개 범위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12호)	○					

구 분 [관련 법 조문]	대통령령	규칙				조례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법 제10조의2 제5항)		○			○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심사 (법 제12조 제5항)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법 제14조의4 제1항, 제5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법 제14조의5 제6항, 제11항)	○					
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 제2항)	○					
주식백지신탁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 (법 제14조의8 제3항)	○					
주식 매각 또는 신탁사실, 처분사실 공개 방법 (법 제14조의14 제3항)	○	○	○	○	○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 (법 제14조의15 제4항)	○	○	○	○	○	○
선물신고 가액 (법 제15조 제2항)	○					
선물의 관리·유지 (법 제16조 제2항)	○					○
취업제한 관련 업무관련성 범위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범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항)	○	○	○	○	○	

구분 [관련 법 조문]	대통령령	규칙				조례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	
특정분야 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 제1항)	○	○	○	○	○	
특정분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법 제17조 제3항)	○	○	○	○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신청 및 심사결과 통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	○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기관 범위 및 승인절차 (법 제18조의2 제4항)	○	○	○	○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내용과 제출절차 (법 제18조의3 제3항)	○	○	○	○	○	
청탁·알선 신고 절차 및 방법 (법 제18조의4 제9항)	○	○	○	○	○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법 제19조의2 제4항)	○	○	○	○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관리와 결과의 공개 (법 제19조의3 제3항)	○	○	○	○	○	
취업이력공시 내용 및 절차, 취업사실 신고 내용 및 절차 (법 제19조의4 제3항)	○	○	○	○	○	
연차보고서 작성 (법 제20조의2 제2항)	○					
법 시행 필요사항의 위임 규정 (법 제21조)	○	○	○	○	○	○

IV 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사항('20.6.4. 시행)

1. 재산등록 및 심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시 특정재산의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
-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및 증빙자료 확보기간 확대
 -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대상을 비공개대상자까지 확대
 - 형성과정 소명시 과거 5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 개정 전 : 형성과정 소명 요구는 공개대상자에 한해 가능, 소명시 과거 3년간 자료 제출

☞ '20. 6. 4.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

- 법무부 조사의뢰 요건 확대
 - 직무와 관련 뇌물수수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에 조사의뢰할 수 있도록 요건 추가
 - * 개정 전 : 거짓등록,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의뢰
- 비상장주식의 실체가치 반영
 - 종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거래가격,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함
 - * ①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②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③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로서 ④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 '20. 6. 4.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의무면제신고 횟수의 합리적 조정

- 의무면제 신고를 퇴직신고와 마찬가지로 등록의무에서 제외되었을 때 한 번만 하도록 개정
 - * 개정 전 : 의무면제신고 1년 후 재산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함

○ 10월 이후 재산신고자의 정기변동신고 시기 명확화

-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자는 그 해의 정기변동신고를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 전 : 10월 1일 등록의무자가 된 자는 3개월 후 변동신고도 해야 함

☞ '19. 12. 3.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대상자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 재산등록 : 4급 이상 → 4급 이상 +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추가
- 취업심사 : 4급 이상 → 7급 이상

☞ 취업심사는 '20. 7. 5.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 재산등록·취업심사 : 임원급 → 수석급이상 직원

☞ 취업심사는 '20. 7. 5.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실무직의 취업심사 완화

-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면제

☞ '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축소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

3.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사유 보완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창업을 위한 신규주식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
 - * 단, 이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백지신탁 해지사유 확대

- 신탁자가 사후에 고지거부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자등의 이해관계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기관별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 기업관련 정보 획득 또는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기관장이 관련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음
 - * 업무의 범위는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각호(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준용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

-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규 위원 위촉시까지 임기 종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5년 이상, 금융관련 분야 5년 이상,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등

☞ 위원 자격은 '20. 6. 4. 이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

4. 선물신고 사항의 효율적 관리 및 이관

○ 선물의 귀속주체 조정

- 신고된 선물은 국고 외에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이

필요한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 개정 전 :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 보존이 필요한 선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이관

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합리적 운영

○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지정

- (식품 등 국민안전)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 (방위산업) 모든 방산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 (사학)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 (외국계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
 - * 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국내 법무법인 취업시와 동일하게 취업심사 예외 인정

☞ '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0. 6. 4.에 관보에 고시

○ 업무 유형에 따른 취업심사 제외 근거 마련

- 비상대비업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제외

○ 임의 취업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조회 기관을 확대

- (기존)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확대)국세청(기타소득)

○ 취업이력공시 시기 조정('19.12.3. 시행)

- 취업이력공시 시기를 현행 다음해 2월 말에서 다음해 6월 말까지로 조정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부당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하도록 했는지,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판단**하도록 함
- 청탁·알선을 받은 신고자는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20.6.4.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현행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만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취업심사·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공개**
 - 심사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며, 공개시 각 심사사항에 대한 사유 포함

6. 과태료 미비 보완

- 재산등록·신고 등 지연, 성실등록의무 위반, 백지신탁 중 주식취득 및 임의해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되, 동일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경우 과태료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 * 개정 전 : 징계만 가능하여 퇴직자·선출직 공직자의 의무 위반시 제재규정 미흡

참고 1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재산 등록 · 심사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자율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의무화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대통령령)에 따른 가액
	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 분리
취업 제한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안전, 방산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사립대학교 및 학교법인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추가
	일부 업무의 취업심사대상 제외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직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심사	비상대비 및 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윤리위가 고시하는 단순집행 업무(예: 택배원)는 심사 면제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용어변경(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심사 조문 병합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심사결과 공개는 임의사항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심사결과 공개 * 소속기관,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임의취업 적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 가능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 요청근거 추가	
행위 제한	신고자	퇴직자가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한 경우, 청탁·알선 받은 재직자가 이를 신고	퇴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제3자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 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 부여
	신고자 포상	(신설)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신설)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이해충돌 가능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분야 주식 신규취득 제한	
선물	선물의 정의	(신설)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현금 제외)
	귀속주체	국가	국가 또는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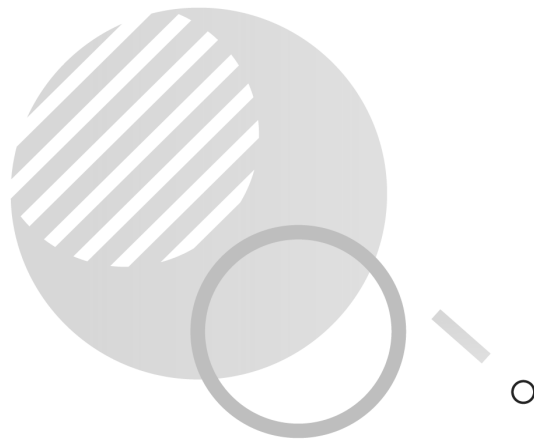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참고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재산 등록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3/5 + 1주당 순자산가치*2/5)	2020.6.4. 시행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의무화가 아닌 임의 기재사항	부동산·비상장주식(개정법) + 사인간 채권·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6,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 노무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면제	
재산등록· 취업심사 대상자 조정	공정위	4급 이상	4급 이상 + (재산)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 5~7급 전원	2020.7.5. 시행
	국과연	본부장 이상	본부장 이상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기품원	원장	원장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소방직	소방장(7급 상당) 이상	(재산) 소방위·소방장 중 현장·상황관리 업무 담당자 제외 / (취업) 현행과 동일	
취업 제한	안전, 방산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 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산) 방산업체 전체 + 최근 3년 내 방위 사업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200만불 이상 사업 중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2020.6.4. 시행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취업제한기관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공개 임의사항 심사결과 공개	공개 의무화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행위 제한	부정여부 판단기준	(신설)	소속기관장이 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법령 위반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직무참여 배제조치	(신설)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조치 가능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무)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각호)에 따른 직무 ▶ (제한방안) 주식취득 제한되는 부서,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 포함 필요 	
선물 신고	보존필요 선물 이관기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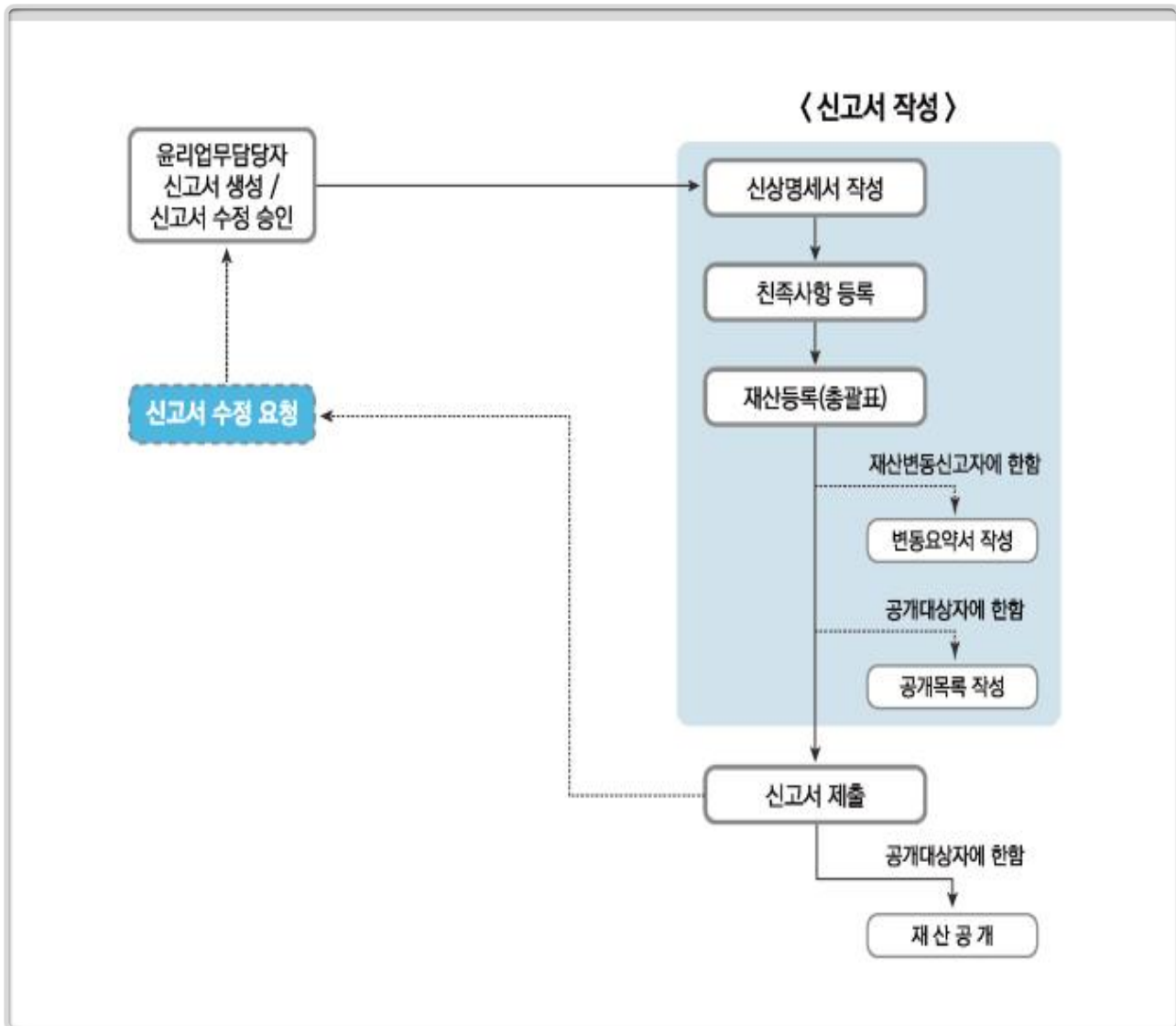
제 2 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I 재산등록

1. 등록대상

가. 재산등록의무자(법 제3조 및 영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포함), 연구관·지도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 연구관·지도관(영 제3조제4항제1호)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 경호처 경호공무원

< 외무공무원(영 제3조제1항)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 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 ⑤ 법관 및 검사
-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영 제3조제2항) >
 ▶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 및 전문 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영 제3조제4항제2~3호) >

- ▶ 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상당한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의 처장·실장

< 대학에 준하는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59조) >

-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⑨ 총경(자치총경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영 제3조제4항 제6~7호) >

-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 ▶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은 사람은 제외

- ⑩ ③부터 ⑦까지 및 ⑨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¹⁾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을 말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20.5.31.기준).

⑫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법 제3조의2) >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 선임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이에 해당함
- < 임원의 범위(영 제3조제3항) >
 - ▶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

⑬ 그 밖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영 제3조제4항) >
 - ▶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 소속 직원에 한함)·국세청·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 수사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 ▶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특정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
 - ※ 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등록기관장이 지정)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특정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 ▶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대법원 규칙 제11조) >
- ▶ 5급,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은 제외)
- <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헌법재판소 규칙 제1조의2) >
-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영 제3조제4항 제14~19호) >
-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 ▶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직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2급 이상 직원
 - ▶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 특정분야 등록대상부서 지정 >

- ▶ 지정주체 : 등록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위 등록기관 제외)
- ▶ 지정대상
 -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상당)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회계관직 공무원, 분임자 및 보조자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상당) 이하 7급(상당) 이상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나.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영 제6조)

-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 사항을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참고 질의·응답

1.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실 등 소속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인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는 모두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되며,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만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됩니다(영 제3조제4항제10호).
 -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된 직위를 말함
2. 군(郡)의 재무과에 세정계, 경리계 등이 있을 경우 세정계 소속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 세정계에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재무과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는 모두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됩니다(영 제3조제4항제12호).

3. 지방주사보시보로서 세무부서 실무수습 발령을 받은 자도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이라도 세무부서에 보직되어 정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위한 임시 부서 배치로 정규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보건소의 재산등록부서 소속으로 임기제공무원인 의사(공중보건과의사 포함)는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 재산등록대상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5. 5급 일반직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 4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퇴직하거나 신고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파견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재산등록부서에 파견되어 장기간(6월 이상) 정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에 관계 없이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되며(원 소속기관에 재산등록), 재산등록부서에서 재산등록부서가 아닌 부서로 장기간(6개월) 파견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원 소속기관에서 의무면제자로 관리).
 - ※ 파견기관에서 윤리업무담당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관으로 소속변경 후 윤리업무 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7. 조직개편 등으로 해당 등록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의 재산등록부서가 해제된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등록부서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 ※ 소속기관 전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퇴직신고를 해야 함 (법 제6조제4항)

다. 등록대상 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

① 친족의 범위(법 제4조제1항)

-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본인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새아버지·새어머니),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참고 질의·응답

1. 며느리와 계모(새어머니)가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며느리와 계모(새어머니)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친족 사항” 란에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혼인한 여성)의 시부모도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공직자윤리법 개정('09.2.3)으로 여성 등록의무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혼인하고 시부모의 재산등록을 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는 경과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3. 시부모를 등록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대상 친족은 어떻게 되나요?

- ▶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시부모와의 민법상 친족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재혼 또는 이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형제가 모두 등록의무자인 경우 부모 재산을 누가 등록하나요?

- ▶ 형제가 모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양하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요?

-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6.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의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자녀는 국적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등록대상입니다.

② 등록(신고)대상 재산의 종류(법 제4조, 영 제4조)

구 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 동 산 (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토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 주택 :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대지)와 공시가격(건물)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 최초신고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18.7.2. 이후) ○ 변동신고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①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②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소유권 변동 없는 경우) 이전 신고시 가액을 ①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신고, ②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신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등
동 산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채권·채무)	○ 해당 금액 - 수익증권 저축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 항목으로 등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 액면가 ○ 상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 비상장주식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주식 : '거래량 가중 평균가' - 기타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주식매수선택권	○ 현재시가 또는 액면가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기재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제품포함)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함량과 중량 기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 종류·크기·색상·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기재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연간 소득금액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기 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출연재산

2. 재산등록 기관(법 제5조, 영 제4조의3)

등록대상자	등록기관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원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²⁾ 포함)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그 부·처·청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환경관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그 소속기관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국세청
-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경찰청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감사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감사원사무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공개자 제외) - 다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에 등록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그 밖의 등록의무자 ³⁾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사항 공개대상자	인사혁신처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3) 한국은행·한국방송공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소속 임직원, 그 밖의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의거 부·처·청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해당한다.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종류	변 동 사유	등 록 대 상	등 록 시 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 록 내 용
최초 신고	신 규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
	승 진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법 제10조제2항) * 예외)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공개자 최초 등록 제외			
변동 신고	정 기	- 등록의무자 전원(법 제6조제1항) * 예외) ① 유예 허가 받은 경우 ☞ 유예사유 해소 시 신고 ② 10~12월 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③ 10~12월 중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④ 10~12월 중 재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재등록신고 ⑤ 1~2월 중 퇴직한 경우 ☞ 퇴직신고 ⑥ 1~2월 중 의무면제된 경우 ☞ 의무면제신고	다음 해 2월말 까지	1.31일까지 * 재심사 : 2월말 까지	매년1.1 (또는 재산 등록 후) ~12.31까지 재산변동 사항
	의 무 면 제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된 경우 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법 제11조제1항) * 예외) 의무면제 후 면제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최종재산 신고이후 변동사항
	유 예 복 귀	-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 (법 제6조의3)			
	재등록	-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의무면제 후 3년 이내 (퇴직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법 제5조제1항단서)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퇴 직	- 퇴직한 경우(법 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법 제6조제4항) * 예외) ①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면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가.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 (대상) ① 신규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②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10조제2항)
- (내용) 등록의무자가 된(등록기준일)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
-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 대상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재공개)

참고 질의·응답

1. 재산등록의무자가 승진 등으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어 재산등록기간(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중에 퇴직하였을 때 재산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재산공개자가 된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 하여야 하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대상자로 되어 재산등록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공개자 최초등록의무는 면제되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자의 퇴직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변동신고

(1) 정기 재산변동신고(법 제6조제1항)

- (대상) 등록의무자
- (내용)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신고기준일 : 12. 31)을 등록기관에 신고
 -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기간) 다음 해 2월말까지

○ (예외)

- ① 등록기관의 장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변동사항 신고 유예를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법 제6조의3 제3항)
- ③ 10~12월 중에 최초, 재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포함) - 최초, 재등록신고만 하고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법 제6조제3항)
- ④ 등록의무자가 1~2월 중에 퇴직한 경우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법 제6조제3항)
- ⑤ 등록의무자가 1~2월 중에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 의무면제자 변동사항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법 제11조제2항)

(2)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법 제11조제1항)

- (대상)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경우
 - ②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
- 예) 감사원 5급 공무원(등록의무자) → 일반부처 5급 공무원(의무면제자)
대학의 총·학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
등록부서 5~7급 공무원(등록의무자) → 일반부서(의무면제자)
- (내용)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날을 기준으로 최종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기간) 전보 또는 전직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예외) 의무면제자가 된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3)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법 제5조제1항 단서)

- (대상) ①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의무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②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내용)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
-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4) 퇴직자 재산변동신고(법 제6조제2항·제4항)

- (대상) 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②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 (내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기간) 퇴직일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날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예외) ① 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 신분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 정기변동신고로 같음(법 제6조제2항 단서)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퇴직자변동신고 면제처리

<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수정(영 제4조의4) >

- ▶ (수정사유)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수정기간) 재산등록 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4.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가.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1) 유예·면제 사유 및 처리절차 등

구분	신고유예	신고유예 및 면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 국내 교육기관에서 중·장기과정 교육 중인 경우 유예대상이 아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위에 상당한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산신고 유형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퇴직신고						
허가기간	3년의 범위 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다만,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후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유예 신청	사유 해소시까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와 인사발령 공문을 등록기관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 신청시기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후 유예사유 개시 전까지 ※ 예 : 휴직은 휴직일 이전, 해외파견은 파견기간 개시 전 ○ 등록기관장은 인사발령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허가 여부 및 기간을 판단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PET시스템에 입력 - 통보내용 : 허가기간, 유예되는 재산신고 유형 및 유예연도(횟수) ○ 해외파견으로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당초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하고 휴직에 의한 유예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유예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결 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통보 ⇒ 변동사항 신고 유예 또는 면제 처리 ⇒ 명단 및 사유 관리 * 참고 : 신고유예와 신고면제 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신고유예</th> <th>신고면제</th> </tr> </thead> <tbody> <tr> <td>-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td> <td>-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 확정 시점에 구금상태인 경우</td> </tr> <tr> <td>-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td> <td>-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된자</td> </tr> </tbody> </table>	신고유예	신고면제	-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 확정 시점에 구금상태인 경우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된자
		신고유예	신고면제					
-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 확정 시점에 구금상태인 경우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된자							
* 현재 구금 중이거나 실종선고 이전 실종자의 경우는 우선 신고유예처리를 하고, 이후 ① 형 확정 시점에 구금상태이거나 ② 법원의 실종선고 시 재산등록 변동사항의 신고면제 처리								

(2) 유예기간 종료 후 재산신고 방법

-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법 제6조의3제3항)
- 법 제6조의3제1항(외국 파견근무 등)에 해당하는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 후 다시 유예신청(영 제5조의3제4항)
-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경우 유예허가 종료시점(휴직·해외근무 종료일 등)이 11~12월인 경우에는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기간인 2월말까지 유예기간(연도)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신고
- 국외훈련자 등 해외파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당초 유예기간 허가 종료일 전에 본인의 유예연장신청에 의한 유예허가가 가능하며 당해 유예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 국외훈련자는 파견기간 연장신청 시, 재산변동신고 유예신청을 동시에 할 것
- 해외 파견으로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당초 유예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중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신고 후 휴직에 의한 유예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예시 1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9.1.1~12.31)후 2020.8.1 해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 근무명령을 받고 3년간 유예신청을 한 경우

- 근무기간 : 2020.8.1~(종료일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유예허가 : 2021년도(2020.1.1~12.31), 2022년도(2020. 1. 1~12. 31), 2023년도(2022.1.1~12.31) 신고분
- 신 고
 - 2023년도 귀임한 경우 : 2020.1.1~2022.12.31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귀임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 2020.1.1~2022.12.31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유예 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후 다시 유예신청

예시 2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9.1.1~12.31)후 2020.5.31 군입대를 위해 휴직(24개월)하게 되어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 휴직기간 : 2020.5.31~2022.5.30
- 유예허가 : 2021년도(2020.1.1~12.31), 2022년도(2021.1.1~12.31) 신고분
- 신고 : 2020.1.1~2021.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7.31.까지 신고 (등록기준일은 2021.12.31.)

예시 3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9.1.1~12.31)후 2020.8.10.부터 1년간 국외훈련명령을 받고 다시 1년간 파견기간연장명령을 받은 경우

- 파견기간 : 당초 2020.8.10.~2021.8.9, 연장 2021.8.10~2022.8.9
- 유예허가 : 2021년도(2020.1.1~12.31), 2022년도(2021.1.1~12.31) 신고분
- 신고 : 2020.1.1~2021.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10.31.까지 신고

예시 4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9.1.1~12.31)후 2020.4.27부터 2년간 해외파견명령을 받고 해당기간동안 유예허가를 받은 후 1년간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 파견기간 : 2020.4.27~2022.4.26
- 유예허가 : 2021년도(2020.1.1~12.31), 2022년도(2021.1.1~12.31) 신고분
- 신고 : 2020.1.1~2021.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6.30.까지 신고
※ 재산변동신고 후 휴직명령에 의한 유예신청·허가절차를 이행

예시 5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9.1.1~12.31)후 2020.12.5 휴직명령을 받고 2년간 유예신청을 한 경우

- 휴직기간 : 2020.12.5~2021.12.4
- 유예허가 : 2021년도(2020.1.1~12.31), 2022년도(2021.1.1~12.31) 신고분
- 신고 : 2020.1.1~2022.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정기변동 신고기간(1~2월) 중에 신고

나. 재산등록기간의 연장(법 제7조, 영 제7조 및 제27조)

- 등록의무자가 법정 재산등록기간 중에 재산등록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공무해외출장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
-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장에게 제출

- 등록기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 병가, 해외출장, 구속, 고지거부 심사기간 연장 시나 불허결정시 등
- 등록기관장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
- 연장기간은 신청기간과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재산공개대상자는 20일,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자는 해당 기간 동안)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는 10일) 이내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음

1.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등록(신고)을 해야 하나요?

- ▶ 해외근무자와 휴직자도 최초재산등록은 하여야 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 범위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해외근무중 승진으로 의무자가 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최초신고 유예 가능).

2.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기간(또는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법 제24조에 의한 “재산등록거부”나 제22조 및 제30조에 의한 “...재산등록을 아니한 때”로 볼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해당되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일괄적으로 “재산등록거부의 죄”나 법 제22조에 의한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유의 객관적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부친 사망 후 상속권자인 자녀가 4명임에도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망부명의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공유로 신고).

다.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수정(영 제4조의4)

- (수정사유)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정기간) 재산등록 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5. 재산등록(신고) 요령

가.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방법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PETI, www.peti.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SMS휴대 전화 인증 로그인(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 확인필요)하여 On-Line으로 재산등록

※ 시스템 사용 문의 : 공직윤리시스템 콜센터(1522-4273)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행정전자서명인증서(공무원만 사용 가능)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음

- 일반 공인인증서(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퇴직자 등 사용)

▶ 은행인증서(무료) 및 개인범용인증서(유료) 발급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 일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기관명	주소	연락처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www.signkorea.com	1577-7337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yessign.or.kr	1577-5500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1577-8787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566-2119

※ 기존에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신상명세서 및 친족사항을 작성하고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

< 등록신고 기준일과 등록일(신고일) 구분 >

- ▶ 등록(신고)기준일 : 재산등록의무 발생 시점(예, 신규채용일, 승진일, 전보일, 퇴직일, 정기변동신고기준일(12.31.) 등)
- ▶ 등록일(신고일) : 재산등록신고서 제출일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소유 명義와 關係없이 事實상 소유하고 있는 財産(친목회비, 文證財産, 상속 財産, 무허가주택 등), 外國에 있는 財産 및 事實상 他人 소유라도 登記대상자 名義로 되어 있는 財産은 신고대상임(누락주의)
-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결과를 확인하여 고지거부 불허가자의 소유재산에 신고(누락 주의)
 - ※ 고지거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이라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유 재산을 신고
- 불필요한 소명 방지를 위해 登記한 財産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형성과정(변동사유)’란에 상세하게 기재

참고 질의·응답

1. 財産등록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 기타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액면가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공개대상자인 등록의무자는 財産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登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2).
- ▶ 그 외 財産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 財産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1) 신상명세서

- 登記기준일 현재 登記의무자의 성명(한자), 직급, 직위, 상세소속, 자택 및 거주 형태, 직장주소, 연락처를 작성
 - ※ 자택·직장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기재

(2) 친족사항

- 登記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을 작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 및 고지거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 사별하거나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직계존비속 및 혼인한 딸은 작성할 필요가 없음(결혼한 딸이 이혼한 경우 등록대상에 해당)
 - ※ 혼인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임(법 제4조제1항제3호)
 -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사유에 체크
 - 자녀의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손자, 손녀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친족 상세내용의 등록상태 '고지거부'란에 체크(✓) 표시
 -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일지라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소유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거주 등)

(3) 총괄표

- 재산항목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작성

① 부동산(토지·건물)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등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등록(신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등록(신고)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영 제4조의2)

- ▶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최근에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 가액 산정방법 적용
- ▶ (상가·빌딩·오피스텔·무허가건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대지가액과 국가(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 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 ▶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 ▶ (지상권·전세권)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 동일지역(동·리가 같은 경우)에 지목이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번별로 분리하여 작성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소유권

- 부동산의 가액과 소유(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종류 및 용도 등 기타 권리명세를 신고
- 가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최초신고 : 평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변동신고
 - (신규취득)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
 - (기존신고) 평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했던 부동산은 최근 평가액을 반영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 사실상 타인 소유의 재산이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신고하여야 함(○○㎡ 중 ○○㎡)
- 재산상속이 확실하나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 건물 ○○㎡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를 토지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나대지일 경우에만 토지란에 기재)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등록 방법

- (매도) ①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타인 소유이나,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②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매입) ①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등록하여도 무방)
- ② 중도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며, ‘가액’란과 ‘실거래가격’란에 등록기준일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을,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매입한 경우와 같이 등록

㉠ 전세권(임차권)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임차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등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관사도 해당 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분양권

- 일반 분양아파트는 등록기준일 당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신고
-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 (=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항목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관련용어

(단위: 천원)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340,000	40,000	380,000	480,000

-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추가 보상금 발생 /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부담금 발생)
-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 기타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 항목에 별도 신고
- 신축 중인 건물은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

< 부동산 관련 주요용어 >

- ▶ 가액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자동차·건설기계·선박·어업권·광업권, 회원권 등), 전문가에 의한 평가액(보석류·골동품 등) 등 이른바 공식적인 가격을 의미함
- ▶ 실거래가격 : 쌍방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에 수반되는 금액을 말함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의미함
- ▶ 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음
 - 개별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적정가격(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가격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가격
- ▶ 시가표준액 : 건물, 차량,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등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 ※ 재산등록신고서상 상가, 빌딩, 오피스텔 가액 산정시 활용
- ▶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재산의 형태별로 정해놓은 기준가(재산의 형태에 따라 공시지가, 주택 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말하며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
- ▶ 공정가액 :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교환가격

< 자주 실수하는 사례 >

- ▶ 본인 및 친족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임차)보증금을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
 - ☞ 전세(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해야 함
- ▶ 본인 및 친족소유로 신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신고 누락
 - ☞ 소유건물 임대로 인한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해야 함

참고 질의·응답

1.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입력하고, 만약 실거래가격을 알수 없다면 가액을 '0'으로 기재한 후 '비고(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시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토지는 임차권으로 등록하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경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보존된 수목의 집단일 경우에 한하여 등록합니다.
3. 공원묘지의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묘지로 선택 후 비고에 "공원묘지"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4.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의 명세기재(법 제4조제3항제4호)

-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
 - 가액은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
 -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 기재
 - 자동차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 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전문가의 평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기재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채무란에 신고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소유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①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②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비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

○ 건설기계 : 기종명, 제작회사, 제작연도,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

○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 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

○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

참고 질의·응답

1.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태양광 시설은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건설기계 제외), 태양광 시설 등은 법상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위해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에 등록하면 됩니다.

2.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 및 운전교습용 자동차 등은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자동차 및 학원 건물은 등록대상 재산이나, 자동차학원 인가권은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③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가목)

○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여 현금항목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천만원이 넘으면 등록하여야 함

※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채무란에 기재

-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유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참고 질의·응답

1. 사업유통자금을 일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현금, 예금 등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그 보유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2. 보증금 없는 월세는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재산등록 대상이나, 월세금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증감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예금 등 재산항목의 ‘비고(변동사유)’란에 간단히 기재하거나 변동요약서 작성 시 ‘소득’란에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소유자별 예금·보험·수익증권 등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나목)

※ 계좌별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100% 보장성 보험 제외),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증권(펀드 등) 및 투자자예탁금(과생상품 위탁증거금 포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 개인별, 계좌별로 예금의 종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친목회비, 동창회비, 개인사업자금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은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좌별로 구분하여 기재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채무항목에 등록
 - 외화예금은 등록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현지 화폐단위(\$, ₩ 등)로 기재

- 적금,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까지의 불입액(이자 포함)을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만기 계약금액을 기재
 - 순수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임
 - 보험특성상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중도인출금을 제외하고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 되는 장기저축(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등 적립성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채무 항목에 신고(소유자별 채무 1천만원 이상)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을 신고
 - MMF,⁴⁾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⁵⁾ ELS,⁶⁾ CMA,⁷⁾ MMDA⁸⁾ 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에 등록
 -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펀드인 “투자조합”은 금액이 크고, 사모방식으로 출자하므로 합명·합자회사 출자로 신고
 -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예수금)은 예금항목에 등록
 -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 ‘비고(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 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연금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기재
 - 개인별, 계좌별, 그 용도별(수입용, 지출용)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4) MMF(Mone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5) 뮤추얼펀드(Mutual Fund) :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의 펀드

6) ELS(주가연계증권) : 증권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CD,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

8)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농협이나 수협등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 자주 실수하는 사례 >

- ▶ 금융재산 및 채무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만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누락
-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예금에 대한 신고 누락
- ▶ 금융거래 제공자료를 활용신고 시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 회신자료의 일치여부를 소홀히 하여 과다 및 누락 신고금액 발생
 - ※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다를 경우 불일치 자료로 인식됨

⑤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및 제5호)

-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 수량, 가액 등 보유 증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재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유가증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산정
 -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여, 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 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예시)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
 - 기타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① 기본방향

- (실거래가격)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평가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액면가) 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 ②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② 실거래가격

-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매도 또는 매입)
 -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 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 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③ 평가액

-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신고
- ①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1\text{주당 최근 } 3\text{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①} \div \text{이자율}(10\%)^{②}$ ① 재산등록기준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text{자산총액}^* - \text{부채총액}^*) \div \text{발행주식총수}^{**}$ ※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재산등록기준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금액 /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총수

-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4/5

③ 1주당 액면가

- 해당 주식이 다음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 가치로 신고
 - ① 재산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단, 기업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
 -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참고 질의·응답(기타 비상장주식 관련)

1.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최초 등록과 변동신고 시의 가액산정방법이 같나요?
 - ▶ 기타 비상장주식은 최초등록과 재산변동신고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해당 기간 중 거래를 하여 실거래가격이 있으나 본인은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은?
 - ▶ 배우자의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주식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청산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액면가 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나요?
 - ▶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므로 액면가 아닌 순자산가치로 신고합니다.
 - ▶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업이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가액 계산을 위한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취득 노력 등 소명자료*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4. 비상장기업이지만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 ▶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공시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시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 등록의무자가 평가액 산정을 위한 기업정보 제공 요청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을 기업에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업이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가액 계산을 위한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취득 노력 등 소명자료*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 가상통화(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향후 재산변동 흐름 파악 등을 위해 변동요약서 재산증감사유 부분에 가상통화 보유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에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할 경우 (랩상품 등) 등록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비고(변동사유)’란에 ‘랩상품’ 표시)
 - ※ 예금항목으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증권회사의 용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주식과 채무(용자금)를 별도로 각각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법 제6조의2)

▶ 주식거래내역서 제출(재산공개대상자)

- 신고대상자 : 재산변동신고 대상기간 중 주식거래를 한 재산공개대상자
- 신고시기 : 정기변동신고·퇴직신고·의무면제신고 시
- 신고대상주식 : 다음의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본인 및 친족의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 모든 주식거래내역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 주식)
- 신고방법 : 주식변동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
- 신고예외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신고한 경우에는 해제할 때까지 주식거래내역 신고대상에서 제외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주식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할 때 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에서 제외(법 제14조의4제4항)

- 주식매수선택권⁹⁾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 시가 등을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
 - ※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⑥ 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채권·채무(법 제4조제2제3호라·마목)

-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
 - ※ 전세권(임차권)은 채권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채무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 카드론, 자동차 할부대출 등 각종 대출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 ※ 현금서비스 및 물품 할부구입의 할부잔액은 대출금에서 제외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채무는 발생사유, 일자, 채권(무)자와의 관계, 사용처,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가족 사이에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대상임
 - ※ 부모 등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 타인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대출하였으나, 타인이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반대의 경우에도 동일)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권·채무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9)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있는 권리

참고 질의·응답

1.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의 외상미수금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2. 가맹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신고대상인가요?
▶ 가맹점비는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3. 파산자 및 개인회생자의 채무는 신고대상인가요?
▶ 파산자는 채무자체가 탕감되므로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자는 채무의 일부만 탕감되므로 변제할 채무를 등록하면 됩니다.
※ ‘비고(변동사유)’란에 ‘개인회생’과 변제할 채무액을 기재하십시오.
4. 가족사이의 채권·채무도 등록대상인가요?
▶ 가족 사이에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
※ 부모 등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5. 상환사채(주택채권, 주택상환채권)는 어느 재산항목에 신고해야 하나요?
▶ 상환사채는 주식 항목에 신고하면 됩니다.

⑦ 금·백금·보석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석류는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법 제4조제2항제3호바·사목)

- 금·백금은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보석류는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매매 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을 기재

⑧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법 제4조제2항제3호아목)

- 도자기·회화·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골동품 또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망라하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명세를 기재
- 가액은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⑨ 회원권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법 제4조제2항제3호자목)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면적도 기재
- 회원권(골프회원권 제외)은 가액에 취득가격을 기재

▶ 골프회원권 가액산정방법

- ① 최초신고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② 변동신고
 - (신규취득)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기존신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던 골프회원권은 최근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골프회원권은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⑩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등록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비고(변동사항)’란에 소득원인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⑪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법 제4조제2항제4호)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과 출자지분 및 연간 매출액¹⁰⁾ 등 정보를 기재
 - 출자지분에 대한 매해 이익금이 소득에 해당되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출자액을 가액으로 등재토록 한 것임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이면 ‘주식’ 항목에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⑫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액(법 제4조)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하며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기재
-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제외
- 교회나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인 경우에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10) 연간 매출액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합명·합자·유한회사 결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함

참고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요 및 조치사항 등

□ 개요

-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 신고기간 : 매년 1.1. ~ 2월말(2개월)
- 신고사항 : 전년도 12.31.자 현재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증감 내역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조치사항

< 사전조치사항 >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확인 및 명단 작성
 - 동의서 접수·확인 : 11월 말까지
 - 정보제공 요청자 명단 작성 및 제출 : 12월 초
- 등록의무자 상태 현행화(12월 중순)
 - PETI의 현 등록의무자 중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파악·정리
 - 등록의무자에 대한 전·출입, 심사관할권 조정 처리하여 현재 상태 현행화
 - 이전 신고서(보완신고서 포함) 미제출자 확인 및 제출 독려
 - ※ 이전 신고서 미제출시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불가
- PETI시스템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12월 말)
 - 정기재산변동신고 제외자
 - 10~12월중 최초, 재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승진·전보 등으로 비공개대상자에서 공개대상자가 되어 최초, 재등록신고서를 제출한 자
 - 1~2월중 퇴직하거나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신고기간 내 조치사항 >

- 정기변동 신고 안내 및 교육 등 실시
 - 정기변동 신고 요령, 금융정보제공 시점, 고지거부 신청 기간 등
-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
- 정기변동 신고서 제출상황 관리
- 공개대상자 공개목록 작성 제출

□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
 -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신고기간 만료 즈음(2.20.~2월말까지) 재산등록의무자 과다접속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기한내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2.15일까지 신고서 제출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자는 재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허가일 경우 불허가자 소유재산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 등록대상자가 소유하는 총재산과 종전에 신고된 재산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 재산의 변동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변동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
- 예금, 증권 등 변동이 많은 재산은 반드시 신고기준일 현재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 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신고사항과 비교
 -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자의 경우는 PETI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 가능
- 현금·예금·증권·채무·채권의 경우 각 재산별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종전 신고시 1,000만원이 넘어 신고하였다가 신고기준일 현재 감소하여 1,000만원 미만이 되었을 지라도 증감사항을 반드시 신고

□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 신고기준일(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
-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지거부 허가 없이 친족의 재산을 누락

-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등 공동명의로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
- 건물부속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 신고
- 무허가건물을 누락
-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상속 및 증여재산을 누락
-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거나 채권 항목에 잘못 신고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를 하여야 하나, 현 가액만 ‘0’으로 처리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누락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誤認)하여 누락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
- 임대중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 금융기관 간 또는 계좌 간 이동이 있는 금융재산의 증감내역 신고를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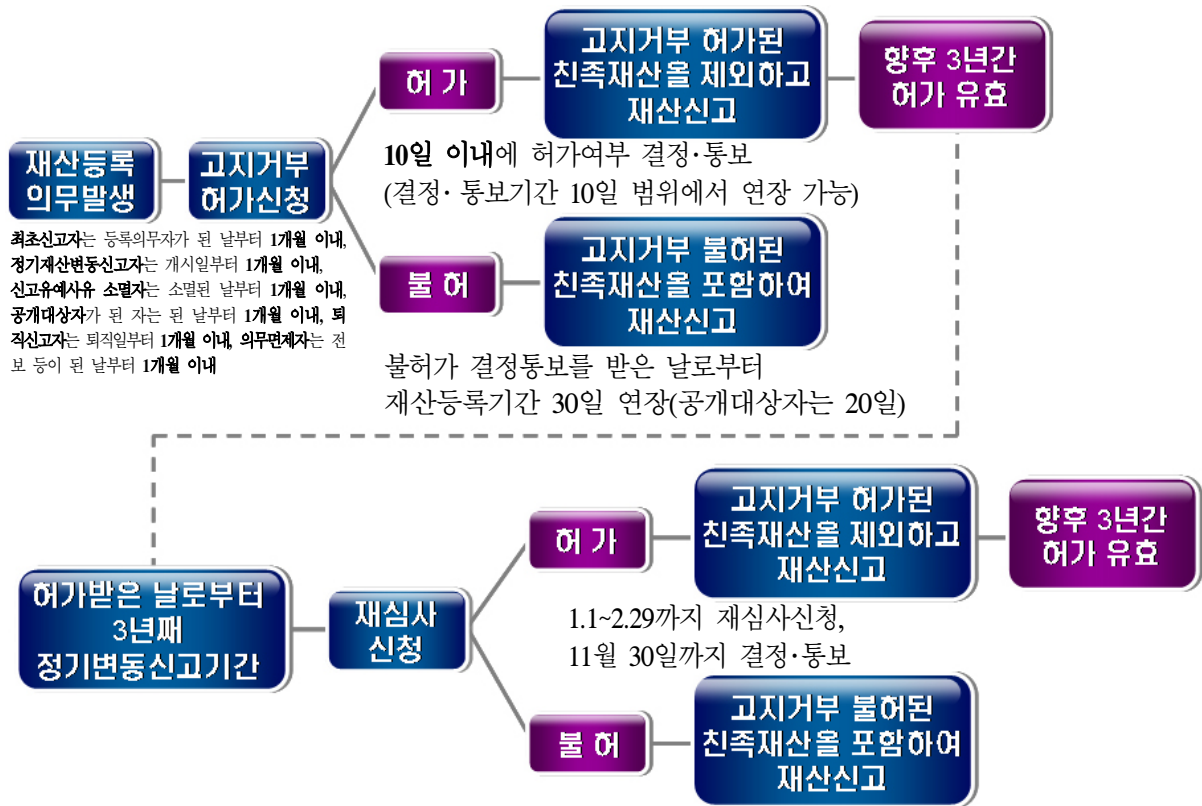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 등록기관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지방관서가 등록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종합하여 보고, 영 제8조)
 - 보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재산등록 현황보고서

7. 고지거부제도

가. 고지거부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임 (법 제12조제4항)



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1) 고지거부 허가 신청(법 제12조제4항, 영 제27조제1~2항 및 제3항)

-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포함)
-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재등록 의무자 포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매년 1월31일까지)
 - 신고유예 사유 소멸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퇴직자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의무면제자 :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심사결과통지)
 -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영 제27조제2항)
 - (불허시 등록기간 연장) 재산등록기간을 불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공개자는 20일) 연장한 것으로 간주(영 제27조제4항)
-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2)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법 제12조제4항, 영 제27조제5~6항)

-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자로서 계속해서 자기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
- (신청기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1월~2월)
- (심사결과통지)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 통보
- (유효기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3년간

예시 1 (최초(수시) 신고자) '17. 9. 최초(재등록 포함)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재심사 신청을 하여 그 해 11월말까지 심사(허가)를 받은 후 '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부터 적용

'17.9. (최초신고)	'18.1.1 (등록기준일 '17.12.31.)	'19.1.1 (등록기준일 '18.12.31.)	'20.1.1 (등록기준일 '19.12.31.)	'21.1.1 ('20.12.31. 정기변동)
<적용>	1년째 정기변동	2년째 정기변동	3년째 정기변동	<적용>
			재심사신청 (1.1~2월말)	1년째 정기변동
			(심사/통보)	

예시 2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재심사 신청을 하여 그 해 11월말까지 심사(허가)를 받은 후 '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부터 적용

'18.1.1 (등록기준일 '17.12.31.)	'19.1.1 (등록기준일 '18.12.31.)	'20.1.1 (등록기준일 '19.12.31.)	'21.1.1 (등록기준일 '20.12.31.)
<적용> 1년째 정기변동	2년째 정기변동	3년째 정기변동	<적용>
		재심사신청 (1.1~2월말)	(심사/통보) 1년째 정기변동

다.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

라. 고지거부 허가요건

(1) 피부양자가 아닌 자 일 것(영 제27조의2제1항)

-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2)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영 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¹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영 제27조의2제2항1호)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영 제27조의2제2항2호)

※ 고지거부 허가 심사 세부 기준은 해당연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지침을 참조

마. 고지거부 허가권자

- ① 원칙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② 예외 :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수임기관)
 - 고지거부 심사도 심사업무에 해당하여 기존 심사업무와 같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고지거부 심사를 수임기관에 위임('07.5.3. 제147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11) 정기적인 소득의 판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영 제27조의2 제3항).

바. 고지거부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 고지거부 신청서를 누락하고 증명서류만 제출하여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직계존비속)의 서명(날인)을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것으로 대신하여 잘못 서명(날인)
- 고지거부 신청 사유 누락(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신청사유 기재)
- 고지거부 신청기간 경과(각 윤리업무 담당은 고지거부 신청기간을 등록의무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신청기간이 경과 되지 않도록 주의)
 - ※ 특히, 최초신고자, 신고유예 복귀자, 재등록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안내!!
- 증빙자료 미제출(신청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시 반려 처리)

< 심사 관련 >

-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 및 가구원 수 확인
 -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을 위해 거주지역(도시, 농촌) 및 가구원 수 확인
-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시 독립세대 구성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의 별도세대 구성기간이 등록기준일(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는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다시 제출받아 심사
- 동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재산소득과 임대소득은 중복하여 합산 불가
- 고지거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부동산 재산소득은 불인정

참고 1 고지거부 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23>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름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 사유	서명 또는 인	최종 허가일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
------	---------------------------

유의사항

-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2 고지거부 심사보고서

개인별 고지거부 심사보고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급)	성명	최종허가일	비고
인사혁신처	서기관(4급)	홍길동		

2. 고지거부사유 및 검토의견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 사유	검토의견	허가여부
부	홍판서	독립생계	부동산임대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확인 결과, 월 소득이 1,400천원으로 농촌 2인 독립생계 소득기준 월 1,257천원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	허가
모	옥영향	독립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홍판서)와 주소지를 함께하는 배우자로 고지거부 허가	허가

3. 특이사항

※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처리

4. 메모사항

- 주민등록정보 : 전남 장성군 장성읍 군하리 000(세대주 홍판서 등 2명 거주)
-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 월 1,200천원
- 금융자산(통장사본) : 157,591천원(월 200천원)

※ PETI의 메모사항은 특이사항과 달리 심사담당자가 임의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는 란으로 최종 출력물에는 표출되지 않음

참고 3 자주하는 질문

1. 의무면제자의 고지거부 신청 기간

- 의무면제자가 다시 재등록자가 된 경우 : ① 기존 고지거부 허가받은 기간 안에 재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기 고지거부 허가받은 기간 동안 고지거부 허가 유효, ②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와 동일하게 1개월 이내 허가 신청

2. 신고유예자의 고지거부 신청 기간

- 고지거부 허가기간 만료 후 복귀한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허가 신청

3. 의무자 신분변동에 따른 기 허가받은 고지거부 효력

재등록, 퇴직신고 의무면제, 신고유예	고지거부 허가일까지 유효
최초신고 ¹²⁾	비공개자가 공개자로 된 경우에만 고지거부 허가일까지 유효

4. 재심사신청 심사기간 중 의무자의 신분변동(퇴직) 시 처리방안

- 심사기간 중 퇴직자 : 기 퇴직자만 반려처리, 그 외 심사 및 통보

5.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적용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 기준

-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지가 ‘읍·면’이면 농촌지역이며, 대도시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12) 의무자가 신분변동으로 인한 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비공개자가 공개자로 되는 경우와 퇴직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4 고지거부 신청 요약표

신고구분	신청종류	신청기간	기존 허가의 효력
최초등록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	허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기 허가사항 무효
공개자 재산등록	허가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기 허가기간까지 유효
정기재산 변동신고	허가	1월 1일~1월말	-
	재심사	1월 1일~2월말	기 허가기간까지 유효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허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기 허가기간까지 유효
신고유예자 재산변동신고	허가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기 허가기간까지 유효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허가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 허가기간까지 유효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허가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기 허가기간까지 유효

※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는 10일) 이내 고지거부 신청

8.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법 제6조의5제1항, 제2항)

가. 제도개요

- 재산등록 의무자와 가족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제공하여 등록·신고 편의성을 도모함
- ※ 기존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만 적용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16.6.30.이후 재산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수시신고(최초, 퇴직, 의무면제, 공개자로의 승진 등)에도 적용됨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영 제5조의5제1항)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단,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는 그달의 15일까지)
 - ※ 8.20 등록의무 발생시 9.15까지, 10.1 등록의무 발생시 10.15까지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동의서에는 등록의무자와 동의자의 인적사항(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 서명 등)을 반드시 기재
-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작성 가능(영 제5조의5제3항)
 -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은 후견인(법정대리인) 증명서 제출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당연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 자료 필요 없음
-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영 제5조의5제2항)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 시에만 활용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퇴직 또는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 제출 필요

다. 처리절차(윤리업무 담당자)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확인 및 명단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동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수시신고시에는 매월 15일까지, 정기신고시에는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정보제공 요청을 위해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
 - 금융조회 대상자는 동의서를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되며,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된 친족과 동의 철회자는 명단에서 제외

< 동의서 관리 및 보관 >

-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는 조건표를 붙여 잘 정리하여 비치하고 금융기관이 사후 확인요청 시 팩스나 우편으로 적극 제공
 -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동의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동의서 사본(필요시 원본) 또는 전자적 매체를 금융기관에 제출
- ▶ 등록의무자의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는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여러 장(또는 여러 번)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
- ▶ 동의자 인적사항이 추가·변경되었거나 철회되었을 경우 최종 동의서만으로 동의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가 필요함

(2)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취합 및 조회 요청

- 금융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수시는 익월 10일경, 정기는 다음 해 1.15까지 회신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절차 생략 가능
- 인사혁신처는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금융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시는 익월 16일경, 정기는 다음 해 1.20 이후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재산신고에 활용토록 함
 -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수시 사전 조회를 위한 업무 처리 일정은 매년 별도 안내함

참고 질의·응답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의 조회를 해서는 안 되나요?
 - ▶ 금융정보 사전 조회 제공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외적인 제도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 명의인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금융자료의 조회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청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 ▶ 금융기관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명단 중 특정인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항상 팩스나 우편을 통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 본래 금융정보 조회나 통보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서 원본이나 스캔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너무 절차가 복잡해 금융정보 조회 자체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확인서와 명단으로 대체토록 한 것임. 만약, 금융기관에서 동의서를 요청 시 동의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확인서 명단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아 요청하지 않은 자를 조회한 책임을 담당자가 져야 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의 신청자와 가족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회자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동의자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나요?
 - ▶ 동의서 상 인적사항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조회 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내용이 틀릴 경우 금융정보 조회 자체가 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며, 동의서 내용의 일부 수정 또한 동의자의 확인(서명)이 필요합니다.
 - ※ 류, 렬 등이 일부 은행에 유, 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 된 경우 금융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금융조회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제공절차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5. 기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퇴직 또는 의무면제 신고를 위해 정보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 새로운 서식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 시에만 활용 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퇴직 또는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자동 철회되며,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시신고 시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동의서 유효기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제공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정보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부동산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정보 제공 동의'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재산 등록·신고기간 중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공단 등

참고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6.6.30>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1.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

관계	성명	철회사유	제공동의 철회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부동산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II 재산공개

1. 공개대상자(법 제10조, 영 제24조)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③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대통령령 제24조제2항) >

-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함

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

- ▶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대법관의 직책 이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상의 직위 중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 ⑥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 ▶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

- ⑧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⑩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⑪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
- ⑫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제3항) >

-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제4항) >

-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매 반기 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함

▶ 지정기준

- 1)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단체의 장

- ⑭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2.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3. 공개주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¹³⁾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공개대상자	공개주체	비고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대상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개대상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위 및 각급 선거위소속 공개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13) 관할이라 함은 재산심사를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말함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가. 최초신고사항 공개

- 신규임용 등으로 최초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10조제2항)
예)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검사 → 검사장 / 소장 → 중장

나. 변동신고사항 공개

- 정기변동 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경우
예) 대학의 총·학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
 - 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 재공개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
- 퇴직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법 제10조의2 >

- ▶ 공직선거후보자법 제10조의2제1항
 - (대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 (제출내용)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을 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공개시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 시
- ▶ 국회 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법 제10조의2제2항)
 - (대상) 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 ② 헌법재판소재판관(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
 - (제출시기)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시 국회에 제출
 - (제출기관) 국회
 - (공개시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공개
 - ※ 단,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에 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가.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내용 중 재산의 누락오기와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 재산의 누락·오기는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 가능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없음”으로 자동생성 되며,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비고란 및 변동사유란 작성 시 유의사항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의 취득일자·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가능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가능
 - ※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예금에 입금/예금 인출 후 토지 또는 건물 매입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가능
- 최초재산등록사항 공개 시에 별도의 소명내용을 함께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소명사항을 작성

나.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재산등록(신고)시 소속 및 직위 등이 맞는지 확인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원의 경우 소속은 ○○도(시·군)의회, 직위는 의원으로 기재
 - 변동사유가 의무면제, 퇴직자의 경우는 직위 앞에 (전)으로 기재
- 토지
 -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며 비고란 또는 변동사유란에 지분 표시
 - 지목이 임야의 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 포함 여부 확인
- 건물의 주소지 표시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주소지 작성 방법 >

▶ 단독주택 : ○○시 ○○동

○○번지의 ○호 - 기재생략

▶ 공동주택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기재생략

※ 입주예정인 주택 또는 임대(차)한 주택의 경우도 동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차량번호나 제조 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채 무
 -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미기재 확인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고지거부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 확인
-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등록제외’라는 사유가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공개시 유의사항 >

- ▶ 신고서의 종류(최초, 변동신고서), 변동사유(신규, 승진, 의무면제 등), 공개직위여부 등을 확인 하여 재산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여 공개시기에 늦지 않도록 주의
- ▶ 신고재산 금액이 큰 경우 단위 착오로 잘못 신고되었는지를 의무자에게 유선 확인
-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시스템상 붉은색 표시)에는 반드시 공개목록을 다시 생성
- ▶ 관보 다운로드 후 최초신고서, 변동신고서 순으로 편집하여 공개
- ▶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대조·확인하여 재산이 누락·오기되거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참고 1 공개목록 주요확인사항

- 소속 / 직위 확인(○○부 ○○대학교 / (전)총장)
-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 번지·동·호수, 상가 번지·층수·호수 등, 사적인 관계 표현 등)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삭제
- 재산변동이 큰 경우 단위 착오 확인

※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건물 번지 및 층·동·호수 등은 등록의무자 확인 후 반드시 삭제

상세소속, 직위 반드시 확인

지번, 지목, 면적 확인 (임야는 '산' 유무확인)

소속	직위	의원	성명	김공직			
서울특별시의회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총전가액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토지(소계)							
본인	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산155번지 200㎡	50,000	10,000	0	60,000	개별공시지가 상승
▶건물(소계)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권오릉하늘채아파트 건물99.00㎡	400,000	20,000	0	420,000	공동주택가격 증가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건설기계,선박및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5년식 BF소나타 배기량(1,996cc)	25,500	0	500	25,000	가액변동
▶예금(소계)							
본인		국민은행 50,000(10,000 증가)	40,000	10,000	0	50,000	급여저축
▶채무(소계)							
본인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감소	10,000	0	500	9,500	일부상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계			505,500	40,000	0	540,500	증감액:40,000천원 (가액변동:29,500천원)

주택, 아파트 등의 번지, 동·호수, 층수 삭제

차량번호, 회사명 삭제

채권자·채무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삭제

고지거부 사유 입력 (독립생계유지,타인부양등)

위와 같이 공개됨을 확인함. 등록의무자 : 성명 (인)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참고 2 최초신고서 공개목록 예시

소속		직위		성명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토지(소계)				600,000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1,490㎡		100,000 (50,000)	
조부	임야	경기 안산시 단원동 235번지 100㎡ 중 50㎡		200,000 (100,000)	
모	잡종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00번지 990㎡		200,000 (100,000)	
본인	지상권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3번지 100㎡ 중 50㎡		100,000 (100,000)	
▶ 건물(소계)				4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파트 90㎡		20,000 (10,000)	
본인	아파트 (분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아파트 90㎡		30,000 (80,000)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빌라 90㎡		100,000 (10,000)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대흥빌라 90㎡		100,000 (200,000)	
부	전세권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파트 90㎡		50,000 (10,000)	
장남	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대지 300㎡ 건물 90㎡		100,000 (1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그랜저Q(배기량 2,500cc)		10,000 (10,000)	
▶ 현금(소계)				10,000	
배우자		현금		10,000	
▶ 예금(소계)				95,000	
본인		농협중앙회 20,000 우리은행 5,000		25,000	
배우자		국민은행 70,000		70,000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 증권(소계)			120,000	
본인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 KT 100주	20,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장남	상장주식	국민은행 5,000주	50,000	주식백지신탁 예정
▶ 채권(소계)			20,000	
본인		사인간채권	20,000	
▶ 채무(소계)			120,000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20,000, 신한은행 40,000	70,000	
본인	건물임대 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0	
▶ 금 및 백금(소계)			10,000	
배우자		24K 금반지 100g	10,000 (8,213)	
▶ 보석류(소계)			45,000	
배우자		루비반지 붉은색	20,000 (1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25,000 (25,00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80,000	
본인	동양화	동양화(작품명 : 가을의풍경) 남농 허건, 160×320cm	50,000 (5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320cm	30,000 (25,000)	
▶ 회원권(소계)			60,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10,000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50,000	

참고 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예시

소 속		직 위		성 명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0,000	620,000	350,000	820,000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부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매도금으로 매입
본인	대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151-3번지 500㎡(500㎡ 감소)	150,000	0	150,000	0	매도
▶ 건물(소계)			350,000	600,000	150,000	8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80㎡(건물 80㎡ 증가)	0	150,000 (16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삼성아파트 90㎡(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납입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서울 종로구 적선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 300,000천원, 건물임대료로 납부
부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롯데아파트 0㎡(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차남	근린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가 100㎡(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에쿠우스 배기량 (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 현금(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지출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예금(소계)			135,000	25,000	38,000	122,000	
본인		국민은행 10,000(5,000 감소), 우리은행 5,000 (3,000 증가)	17,000	3,000	15,000	5,000	
배우자		우리은행 30,000	50,000		20,000	30,000	
부		농협 50,000(20,000 증가), 대한생명보험 30,000 (2,000감소)	62,000	20,000	2,000	80,000	
차남		삼성생명보험 7,000(2,000 증가), 국민은행 0 (1,000감소)	6,000	2,000	1,000	7,000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0	0	0	0	
▶ 증권(소계)			95,000	15,000	30,000	80,000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 5,000주, KT 100주	25,000	5,000	0	30,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100주 증가), KT 0주(100주 감소)	20,000	10,000	10,000	20,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0	20,000	30,000	
▶ 채권(소계)			70,000	20,000	10,000	80,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20,000	0	10,000	10,000	증권매입에 사용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50,000	20,000	0	70,000	예금인출로 대여
▶ 채무(소계)			70,000	140,000	30,000	180,000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20,000	0	10,000	10,000	예금인출로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20,000 감소), 우리은행 20,000(10,000 증가), 신한은행 40,000(20,000 증가)	50,000	30,000	20,000	60,000	봉급으로 상환
부	기타	중앙기업 10,000(10,000 증가)	0	10,000	0	10,000	생활비 사용
부	건물임대 채무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0	0	100,000	지인에게 대여
▶ 금 및 백금(소계)			20,000	15,000	0	35,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000	0	25,000	가액변동
▶ 보석류(소계)			30,000	5,000	0	3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 매입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30,000	0	0	30,000	

참고 4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소 속		직 위		성 명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00,000	-	-	600,000	
본인	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100-1번지 1,490㎡	100,000	-	-	100,000	
본인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0-1번지 1,000㎡	100,000	-	-	100,000	
조부	임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2번지 100㎡	200,000	-	-	200,000	
모	잡종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0번지 990㎡	200,000	-	-	200,000	
▶ 건물(소계)			550,000	-	-	55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선동 롯데아파트 건물 90㎡	200,000	-	-	200,000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엘지빌라 건물 90㎡	100,000	-	-	100,000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서울 종로구 적선동 벽산빌라 건물 90㎡	100,000	-	-	100,000	
부	아파트 (전세 임차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현대아파트 건물 90㎡	50,000	-	-	50,000	
장남	빌딩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이마빌딩 대지 300㎡, 건물 9,000㎡	100,000	-	-	1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0,000	-	-	20,00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오피러스(배기량 2,500cc)	20,000	-	-	20,000	
▶ 현금(소계)			10,000	-	-	10,000	
배우자		현금	10,000	-	-	10,000	
▶ 예금(소계)			70,000	-	-	70,000	
본인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5,000	20,000	-	-	20,000	
배우자		우리은행 70,000	50,000	-	-	50,000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0	0	0	0	
▶ 증권(소계)			70,000	-	-	70,000	
본인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 KT 100주	20,000	-	-	20,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	-	50,000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1. 제도개요(법 제10조, 제27조, 영 제26조, 규칙 제11조)

-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등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비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철저히 보호
 - 등록의무자 본인이 자신의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제한

2. 허가사유(법 제10조제4항)

- ①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등에서 재산등록사항 자료 요구 시 허용범위

- ▶ 국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 할 수 없음
- ▶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허용 범위는?
 -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인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3. 허가권자(영 제26조)

허가권자	허가 대상	비고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 자료 요구, 의정 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관할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의 장	등록의무자이었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관할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된 경우 : 공직자윤리위원회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문 신청 및 허가신청서 제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열람·복사 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함

5. 위반시 제재

-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위원회, 법 제22조 본문 및 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

참고 질의·응답

1. **재산등록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상속인이 등록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 ▶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수사나 국정감사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허용되나, 재산상속인은 등록서류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등록의무자의 재산사항에 대한 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 ▶ 열람·복사 허가는 등록의무자이었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사항이므로 범죄수사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등록기관장이 열람·복사하여 신청인(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유선상으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 ▶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은 반드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 본인 복사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 확인 후 사본 직접 전달이 원칙.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이 수령 가능(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 관련하여 긴급성 등의 이유로 구체적 비위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 없이 복사·열람 허가할 수 있는지?**
 - ▶ 재산등록에 관한 열람·복사허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4항에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로 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번호, 범죄명, 피의자(피고인, 피내사자) 등이 포함된 수사사건 기록부, 공소장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복사·열람 허가 가능합니다.

5.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재산 심사 또는 소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의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이외의 자료(심사결과, 소명사항 등)는 열람·복사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1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신청 대상 및 증빙자료

구 분	대상 등록자	대 상	제출 증빙자료	비 고
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 였던 자	·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로 재판상 필요한 경우	· 사건번호, 범죄명, 피의자 (피고인) 등이 포함된 수사 사건기록부, 공소장 등	증빙자료 없이 단순 자체 감찰, 내사를 위한 신청은 불허
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 였던 자	·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요구 등 으로서 특정 공직 자가 구체적 비위 사건 관련 규명이 필요한 경우	· 의무자가 구체적 비위 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 - 범죄명, 피의자(피고인, 피내사자) 등이 지정된 자료	국회 본회의, 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자료 요구 하여야 하며, 국회의원 개별적 요구시 불허
법 제10조 제4항 제3호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 였던 자	·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직유관 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 비위 사건 관련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의무자가 구체적 비위 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장의 결재 필요
법 제10조 제4항 제4호	등록의무자 였던 자	·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요구	·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신청서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2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 신청시 제출서식(예시)

기 관 명 (예시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번호							
피의자 피고인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 padding: 5px;">성 명</td> <td style="padding: 5px;">※ 피의자 등은 개인별로 특정되어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주민 번호</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주소 지</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성 명	※ 피의자 등은 개인별로 특정되어야 함	주민 번호		주소 지	
	성 명	※ 피의자 등은 개인별로 특정되어야 함					
	주민 번호						
주소 지							
죄 명							
근 거 법 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임검사(또는 경찰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 또는 서명</p> </div> </div>							

- ※ 수사기록지, 비리혐의수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공소장 사본 등은 별도 첨부
- ※ 이외에 공식적으로 범죄수사나 비위조사가 진행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시 열람·복사 가능

참고 3 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 [열람 복사]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이내
등록 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휴대전화
	소속	직위(직급 등)
열람·복사 대상재산		
복사 부수		
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 복사] 를 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귀하

위임장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사람

소속(주소) :
직위(직급 등) :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소속(주소) :
직위(직급 등)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귀하

서약서

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등록사항 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 없이 전달(우편송달 금지)하겠습니다.
1. 전달 도중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1. 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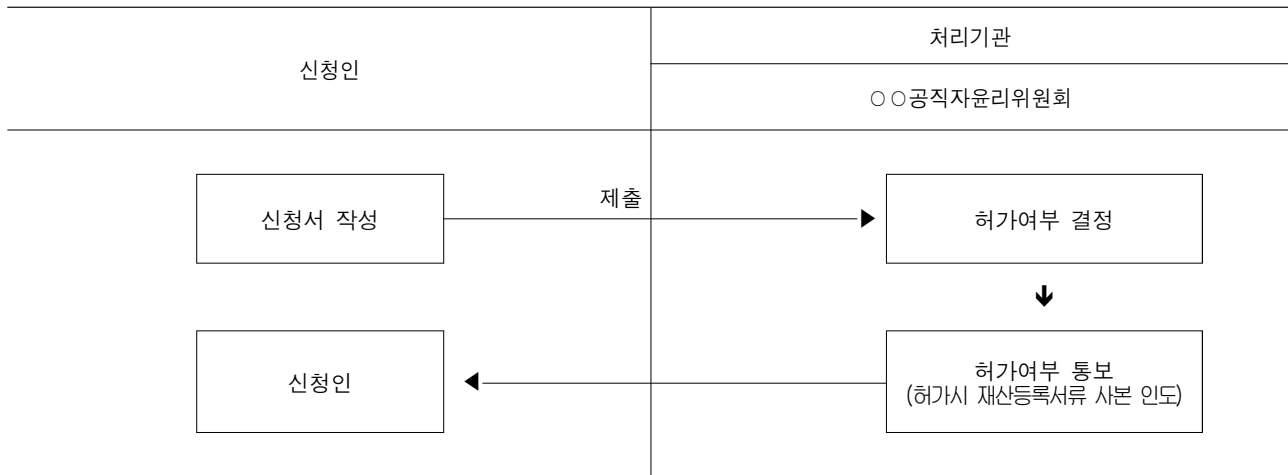
소속(주소) :
직위(직급 등) :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귀하

업무 처리절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IV

위반시 제재

1. 재산등록 거부죄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제2항)

2.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함(법 제30조제4항)

3.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제1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7호)
- 이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2호)
 -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함(법 제30조제4항)

-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하여야 함(법 제8조제7항)

4. 주식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 위반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증감원인 등의 소명자료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3호)

5.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9호)

6.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0조제3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6호)
-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

7.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0호)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제1항)

8.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심사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하여야 함(법 제8조제7항)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2.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

3.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법 제8조의2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9.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제2항)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제3항)

10.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11.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

12.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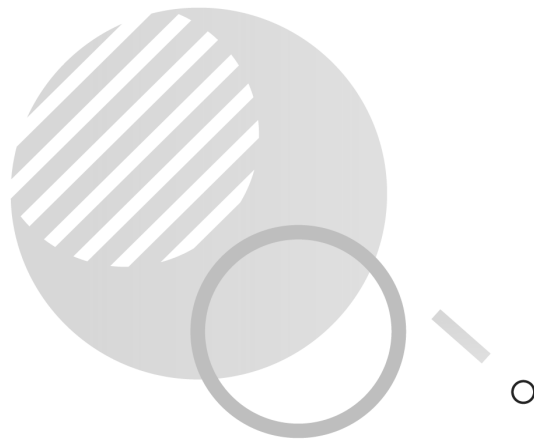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법 제8조제13·14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4·5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13.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법 제12조제2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3호)
 -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함(법 제30조제4항)
- 심사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심사에 응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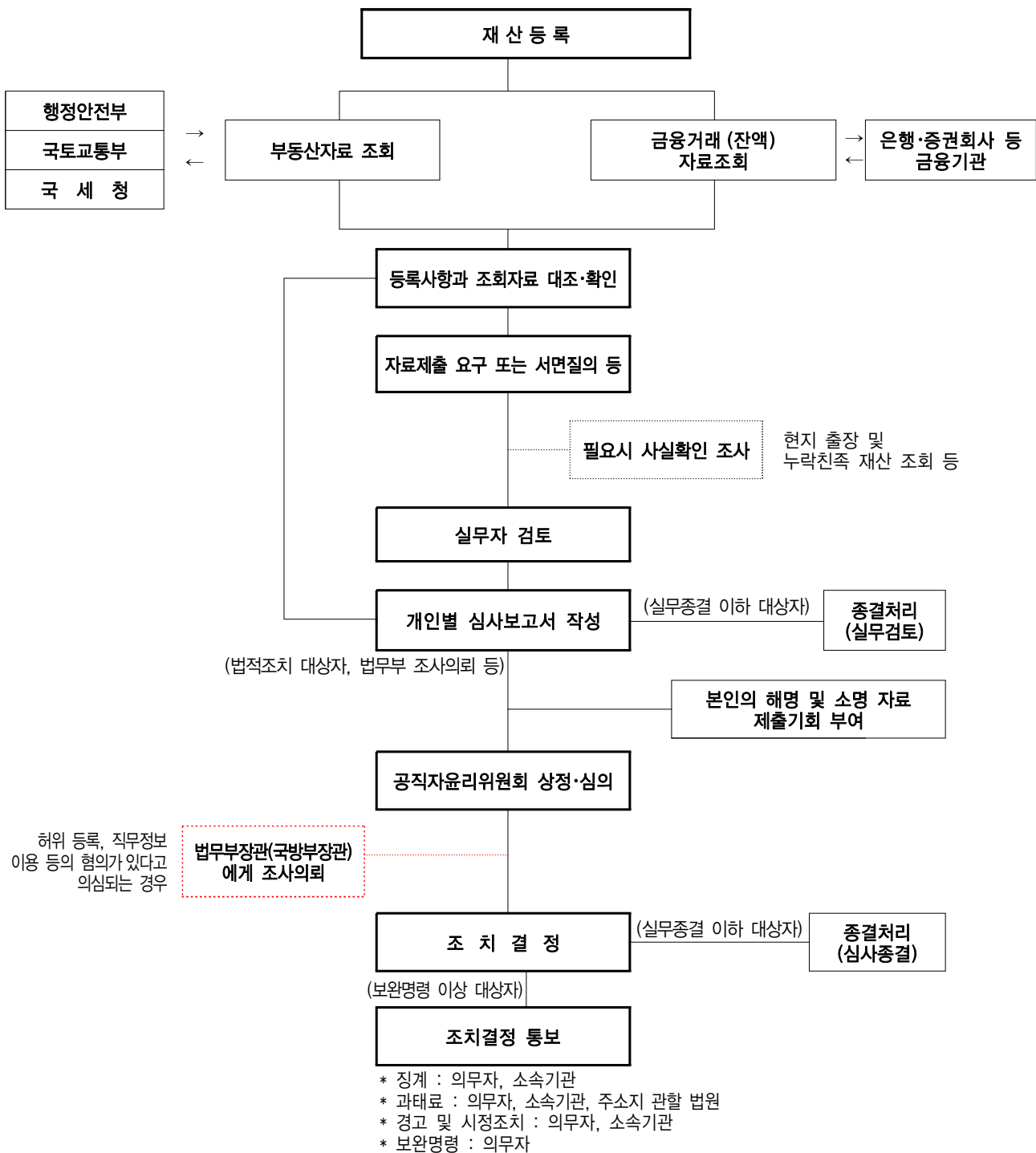


—
제3장
재 산 심 사
—



제3장 재산심사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I

재산심사 개요

1. 심사의 내용

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법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법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하여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제1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
 - 직무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

참고 질의·응답

1.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지?
 - ▶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경고 이상의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더라도 전제조건인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2. 심사기한

가. 재산공개 대상자(법 제8조제10항)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
- 단, 공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비공개 대상자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중 심사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임기관 심사대상 중 법적조치 이상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9월말 이전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함

참고 질의·응답

1. 공개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필요시 3월 범위 내 연장)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 경과 이후에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 ▶ 공직자윤리법의 근본목적은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심사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은 법정 심사기간내 심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사를 계속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위원회의 권한)

가. 보완명령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을 때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음(법 제8조 제2항)
 -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완 신고서를 제출(영 제10조제1항)

나. 소명요구

- 재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서면질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 및 제13항)
 -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자료 또는 답변서 제출(영 제10조제2항)

다.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음(법 제8조제4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자료 또는 답변서 제출(영 제10조제3항)

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 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함(법 제8조제5항)

<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범위(영 제10조의2) >

- ▶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가능
- ▶ 요구사유
 -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 관계기관 자료제출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영 제10조제3항, 법 제25조)

마. 출석요구

-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음(법 제8조제6항)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로 함(영 제11조제1항)
 - 등록의무자 및 관계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해야 함(영 제11조제2항)
 - 2회 이상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음(영 제11조제3항)
 -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질문 및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영 제12조제1항), 등록의무자는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채택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함(영 제12조제2항)

바.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함(법 제8조제7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사.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 등록의무자에게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8조제13항)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사유(영 제14조의2제1항) >

-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 ▶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 ▶ 위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8조제13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영 제14조의2제2항)
 -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증빙자료대체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영 제14조의2제3항)

4. 심사결과의 처리

가. 법적조치

- 심사결과 ①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②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조치(법 제8조의2제1항)
- 법적조치사항(법 제8조의2제2항)
 - ① 경고 및 시정조치
 -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음(법 제8조의2제4항)

○ 조치결과의 통보

- 법적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5항)

○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보

- 재산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영 제15조)

참고 질의·응답

1. 재산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경우 재심사를 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1) 결정의 기초가 증거자료의 위·변조 또는 고의 누락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최초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의2).

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

○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 제8조의2제3항)

다.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법적조치 대상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조세관련 위반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법 제8조의2제6항)

5. 심사관할

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 4급(5급) 이하에 대한 심사 : 수임기관 위임심사 •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시·도 교육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시·군·구 의회의원 • 시·군·구의 4급 공무원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시·군·구의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나. 심사권의 위임

(1)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법 제8조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제12항)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등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

등록기관	위임 대상	재위임 대상
감사원	• 5급 이하 공무원	
국가정보원	• 1급 이하 공무원	
금융위원회	• 4급 이하 공무원 • 금융감독원 2급 이하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 4급 이하 공무원 • 원전관련공직유관단체 2급 이하 직원	
환경부	• 4급 이하 공무원	• 지방환경관서 6급 이하 공무원
국토교통부	• 4급 이하 공무원	•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	• 4급 이하 공무원 • 소장 이하 장교와 군무원	
국세청	• 5급 이하 공무원	
관세청	• 5급 이하 공무원	
검찰청	• 지검 및 지청의 부장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 • 5급 이하 공무원	
경찰청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4급 이하 공무원	• 지방경찰청 7급(경위) 이하 공무원
소방청	• 4급 이하 공무원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청	• 4급 이하 공무원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지방해양경찰청 7급(경위) 이하 공무원
그 밖의 부·처·청	• 4급 이하 공무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직접심사 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금융감독원,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일부 제외) 등

<참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위임연혁>

- ▶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이후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관이 되는 부·처·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제5조제1항제5호, 령 제4조의3)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4급 이하 심사권 위임(제4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93.10.9.)**
 - 등록기관인 부·처·청이 아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직유관 단체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미위임
 - * 공정위, 금융감독위, 청렴위는 대통령령 제4조의3이 정하는 위원회에 해당
- ▶ 특수분야인 **국방부, 검찰청, 국가정보원**의 특성을 감안, 지검 및 지청의 부장급 이상의 검사를 제외한 검사, 소장 이하의 장교와 군무원, 국가정보원 1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위임(제5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93.10.25.)
- ▶ 재산등록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등록의무자 수가 급증한 경찰청과 국세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해 **지방경찰청과 지방국세청**에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제31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95.2.18.)
- ▶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4급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제78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98.12.30.)
-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산등록기관으로 추가 지정되고 건축·환경 등 특정 분야로 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그 **4급 이하(금감원 2급 이하)**에 대해 위임하고, **건교부 및 환경부**에 대해서는 6급 이하에 대해 소속기관에 **재위임**(제97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01.5.25.)
- ▶ **부패방지위원회**가 재산등록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심사권을 위임(제103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02.2.26.)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그 **4급 이하, 소장 이하의 장교 및 군무원**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제137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06.2.6.)
 - * '06년 심사심급제 도입 :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의 심사관할을 정부공윤위로 상향 조정, 시군구 4급, 기초의원은 시도윤리위로 상향조정(공포 '06.12.28., 시행 '07.6.)
- ▶ **지방해양경찰청** 신설 및 등록기관 지정에 따라 경위·경사·7급(호)에 대한 심사를 지방해양경찰청에 위임(제149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07.7.5.)
-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13.3.22.)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재산등록의무자 중 4급 이하 공무원(윤리업무 담당부서 제외)에 대한 재산심사권을 위임하고,
 - 정부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7개 기관(**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개편전 기관에 위임된 심사권을 유지(제21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13.3.21.)

- ▶ 공무원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고, 동일 직급임에도 심사관할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4급 공무원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4급 및 부패방지국 5급 이하(65명)의 심사관할권을 정부공무원 **직접심사**로 조정(제21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13.3.21.)
- ▶ 정부조직개편('14.11.19)에 따라
 -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재산등록의무자 중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에 대한 재산심사권 위임, **인사혁신처**의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재산심사권 위임(윤리업무 담당부서 제외)
 -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는 개편 전 기관에 위임된 심사권을 유지, 폐지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위임권 회수(제23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14.12.19.)
- ▶ '14.7.1자로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6개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의 2급 직원에 대한 재산심사권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제247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15.12.23.)
- ▶ 정부조직개편('17.7.26)에 따라 신설된 소방청의 재산등록의무자 중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에 대한 재산심사권 위임, 해양경찰청 재산등록의무자 중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에 대한 재산심사권 위임(윤리업무 담당부서 제외)
 - 명칭이 변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개편 전 기관(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에 위임된 심사권을 유지, 部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편 전 기관(중소기업청)에 위임된 심사권을 유지, 폐지된 국민안전처의 위임권 회수(제268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17.8.25.)

(3) 수입기관의 기능

- 위임받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재산 심사
 - < 위원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능 >
 - 경미한 누락 재산에 대한 보완명령(법 제8조제2항)
 -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질의, 소명요구 및 해명·소명기회 부여(법 제8조제3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제출 요구(법 제8조제4항)
 - 재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출석요구(법 제8조제6항)
 - <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법 제8조제5항)
 -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취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군인,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법 제8조제7항)
-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법적조치 대상자에 대한 위원회 상정
 - 법적조치는 위원회의 권한사항이므로 수입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음
 - 법적조치 대상자, 법무부 등 조사의뢰, 금융거래내역 자료제출 요구 건 등은 매월 말 기준으로 취합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 심사결과 상정시 관련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등 심사자료 첨부

(4) 수입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 심사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영 제13조제1항)
- 심사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영 제13조제2항)
 - 수입기관의 재산등록현황
 - 심사개요
 - 심사결과(조치의견 포함)
 -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II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 재산심사 절차

심사절차	주요 내용
가. 심사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자 전원 심사대상으로 선정 - 비공개자 선별 심사시 '비공개자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심사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동의자는 기존 사전조회 자료 활용 - 정보제공 비동의자는 대상자 확정 후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
다. 심사실시	
① 기본사항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일, 신분변동 사유, 직계존·비속 등록여부, 재산 종류별 기재사항 등 확인
② 항목별 대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등록사항과 확보한 심사자료의 대조·확인
③ 소명 및 자료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누락·과다 사항, 소득 대비 과다 재산증감 사유, 기타 법적 위반 사항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 요구
④ 사실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소명서와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 확인
⑤ 심사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심사 결과, 소명자료 등 검토 후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실무검토의견 작성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는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
마. 심사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결과에 따라 의무자,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법원 등)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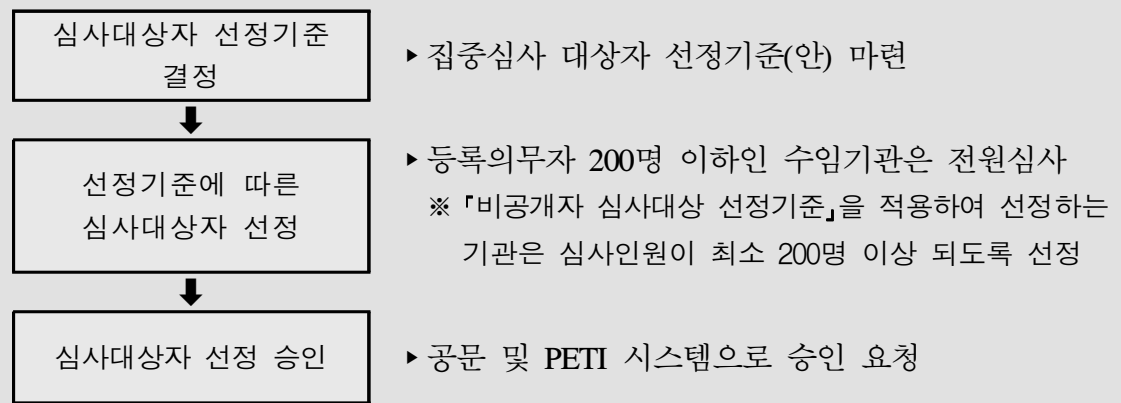
※ 공직윤리시스템(이하 PETI)을 활용

2. 단계별 세부사항

가.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 공개자는 전원 심사대상자로 선정
- 비공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원을 심사대상자로 선정
 - 다만, 심사대상자의 수가 많아 전원 심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 최대 3년 동안 1회 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결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수입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재산심사 방침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부동산 등 자료조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자료조회 의뢰

< 수입기관 심사대상자 선정 절차 >



나.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로 사전 자료조회를 이미 실시한 등록의무자의 경우 기존 사전조회 자료를 심사시 활용(법 제6조제9항)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는 자료 조회대상자로 선정 후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선정된 자료 조회대상자에 대해 재산등록신고서의 친족사항에 기재된 재산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명단 작성
 - 조회대상자에 대한 자료조회는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으로 조회 의뢰(법 제8조제4~5항)

- 자료조회 및 회신자료 확보방법
 - 자료 조회 및 회신은 PETI시스템 이용

재산항목	제공 기관	비고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하위 수임기관 제외) 자료조회 대상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하위 수임기관 자료조회 대상자 	공문 의뢰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인프라구축과) 	공문 불필요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조사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자료조회 대상자 ▫ 관할 지방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하위 수임기관 자료조회 대상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류</th> <th>해당지역</th> <th>분류</th> <th>해당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서울지방청</td> <td>서울</td> <td>광주지방청</td> <td>광주, 전남, 전북</td> </tr> <tr> <td>충부지방청</td> <td>인천, 강원, 경기 일부</td> <td>인천지방청</td> <td>인천, 경기 일부</td> </tr> <tr> <td>대전지방청</td> <td>대전, 충남, 충북</td> <td>대구지방청</td> <td>대구, 경북</td> </tr> <tr> <td>부산지방청</td> <td>부산, 경남, 울산, 제주</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분류	해당지역	분류	해당지역	서울지방청	서울	광주지방청	광주, 전남, 전북	충부지방청	인천, 강원, 경기 일부	인천지방청	인천, 경기 일부	대전지방청	대전, 충남, 충북	대구지방청	대구, 경북	부산지방청	부산, 경남, 울산, 제주		-	공문 의뢰
분류	해당지역	분류	해당지역																			
서울지방청	서울	광주지방청	광주, 전남, 전북																			
충부지방청	인천, 강원, 경기 일부	인천지방청	인천, 경기 일부																			
대전지방청	대전, 충남, 충북	대구지방청	대구, 경북																			
부산지방청	부산, 경남, 울산, 제주		-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공문 불필요																				
예금(보험) 주식,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여개 금융기관 	공문 불필요																				

< 금융기관에 자료 의뢰시 유의사항 >

- ▶ PETI시스템에 관인 미등록기관은 별도 공문으로 요청
 - ※ PETI시스템-[위원회]-[관인관리] 에서 관인 등록여부 확인
- ▶ 자료요청 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와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서」(대상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금융거래자료 조회·회신 서식>

- [별지 제7호의2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수입기관 자료조회 의뢰

- 금융거래자료(잔액)조회 승인 요청(수입 심사기관)
- 수입기관이 금융자료 조회를 요청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조회가 가능함(법 제8조제12항)
- “금융거래자료(잔액)조회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요청

< 금융거래자료(잔액)조회 승인요청서 >

① 등록의무자(명)	조회구분	② 조회대상자(명)			③ 조회대상비율(%)
		전체	등록의무자	친족	
○○○ ^①	심사	○○	○○ ^②	○○	^② / ^①
	사전	○○	○○ ^③	○○	^③ / ^①

※ ①,②에 해당하는 현등록의무자 및 조회대상자 인원은 PETI시스템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고, ③에 해당하는 비율은 공문 시행 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소속	등록의무자	등록기준일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구분	선정사유
1	소속	홍길동	2020-12-31	본인	홍길동	801111-1234567	심사	

※ 부동산 자료조회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가능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비용」 지급

-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
- 통보방법 : 등기 또는 일반우편
- 통보비용 : 등기비용 2,000원, 일반우편 380원('20년 기준)
- ※ 우송료 실비로 지급 가능
- 청구 및 지급 : 금융조회 회신공문에 통보방식·인원·비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한 금액을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

- 금융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비용 지급 철저
 -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통보비용 지급요청에 따라 기관명칭, 입금자 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빠트리지 말고 지급(지급요청 순으로 2~3회 나누어 조기지급)

참고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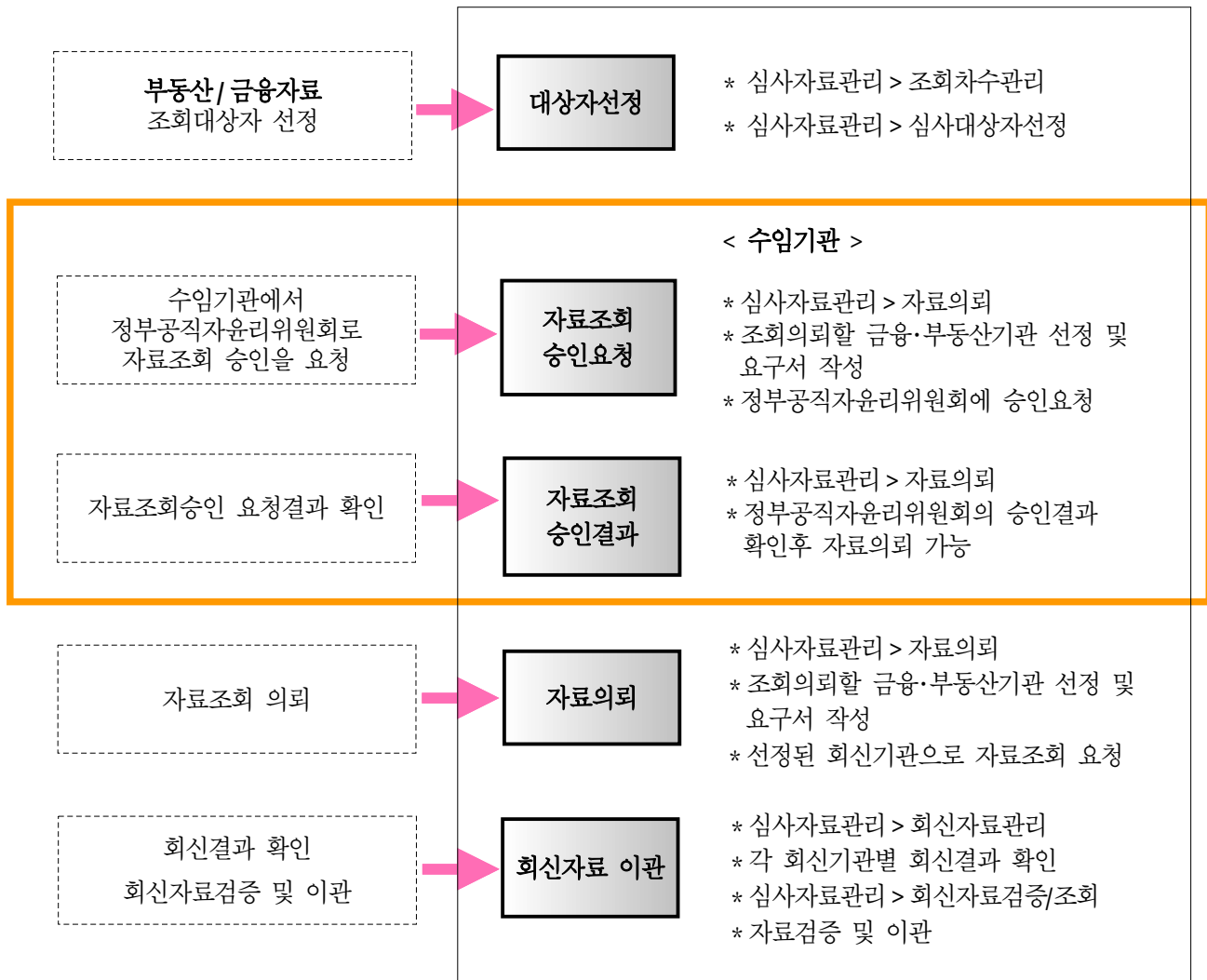
1. 부동산 및 금융조회시 대상자 선정의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 ▶ 부동산조회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하나, 금융조회는 금융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금융조회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조회 가능).

2.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와 사전 금융조회 간의 차이점은?

- ▶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조회 시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토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명의인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금융조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명의인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정기변동재산 신고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명의인 통보를 하지 않으며 통보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1 심사자료 확보 업무처리절차



참고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작성 예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①수신처 : ○○은행			
②문서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23	③요구일자	2020.3.10. (제출기한 : 2020.3.30.)
④요구기관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⑤담당자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홍길동 (T : 044-201-0000. F : 044-201-0000)
⑥책임자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과장	임겨정(T : 044-201-0000)
요구 내용	⑦명의인의 인적사항 ¹⁾	붙임2 참조	
	⑧요구대상 거래기간	붙임2 참조	
	⑨요구의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⑩사용목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⑪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조회기준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귀 기관(본점·지점·출장소 등 전체)과 거래한 금융자산의 계좌별·증서별 잔액 (대출금 포함)	
⑫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⑬특이 사항*	○ 재산심사용 금융자료 조회이므로 자료회신 후 10일이내에 명의인통보를 해야함 ○ 금융조회결과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회신에서 제외하고 명의인 통보를 하지 않음 ※ 조회일자는 대상자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은 각 회원사에 안내하여 회신바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다. 심사 실시

(1) 재산등록 기본사항 확인

- 등록기준일, 신분변동 사유(정기변동, 승진, 퇴직 등), 직계존·비속 등록여부, 재산의 종류별 기재사항 등 확인

(2) 항목별 대조심사(세부내용은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참조)

-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과 확보한 심사자료를 PETI에서 대조·확인하고, 자금 흐름 분석 등을 검토
 - ※ PETI에서 대조 심사한 내역은 시스템상 자동처리된 것으로, 글자 하나만 틀려도 다른 항목으로 인식함. 따라서, 각각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일 자료가 누락·과다로 표시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필요
-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 병행

(3) 소명 및 자료제출 요구

- 재산등록사항 대조, 비조회성 재산 등록 여부, 재산형성과정, 타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명요구사항 확정
- 소명요구 사항
 - 신고 누락·과다 또는 허위 및 착오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자료제출 요구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및 주식투자 의혹이 있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주식취득 경위 등 요구
 - 소득을 고려할 때 상식 이상의 불합리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재산수입·지출 내역 등 요구
 - 기타 법적 위반 사항 및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 ※ 간단한 내용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 가능

(4) 소명자료 검토 및 사실확인

- 주어진 기간 내에 소명서가 도착하도록 독려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소명 요구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소명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재산을 누락 또는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도 잘못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도록 PETI에 반영
- 허위·은닉·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참고 질의·응답

1.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727호, 2020.5.29.)」 상 비조회성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처분에 해당 하는데 비조회성 재산은 무엇인가요?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상 비조회성 재산은 사인간채권·채무, 현금, CD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재산항목입니다. 다만, 건물임대채무,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의 재산항목은 재산신고시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비조회성 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

- 대조심사 결과 및 제출된 소명서를 확인하여 누락·과다 재산의 규모별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처분 결정 전 등록의무자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당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중 또는 감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처분 단계를 조정 하여 최종 처분 결정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조회성 재산(사인간채권·채무, 현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비조회성 재산의 심사 및 처분기준을 적용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
-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 직접 해명 및 추가 소명기회 부여할 수 있음

- * 경고,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인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심사결과 조치

(1) 심사결과 통지

- “보완명령”은 개인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므로 의무자에게만 공문을 발송
- “경고 및 시정조치”는 “경고장” 및 “심사결정서”를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발송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조치내용을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는 등록의무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에는 “심사결정서” 및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 요구
- “과태료 부과”는 해당의무자 및 소속기관에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에 “심사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 ※ 공문, 심사결정서, 과태료부과 대상자 통보서, 재산등록 위반내역 등의 서식은 PETI - [재산심사] - [개별심사] - [심사결과 사후처리]에서 출력
 - ※ 위 모든 처분 시 보완신고서를 생성하고 의무자에게 보완신고하도록 안내

(2) 타법 위반사항의 통지

- 재산심사 결과 거짓 등록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조사의뢰 공문 발송하고,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결과 보고
 - * 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인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질의·응답

1. 잘못 신고한 금액, 비조회성 재산, 친족누락, 경미한 사항 등 각 처분기준에 해당하여 그 중 가장 중한 비조회성 재산 심사기준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보완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
 - ▶ 보완신고서는 등록의무자가 잘못 신고한 사항을 정정하는 의미이므로, 등록의무자가 비조회성 재산 심사기준에 의해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 신고한 모든 사항(과다·누락·과소 재산, 친족, 경미한 사항 포함)을 정정하여 보완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의·응답

2. 재산심사 결과,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거나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심사 중인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이후의 퇴직 또는 의무면제 신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지만, 보완신고서가 없더라도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하 ‘질서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 ▶ 질서법상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는 과태료 부과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유권해석 '11.3.).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가. 친족사항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등록대상 확인
 - 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등 정확한 기재 여부 확인
 - 직계존속(부모) 사망 여부와 배우자 미등록 사유 확인
 - 친족란의 직업 기재내역 등을 확인하되 자녀의 유학, 취업사항 등에 대하여 타 재산항목과 연계하여 확인
 - 고지거부 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추가 고지거부자, 딸의 출가, 가족 사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확인
 - 혼인한 자녀의 손자녀 신고 여부 확인
- 2009년 2월 3일 이후 신규로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여성의 경우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등록 여부를 확인
 - 시부모를 등록해 온 여성의무자가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에는 친부모 재산을 신고했는지 확인
- 신고한 친족정보와 확인된 친족정보가 상이할 경우 누락친족 등록 후 친족사항에 대한 소명요청 수행
 - 소명결과, 해당 친족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여 심사

나. 부동산(토지)

- 부동산등기정보 열람을 통해 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면적 등 설정된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
 - 공유지분일 경우 소유지분에 대한 면적과 가액 확인
 - 가액은 “면적(m²) × 개별공시지가”이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매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확인
 - ※ 토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 매도, 매입 중인 부동산의 적정성 및 적법성 확인
 - 매도한 경우 : 잔금을 받았더라도 등기이전이 안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 매입한 경우 :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등록해도 무방), 중도금 지불시부터 등록하는 것으로 계약관계와 주고받은 총금액 등 확인
 - ※ (2018. 7. 2 이후 최초신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건물도 동일)
 - (재산변동신고) 신규 매입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는지,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가액변동 신고를 하였는지,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건물도 동일)
 - * 기존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2011. 4. 12. 변경
 - 매도·매입 자금의 흐름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 토지의 매도·매입 신고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더라도 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실거래액을 확인하여 재산의 증감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 관련 여부 확인
-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확인
 - 상속절차는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과의 관계, 재산세 납부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
 -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정 상속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 재산인지 여부 확인(문중재산, 친목 회비 등)

< 유의사항 >

- ▶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항목에서 누락으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건물” 항목에 기재했는지 여부 확인
- ▶ 면적의 “㎡”와 “평” 혼돈 착오기재 여부 확인
- ▶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 “사실상 타인소유” 등의 기재가 있고, 등기명의인이 실소유자와 다를 경우 그 사유 확인
- ▶ 최근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 납부 여부 등 파악

다. 부동산(건물)

- 부동산등기정보 열람을 통해 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면적 등 설정된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
 - 면적 및 가액 기재의 적정성
 - ※ 아파트의 경우 토지(대지권)의 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대지 포함) 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 가액(대지 포함)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사이트에서 확인
 - * 오피스텔은 전체,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 ※ 그 외 기타 건물 등의 가액은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시·군·구에 문의 가능)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 기재 여부 확인
- 분양권의 경우 보유액란에는 등록기준일까지 불입한 총납부액을 기재했는지 확인 (총분양가는 괄호 안에 기재)
- 재건축 중인 건물은 새로 분양받은 건물의 동호수를 배정받기 전에는 기존 건물로, 동호수 배정 후에는 분양권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 무허가 건물 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으로 기재했는지 확인
- 매도·매입 자금의 흐름이 정확한지 확인, 자금출처·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소명 요구

- 건물의 관리형태 확인
 - 소유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임대차여부 및 임대채무 등록여부 확인
 - 본인 주소지 임차권 미신고 및 성년 또는 혼인한 자녀의 주소지 변동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정보 조회를 통한 전세권 누락여부 확인
 - 공실로 소명할 때 건물의 위치 또는 공실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증빙자료 (관리비 납부영수증, 전기요금·수도요금납부영수증 등) 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 예금, 채무 변동 신고시 비교란에 자녀 전세권 및 주거 매입 등을 기재한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 토지란의 신고 여부와 대조 확인

< 유의사항 >

- ▶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건물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토지란에 따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확인
- ▶ 면적의 “㎡”와 “평” 혼돈 착오기재 여부 확인
- ▶ 부동산 심사시 조회기관의 전산자료 확인결과 매도·매입 사실이 일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입력시점의 차이일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확인
- ▶ 부동산 거래의 경우 투기지역 거래, 위장전입 파악을 위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 주소지의 타지역 부동산 보유자 면밀 검토 필요
- ▶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재산증감 파악을 위해 실거래가 파악은 기본이며, 신고가가 공시가격과 비슷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사본 등 요구
- ▶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임대나 전세여부, 형성과정 확인시 참고

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권리관계 및 가액 기재의 적정성 확인
 -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보험증권 등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며,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전문가 평가액,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평가가액 등을 확인
 - 자동차의 신규 취득시 자금출처(부동산 매도, 현금지출, 예금인출, 신규 채무 등) 등 사실관계 확인
 - ※ 자동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조회금액(취득가로 조회됨)을 등록기준일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수정

< 유의사항 >

- ▶ 리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채무 및 보증액의 채권(리스회사)은 신고 여부 확인 필요함.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자 명의로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누락이 발생하므로 확인
 - (운용리스)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금융리스) 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 자동차 할부 구매 시 자동차를 신고하고 할부 잔액은 채무에 신고했는지 확인
-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이 단체장 명의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관용차량인지 여부 확인
- ▶ 조회자료의 차량가액은 자동차 취득가격이므로, 신고금액과 상이할 경우 차량연식 등을 감안하여 심사

마. 현금

- 현금 과다 보유 및 변동액이 클 경우 그 사유 확인
 -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유 확인
 - 개인별 보유 현금의 액수가 클 경우 또는 과도한 증감이 있는 경우 재산 흐름 분석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 등의 적합성 검토
 - 특별한 사유(사업 등)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사유, 보관장소 등 사실관계 확인

< 유의사항 >

- ▶ 1년 이상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현금이나 거액의 현금은 재산의 급격한 증감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신고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 ▶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여 현금란에 신고해야 하며,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천만원이 넘으면 등록하여야 함

바. 예금

- 가액 기재의 정확성 여부 확인
 -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예금은 신고기준일 현재 평가액으로 기재
 - 보험료의 경우 불입액 기재(만기환급금, 예상 해지환급금, 보상금 아님), 보장 기한이 지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신고대상임

- 예금변동이 클 경우 비고란의 사용처 및 자금출처를 반드시 확인
- 증권회사의 예탁금과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은 예금항목 신고대상임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 확인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금융채무 항목에 신고했는지 확인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에 신고한 예금계좌도 예금과 동일하게 심사

< 유의사항 >

- ▶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 ▶ 보험의 경우 저축성이 가미되어 있는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대부분의 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성격임. 현실적으로 순수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정도이므로 대부분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필요시 보험계약서 확인
- ▶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로 신고하여야 함
- ▶ 중도 인출한 보험의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해야 함
- ▶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등록대상이 아님
- ▶ 사실상 의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의무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해야 함
- ▶ 고액 누락액의 경우 회신기관의 착오인지 확인 필요
- ▶ 증권사의 간접금융상품 및 펀드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 유가증권 항목란의 누락 여부 교차 검토 필요
-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은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별 확인 필요

사. 증권

- 수량과 가액의 정확성 여부 확인
 -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등록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으로 금융거래자료 조회내역과 대조·확인
 - 수량의 증감이 없어도 기준일 종가기준으로 가액변동사항은 신고해야 함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하는 랩상품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개별 주식을 신고했는지 여부 확인
-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을 경우 당해 신용융자금을 채무로 신고했는지 여부 확인
- 대량 거래 또는 주식 운용수익의 급격한 증감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시점을 전후한 기업공시내용 및 유관정책의 입안·추진여부와 당시 직위의 직무 관련성 등 확인
- 제출된 거래내역 중 특정주식에 대한 집중투자(가족분산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재산변동신고사항과 연계하여 자금흐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투자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소명요구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법 개정('20.6.4.)에 따라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였는지 확인

< 유의사항 >

- ▶ 공개자의 경우 주식거래행위를 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했는지 확인(법 제6조의2)
- ▶ 누락 유가증권 발견시 신고기준가액이 되는지 확인
- ▶ 주식거래 중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된 경우 직무를 이용한 취득경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아. 채권·채무

- 사인간 채권·채무를 재산 과다증감의 상쇄수단으로 활용하는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 주소지 이외 보유 부동산의 임대채무 누락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확인
- 재산가치가 큰 건물을 지인으로부터 무상 임대차하였다고 소명하는 경우 확인 필요
- 보유재산에 비해 과다하게 대출이 증가된 경우(담보물에 비해 대출금이 많은 경우) 직위를 이용한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
- 과다한 채권·채무의 변동시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분양권 등 신고여부 확인
- 사인간 채무를 장기간 변동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변제여부 확인

자.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최초신고시 실거래가, 시장가격,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등 기재 확인
- 사실확인이 곤란하나 등록내용에 따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수사에 준한 조사 가능
- 법 제6조의4제2호 및 시행령 제5조의4에 의거, 변동신고시 보석류(금 및 백금 제외), 골동품, 예술품은 매매가 없는 경우 기존 신고가액 유지(평가의 곤란성 인정)
- 매도·매입이 있을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이 적합한지 확인
-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대량 매입 및 매도시 소장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판단하여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확인

차.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은 기재내용 및 가액 확인
- 콘도미니엄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기준가액(건당 500만원)이 되는지 확인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 및 분양을 하기도 하나 회원권으로 분류

카. 지식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신고는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지식재산권 유무 심사는 본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
- 연간 소득금액 발생 여부는 확인 필요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

타.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관계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재산변동 신고 사항 심사 시 참고로 활용
- 회사 출자금액과 그 지분비율은 회사 정관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은 회사결산서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의 출연금액과 보유직위 등은 그 법인의 정관으로 확인 가능
- 출자금액을 가액란에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분비율과 연간매출액 확인
- 출자지분, 출연재산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자금의 출처·사용처 등이 적합한지 확인

참고 1 개인별 심사보고서 예시

개인별심사보고서

(심사관 : 홍길동)

1. 인적사항

(단위 : 천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록대상/고지거부	정보제공동의	
				금융	부동산
00000	00000	홍길동 (60.00.00)	6명 / 0명	4명	4명
등록기준일	신고재산총액	정정후 재산총액	전년대비증감액	최초신고일 (횟수)	
2019.12.31 (정기변동)	576,946	725,634	30,302	2014.07.01 (6회)	

※ 신고소득 : 75,000천원(본인), 14,000천원(본인외)

2. 심사내역 및 소명내용

심사내용	소명내용
<input type="checkbox"/> 잘못 신고한 금액 242,630천원 - 누락·과소 금액 195,659천원 - 과다 금액 46,971천원 → 경고 및 시정조치 * 정정할 금액 : (+)148,688천원	<input type="checkbox"/> 일부 보험계좌는 기준일을 착오하여 잘못 신고하였고, 특히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해 토지, 예금 등 일부 재산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잘못 신고하였음

3. 심사의견

- 잘못 신고한 금액이 242,630천원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에 해당함.
- 의무자는 2014년 최초신고 이후 5회의 재산신고 경험이 있음에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예금, 토지, 자동차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총 58건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것은 재산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조치결정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구	해임요청	일간신문공포

참고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727호, 2020.5.29.)

1.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른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사인간채권·채무, 현금, CD 등)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직무 관련 뇌물 수수(收受),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통한 재산의 증식 의혹 ⇒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조사요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 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 기준 적용
- 허위의 자료 제출·거짓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확인된 경우 ⇒ 징계(해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 심사 시 고려사항 】

-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2항) ⇒ 보완명령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가액, 금액 단위, 면적·주소·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②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예)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 ③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예)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④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⑥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예)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혼소송 중으로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⑦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⑧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존비속을 누락
- ⑨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가중사항은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가중·감경은 법 제8조의2 '경고'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보완명령 이하는 가중·감경하지 않음)

구분	가중사항	감경사항
최초 심사자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심사자 ※ (감경 제외) ①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허위자료 제출, 거짓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 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기 심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없음

- 과태료 이상(징계·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분	현직	퇴직	비고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 과태료	과태료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공직유관단체	해임요구 / 과태료	과태료	
정무직·선출직	과태료	과태료	

※ **현직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

: 징계의결요구로 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로 변경가능함을 심사보고서에 기재

- ① 최초 심사자가 본인 재산을 5억원 이상 잘못 신고하여 감경제외 된 경우
- ② 최근 2년 이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이상을 받아 가중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최근 2년 이내 잘못 신고한 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③ 10년 이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이상을 받지 않은 경우
- ④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하여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등 위원회가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2.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영 제14조의2제1항)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1~4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처분기준

재산형성과정의 심사결과	처분기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거짓소명,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징계(해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부정한 재산의 증식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나 공직자윤리법상 확인 및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조사의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징계(해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참고 3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문

1. 소명자료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방 법
○ 누락·과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락’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자료이며 ‘과다’는 본인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조회되지 않은 자료이니 잘못 신고한 사유를 기재하고, <u>등록기준일 현재 보유액이 조회금액과 상이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u> ※ <u>조회금액과 동일하면 잘못 신고한 사유만 기재</u> ○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예 금 : 통장 사본, 잔액증명 등 - 보 험 : 잔액증명, 해약환급금 증빙자료 - 유가증권 : 잔고증명(예수금 및 증권 보유현황) - 금융채무 : 부채증명원
○ 재산증감이 과다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의무자 및 가족의 연간소득 등을 감안하였을 때, 재산의 과도한 증감이 있는 경우로서 연간 주요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본 등 주요 수입원 증빙자료, 주요지출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주소지 건물 임차권 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사항」에 신고한, 본인 또는 가족의 주소지에 대하여 주거형태(소유권, 전세권)를 신고하지 않은 건으로 그 주거형태와 증빙서류 첨부 ○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대장,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임대여부 등 관리형태 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외의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약갱신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으로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수령 통장 사본 등
○ 자동차 누락 및 등록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권리명세(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와 가액(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 등) 신고가 미흡한 건으로 자동차 등록사항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자동차보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사인간 채권·채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간 채권·채무는 금융조회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차사유 및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기재 ○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용증서(상대방 연락처 명기), 통장사본, 이자 지급(수령) 통장 사본 등
○ 현금 신고 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유, 현금 운용방법, 수년간 신고사항에 변동이 없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현재 보유여부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본 소명요구는 재산심사 시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보완신고서 제출 등)과는 별도로.

2. 재산등록 확인사항 작성·제출방법(PETI사용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항목의 ‘작성하기’를 선택



- ① 소명이력 : 소명요구내역 열람 ② 작성하기 : 소명작성 ③ 소명서보기 : 제출한 소명서 확인

- ‘소명요구서 작성’ 화면에서 소명내용 작성



-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화면 하단 첨부파일 찾아보기 기능으로 첨부
- 제출 후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을 확인 후 제출
- ※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처리

참고 4 재산항목별 소명요구내용 작성 예시

재산항목	구분	소명요구 내용
토지	누락	▶ 해당지번 토지가 누락으로 조회되오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부동산거래)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과다	▶ 해당지번 토지가 과다신고로 조회되오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사실상소유)정기과세내역서 등
	기타	▶ 해당지번 토지의 권리명세(보유면적, 주소, 지분 등)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부동산의 구입경위, 자금출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누락	▶ 해당지번 건물이 누락으로 조회되오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과다	▶ 해당지번 건물이 과다신고로 조회되오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사실상소유)재산세납입증명 등
	임차권 미신고	▶ 주소지 건물의 전세/월세 등 임차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리형태	▶ 주소지 이외 소유 건물에 대한 타인 임대여부 등 관리형태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실)관리비납부영수증 등
	기타	▶ 해당지번 건물의 권리명세(보유면적, 주소, 지분 등)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부동산의 구입경위, 자금출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누락/과다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해당 자동차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등
예금	누락/과다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예금 보유여부 및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등
	과소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산항목	구분	소명요구 내용
증권	누락/과다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해당 주식의 보유여부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잔고증명서 등
	과소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보유주수와 평가가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잔고증명서 등
회원권	누락	▶ 회원권 누락으로 조회되오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거래시)계약서, 양도증 등
	과다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회원권 과다신고로 조회되오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회원권 증서 사본 등
금융채무	누락/과다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채무 보유여부 및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과소	▶ 등록기준일(00.00.00) 현재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사인간 채무	-	▶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만기일, 이자지급여부 등 사인간채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자지급통장사본 등
사인간 채권	-	▶ 채무자와의 관계, 채권만기일, 이자수령여부 등 사인간채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자수령통장사본 등
현금	-	▶ 현금 발생시점, 보유사유(자금출처 포함), 보관방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산 과다	-	▶ 신고소득(00백만원) 대비 순재산 과다 증가(00백만원)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소득 이외 추가 소득여부 등
순재산 과소	-	▶ 신고소득(00백만원) 대비 순재산 과다 감소(-00백만원)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 이외 대규모 지출사항 등

참고5 보완명령 안내 공문 예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명령」 안내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 . .)과 관련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등록재산과 관련하여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등에 오기가 있는 점을 발견하여 정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0000.00.00.()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생성된 보완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등록
- 각종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 및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작성
- ※ 『재산등록보완사항』(붙임자료) 정정금액으로 신고

붙임 재산등록 보완사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접 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6 경고 및 시정조치 공문 예시 (기관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 통보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00.00)과 관련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귀 기관 소속 공직자(붙임)가 등록대상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7 경고 및 시정조치 공문 예시 (개인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의결 알림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 . .)과 관련됩니다.
2. 귀하의 재산등록(신고) 사항을 심사한 결과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가. 조치구분 : 경고 및 시정조치

나. 조치내용 : 심사결정서 및 경고장 발송, 기관장 통보

3. 귀하께서 이번 조치를 받은 후 재차 재산등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중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재산등록 보완사항(붙임2)에 대하여 정정하시어 0000.00.00.()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등록
- 각종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와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
 - ※ 신고서 작성 방법은 변동신고서 또는 최초신고서 작성방법과 동일
 - ※ 「재산등록 보완사항」 “정정금액”으로 신고

- 붙임 1. 심사결정서 및 경고장 각 1부.
2. 재산등록 보완사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8 심사결정서 예시 (경고 및 시정조치)

심 사 결 정 서			
심 사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결 정 주 문	경고 및 시정조치		
결 정 이 유	0000.00.00.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본인 명의 예금 5건, 배우자 명의 예금 3건, 장남 명의 예금 7건 등 총 15건, 133,036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함.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p>			

참고 9 경고장 예시 (경고 및 시정조치)

제 ○○○ 호

경 고 장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귀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성실히 등록(신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등록(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재차 재산등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참고 10 과태료부과 공문 예시 (법원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붙임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과태료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1부.
2. 심사결정서 1부.
3.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서 1부.
4. 재산등록 위반내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2)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11 과태료부과 공문 예시 (기관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00.00.)과 관련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붙임의 귀 기관 소속공직자가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에 의거 “과태료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대상자 명단 1부.
2. 심사결정서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12 과태료부과 공문 예시 (개인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의결 알림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00.00.)과 관련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귀하의 재산등록사항 및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성실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하기로 의결하였고, 동 조치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이번 조치를 받은 후 재차 재산등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보완명령한 사항(붙임2)에 대하여 0000.00.00.()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완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등록
- 각종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와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
 - ※ 신고서 작성 방법은 변동신고서 또는 최초신고서 작성방법과 동일
 - ※ 『재산등록 보완사항』 (붙임2) “정정금액”으로 신고

4. 향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하는 과태료 재판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심사결정서 1부.
 2. 재산등록 보완사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13 심사결정서 예시 (과태료부과)

심 사 결 정 서			
심 사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결 정 주 문	과태료 부과		
결 정 이 유	0000.00.00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전세권 1건, 예금 3건, 임대채무 5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5건, 모친 명의 건물 1건, 예금 2건, 임대채무 3건 등 총 21건 209,946천원을 잘못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00년 보완 신고서 및 '00년 정기변동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하기로 결정함		
20 년 월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참고 14 과태료부과 대상자 통보서 예시

<u>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서</u>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정이유	<p>0000.00.00.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본인 명의 예금 9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23건, 건물임대채무 2건, 부친 명의 예금 3건, 금융채무 1건 등 총 39건, 390,320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하기로 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동법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정 부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직인)</p>					

참고 15 재산등록 위반내역 서식

재산등록 위반내역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번	관계	소유자	재산항목	위반사실

※ 위반사실 내용 : PETI 심사 - [개별심사] - 「심사보고서 상세내역」에서 해당사항 발취

참고 16 징계의결 요구 공문 예시 (기관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 통보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00.00.)과 관련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붙임의 귀 기관 소속 공직자가 등록대상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처분결과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포함)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대상자 명단 1부.
2. 심사결정서 1부.
3.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17 징계의결 요구 공문 예시 (개인통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징계의결 요구」 의결 알림

1. 제00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0.00.00.)과 관련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귀하의 재산등록사항 및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성실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이번 조치를 받은 후 재차 재산등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중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재산등록 보완사항(붙임2)에 대하여 '00.00.00(0) 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 각종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와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
 - ※ 신고서 작성 방법은 변동신고서 또는 최초신고서 작성방법과 동일
 - ※ 『재산등록사항 보완내용』 “정정금액”으로 신고

- 붙임 1. 심사결정서 1부.
2. 재산등록 보완사항 1부.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심사관
협조자

시 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 . . .) 접 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http://www.mpm.go.kr>

전 화 (044)201-0000 전 송 (044)201-0000 / @korea.kr / 비공개

참고 18 해임·징계의결요구서 예시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해임·징계 의결 요구 사유	<p>0000.12.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본인명의 토지 1건, 건물 1건, 예금 13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 명의 토지 4건, 예금 5건, 금융채무 2건, 장남 명의 금융채무 3건 등 총 30건, 588,76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하기로 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기 관 장) 귀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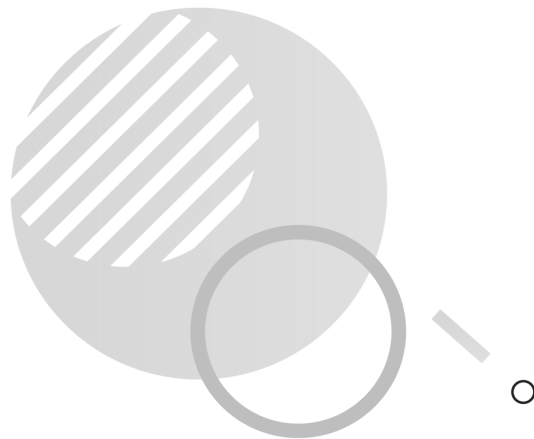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참고 19 심사결정서 예시 (징계의결요구)

심 사 결 정 서			
심 사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결 정 주 문	징계의결 요구		
결 정 이 유	<p>0000.12.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본인 명의 토지 1건, 건물 1건, 예금 13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 명의 토지 4건, 예금 5건, 금융채무 2건, 장남 명의 금융채무 3건 등 총 30건, 588,76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하기로 결정함.</p>		
<p>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p>			



제 4 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I 취업제한제도 개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 2019.12.3., 시행 2020.6.4.)

❖ 취업심사대상자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특정기관 1급 포함)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3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 재정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

❖ 취업심사대상기관

- 일정규모·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사립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는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 위반자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 취업의 범위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봄(법 제17조제4항)
- 이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되 그 실질에 있어 취업의 해당하는 경우까지 취업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 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대체성 여부 및 그 정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취업심사요건(법 제17조제1항)

아래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충족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④항이 해당 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됨

- ①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참고]일 것
-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3. 취업심사대상자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장 등						
일반직(별정직 포함)		특정직	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기타
1급 2급 3급 4급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학교의 장	검사, 법관, 헌법 연구관
5급	①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 국방계약,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감찰 등)		중령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자치경찰 포함)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4급이상 상당 직위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대학의 처장, 실장	4급이상 상당 직위의 연구관, 지도관 수석 전문관
5급이하 7급이상	②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③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찰직, 마약수사직 공무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						
	⑤ 감사업무 담당부서 ⑥ 회계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 (물류센터, 유·초·중학교 공무원 등 제외) ⑦ 건축·토목 등 특정분야의 인·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부서 (위원회 승인받은 대민업무 미수행자 제외) ⑧ 식약처 식품위해사범 수사부서 ⑨ 지자체 조세 관련 부서						

* ①,⑥,⑦,⑧ 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정함

공직 유관 단체	임원급	①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②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위원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⑤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상근)
	임원 등	<국방>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수석급 이상 직원**)
	2급 이상	<금융>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 공사(원전분야), 한국전력KPS(원전분야) ['20.6월 기준]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4급 이상	<금융> 금융감독원

** '20.7.5.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참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발췌('20.6.4. 신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 취업심사 면제대상(법 제17조제9항, 영 제31조제2항)

- (법 제17조제9항)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계급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면제

※ 법 제17조제9항의 취업심사 면제 규정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20.6.4.) 전 이미 퇴직을 한 경우에도 적용

- (영 제31조제2항) ①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과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②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③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면제

※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취업심사 면제 규정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참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 통계청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고시 중, 현재 직업분류는 2017년에 개정

분 류		개 요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 * (예시) 정부기관·기업 부서장, 연구 관리자, 대학 학장, 공장장, 영업지점장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연구원, 변호사, 의사, 회계 감사역, 산업 안전원 등
3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 (예시) 경영기획 사무원, 영업관리 사무원, 재무 사무장, 보험 심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돌봄·미용·조리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예시) 경호원, 기계 경비원, 청원경찰, 주차단속원, 간병인,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 * (예시) 보험 중개인, 대출상담 모집인, 인쇄 영업원, 건설수주 영업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물을 재배·수확 등 * (예시) 조경원, 임산물 채취 종사원, 양식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 * (예시)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제빵사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제품 조립 * (예시) 자동차 조립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용, 철도 기관사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예시)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등
A	군인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예비군 제외

참고 질의·응답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 적용은?

-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인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2.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 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여부?

- ▶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하여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비위면직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과 중복 적용

3.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 ▶ 임용통지서 상의 퇴직일에는 4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 유지되고 그때는 5급이므로 취업심사대상이 아님
 - ※ 공무원 면직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일이 기재된 일자의 영시(00:00)부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결(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서 명예 퇴직자의 경우는 명예퇴직 전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로 계산

4.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 ▶ 법 제17조제1항에서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4.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법 제17조제1항)
-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법 제19조제3항)
 -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

참고 질의·응답

1.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도 확대된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취업심사면제규정이 적용되나요?
 - ▶ 2019.12.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6.4.)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법 시행일(2020.6.4.)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확대된 취업심사대상기관(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 및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6·7급 실무직이 특정직위에 취업했을 시 심사면제 등 변경된 취업제한제도가 적용됨
 - ▶ 그렇다면, 2020.6.3. 이전에 퇴직한 공직자는 확대된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취업심사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본인이 퇴직할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음

5.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그 규모·범위

(1)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법 제17조제1항제1호, 영 제33조제1항제1호)

(2) 협회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그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조합 및 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 (법 제17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모두 포함되며 명칭상 협회·조합에 한정되지 않음

- 영리사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합명·합자·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것은 협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가입과 출자 비교

구분	가입 관련	출자 관련
설립목적/ 성격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 자격을 가지고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	- 사업 영위 등 영리 추구 (배당이익, 경영참여 등) - 출자 지분에 한정해 권리·의무(유한책임) 발생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등	상법(각종 회사) 등
법해석론	- 해석상 '출자'의 경우도 출자자들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법문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의 범위에 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 특성을 고려할 때 법 규정 내용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할 필요	
참고사항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로 지정 관리	

(3) 법무법인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법 제17조제1항제3호, 영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4) 회계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법 제17조제1항제4호, 영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5)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 영 제33조제1항제3호)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법 제17조제1항제6호, 영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 합작법무법인은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7) 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법 제17조제1항제7호)

※ 2020년도 시장형 공기업 지정현황(기획재정부, 2020.1.29.)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총 16개)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법 제17조제1항제8호, 영 제33조제3항)

○ 안전감독 업무

-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 인·허가 규제 업무

-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

○ 조달 업무

-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 포함)

※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2019.12.31. 191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총 191개

(9)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법 제17조제1항제9호, 영 제33조제4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인사혁신처 고시(2019.12.31.) : 642개(사립대학 등 343개, 학교법인 299개)

※ 인사혁신처 고시(2020.6.4.) : 2,543개(초·중등사립학교 등 1,698개, 학교법인 845개)

사립대학 : 가톨릭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등(343개)
 사립대학 설립·경영법인 :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299개)
 초·중등 사립학교 : 가야고등학교, 가온고등학교 등(1,698개)
 초·중등 사립학교 설립·경영법인 :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등(845개)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는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

(10)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법 제17조제1항제10호)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인사혁신처 고시(2019.12.31.) : 492개(종합병원 354개, 의료법인 108개, 비영리법인 30개)

종합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등 (354개)

의료법인 : 의료법인 을지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등 (108개)

비영리법인* :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30개)

* 비영리법인 중,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되는 법인은 제외

(11) 사회복지법인 등(법 제17조제1항제11호, 영 제33조제1항제4호)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인사혁신처 고시(2019.12.31.) : 165개

구세군복지재단, 기독교연합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등

(12)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법 제17조제1항제12호, 영 제33조제5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는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 고시(2020.6.4.) : 201개

방위산업분야 : (주)다원프릭션, (주)대명, (주)데크키본 등(53개)

식품·의약품분야 : (사)KOTITI시험연구원,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등(148개)

참고 **2020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및 적용 대상(20,890개)**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1호('19.12.31.), 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2호('19.12.31.), 비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6호('20. 6. 4.), 사학·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10호('20. 6.30.), 취업심사대상 협회

구분		지정기준	대상기관	적용 대상
영리 분야 (16,640)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15,624개	모든 취업심사 대상자
	법무법인/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35개/50개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72개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5개	
	협회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15,624개)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해당 법인·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 포함)	854개	
비영리 분야 (1,506)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16개	모든 취업심사 대상자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191개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642개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165개	
'20.6.4. 추가 고시된 기관 (2,744)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
	초·중등 사립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2,543개	
	방위산업분야	방산업체와 최근 3년간 중개수수료 (무역거래건당 200\$ 이상) 실적이 있는 군수무역대리업체	53개	
	식품·의약품 등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 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 수행기관	148개	

* 협회를 제외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협회는 6월말 고시)

참고 질의·응답

1. 취업심사대상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중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와 해당 협회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가 그에 해당되며, 취업예정자와 협회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와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여부 및 취업예정자와 협회 회원사인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판단

※ “협회”는 “협회·조합·연맹·연합회”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구성원(회원·조합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

2. 취업심사대상에 속하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회 성격의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취업심사대상 협회의 업무관련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 및 협회 회원사인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과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판단

3. 사립대학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는데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직위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됨
- ▶ 즉, 민관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 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 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 및 고시

-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영 제33조제6항)
 - ※ 다만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협회라도, 취업심사신청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 포함)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에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제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 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협회의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33조제7항)
 -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 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지사, 시·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영 제33조제6항 단서)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참고 질의·응답

1. 2020년도 적용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된 20,802개의 기관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취업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범위의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20,802개 기관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 ▶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공무원 등 적용) 또는 기관(2급 이상 공무원 등 적용)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을 의미함
 - ※ 바꾸어 설명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함
2.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연도 중 회사명칭 변경, 사업분야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합병된 경우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를 충족하고 있다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3. 취업할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 ▶ 취업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심사는 받지 않아도 됨(법제처 법령해석 08-0358, '08.12.11).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2개의 업체가 하나로 합병되어 신설법인 성격의 회사로 된 경우에는 자본금·외형거래액이 법령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6.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적용대상
 - 3급 이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자
-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적용대상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법 제17조제2항)
 - 공무원
 - 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영 제32조제1항제1호)
 -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 해당 과의 업무
 -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 국장은 국 전체의 업무, 실장은 실 전체의 업무
 - 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속하였던 부서에 포함하여 심사

나.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영 제32조제3항)

○ 공무원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재산공개대상자 제외), 2급 이상의 공무원
-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검찰청의 조직(검찰청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 대검찰청(1), 고등검찰청(6), 지방검찰청(18), 지방검찰청지청(41)
- ◆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9)
 - 부산지검 동부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 공직유관단체

-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 *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원전분야), 한전KPS(원전분야)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영 제32조제1항제2호)

○ 중앙행정기관 등*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 * 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④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 *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② 책임운영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④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포함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2급 이상과 3급 이하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용

참고 질의·응답

1.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부서업무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 3급 이하 퇴직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부서 업무기준 업무관련성 판단의 경우에는 과의 장 및 과의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로, 그 상위 직위에 있는 경우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
 - ▶ 고위공직자(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본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의 업무,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
2. 광역의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므로, 퇴직 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체의 업무(각 상임위 포함)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7.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5항)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평가·감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신청서 등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인·허가 등 관련 사후 관리·감독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후속조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 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검사·검수 등), 대금지급,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경비업법(경찰청) 등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심사대상기관(법인·단체 등)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8. 그 밖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 제32조제2항) >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처리
 - 정책·사업 등의 검토·결재 또는 안건 검토·심의 등을 위한 회의참석 등의 의사 결정 관여
 -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모습으로 특정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업무관련성 간주 규정(법 제17조제5항)

-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로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1호~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세무법인이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합작법무법인의 경우 '20.6.4.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8. 취업제한의 예외

가. 취업승인

(1) 승인내용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1항 단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영 제34조제3항)

(2)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제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제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제7호)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8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 이중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하여야 함(영 제34조제4항)
-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 한함

< 취업승인 직위 채용 사전협의 처리절차 >

- ❶ 취업승인 직위에 대한 채용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채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협의 요청
- ❷ 취업승인 직위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협의결과를 채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㉓ 사전 채용협의결과에 따라 채용계약을 체결한 소속기관장은 채용 후 5일 이내에 그 인사발령통지 사본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협의 시 첨부자료

- 채용계약후보자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채용기관의 정·현원 현황, 외부 전문인력 채용현황, 채용공고문 사본, 채용 신원 조사 여부, 채용예정부서 및 직위 등을 기재한 자료

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7항)

※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예, 변호사 → 회계법인·영리사기업체, 세무사 → 법무법인등)

9. 취업심사 시 고려사항(법 제17조제6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법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 (법 제3항)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법 제5항)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II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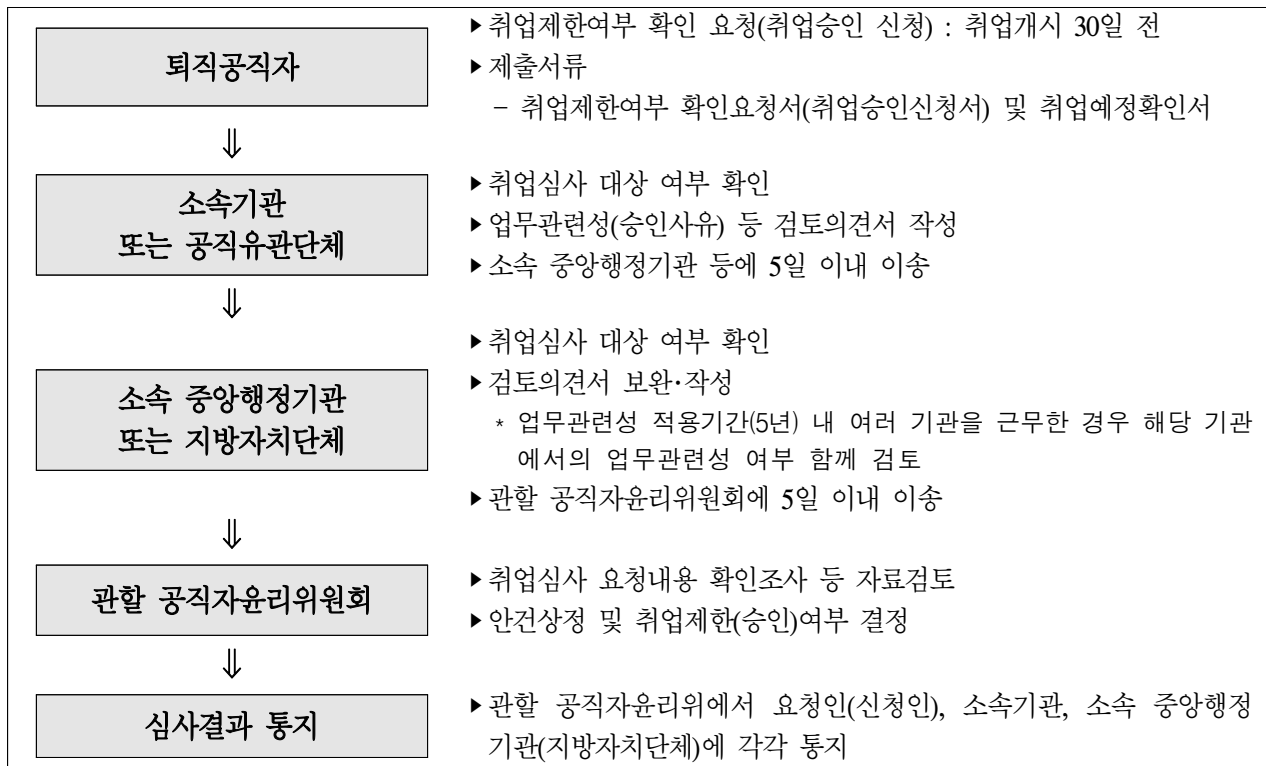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개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 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심사 기준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특별한 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 심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참고 질의·응답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2.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절차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제출

(1) 제출시기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제1~2항)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영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

참고 질의·응답

1.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지?

- ▶ 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 ▶ 만약에 현직자에게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현직 공직자에게는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 거 아닌지?

- ▶ 신청서 서식의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해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 있는 군인만 해당됨

* 제대군인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2)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와 함께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나. 소속기관장의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검토 및 이송

-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승인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영 제33조의3제1항 및 제34조제2항)

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조사·확인 및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후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영 제33조의3제1항 및 제34조제2항)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내에 전입,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근무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송

라. 심사·결정 사항의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심사·결정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영 제33조의3제2항)
 - 취업이 제한 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3.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가. 확인·조사 및 검토사항(영 제33조3제1항)

- ①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 해당 여부
 - ※ 협회는 그 회원사에 인사혁신처장이 확정·고시한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만이 심사대상이 됨
- 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조사
 - ※ 밀접한 관련성 업무범위(법 제17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 후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검토
 - ※ 재직 시 취득한 정보·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인터넷 검색, 취업예정기관의 전임자나 유사분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문의 등)

④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검토

-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 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승인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검토

나.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취업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기관(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본인이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4. 우선취업제도

가. 우선취업제도 내용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고 취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취업을 하게 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추후에 실시함
 - 추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해제 요청함

나. 우선취업 신청

- 우선취업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3조의4제1항)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라야 함
 - ※ 취업개시 30일 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취업승인신청의 경우 우선취업 신청 불가

다. 우선취업 신청사유(영 제33조의4제1항 제1~3호)

- 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 ②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 ③ 기타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라. 우선취업의 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을 하게 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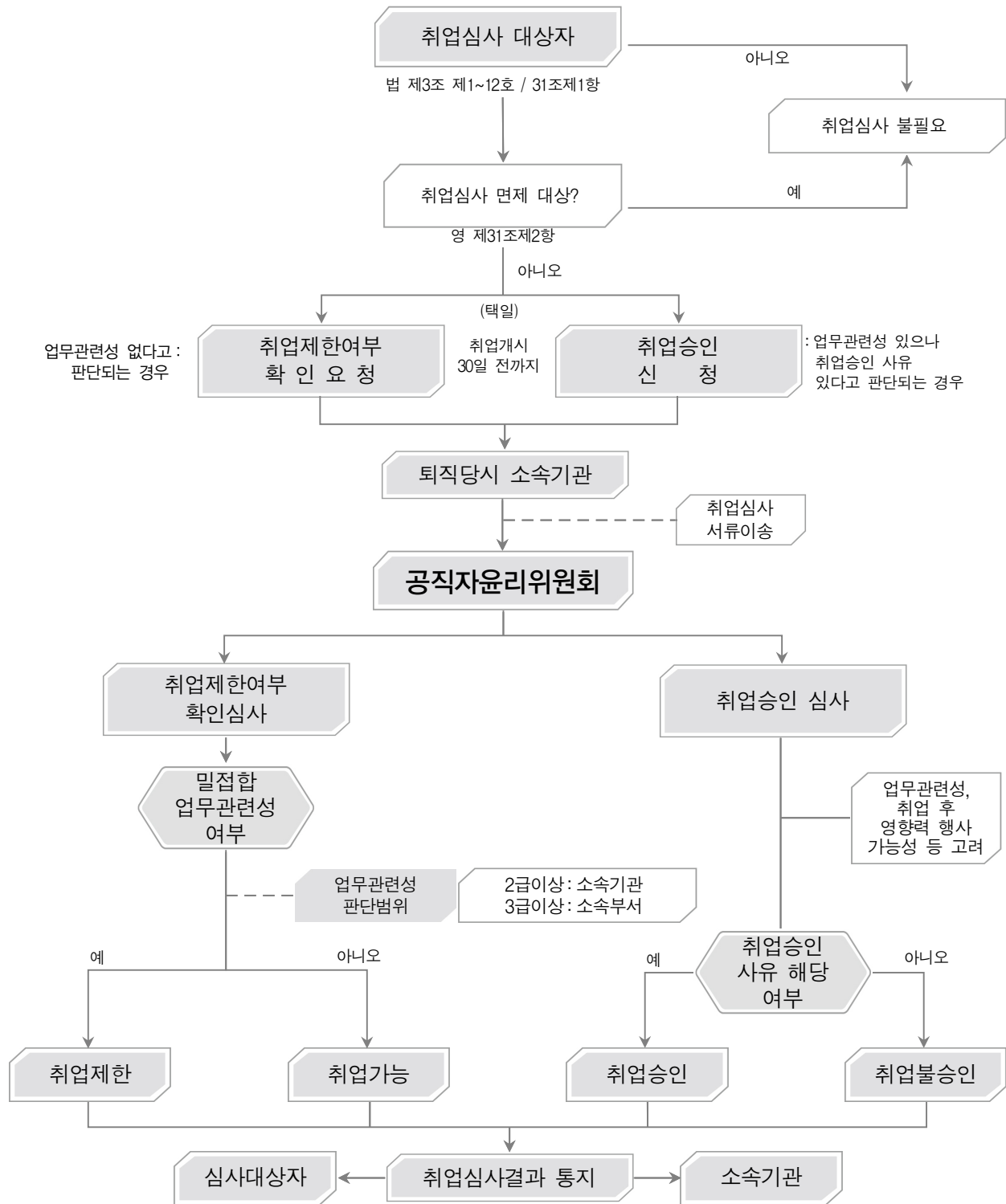
마. 우선취업 심사결과의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제2항)

바. 우선취업 신청자의 취업심사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제3항)
-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이 결정된 자는 취업해제조치가 이루어짐

참고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1. 취업여부 확인 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법 제19조의2제1항)

※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적발

2. 조사방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조회는 취업여부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인사혁신처(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켜 일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각급 기관에 제공(연 2회)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도 인사혁신처가 일괄 조회하여 제공할 예정

3. 조사결과의 보고

- 국가기관의 장 등은 취업여부 확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사 요청
- 취업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 장의 취업확인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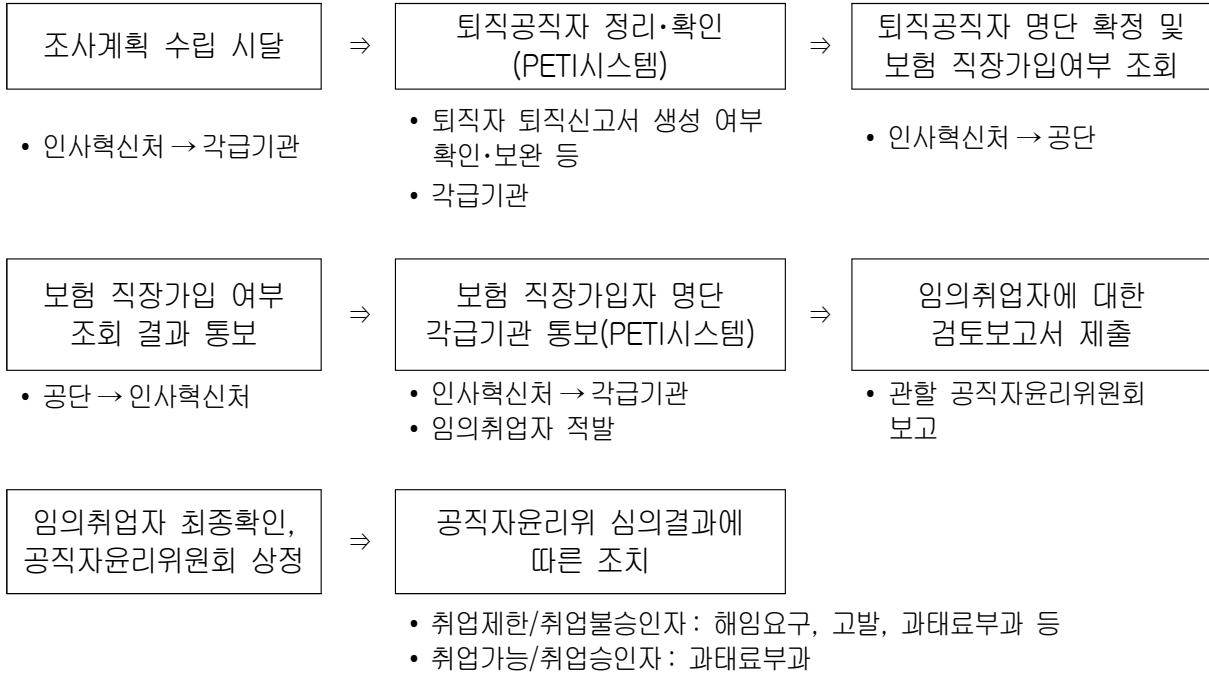
4. 자료제출 요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법 제19조의2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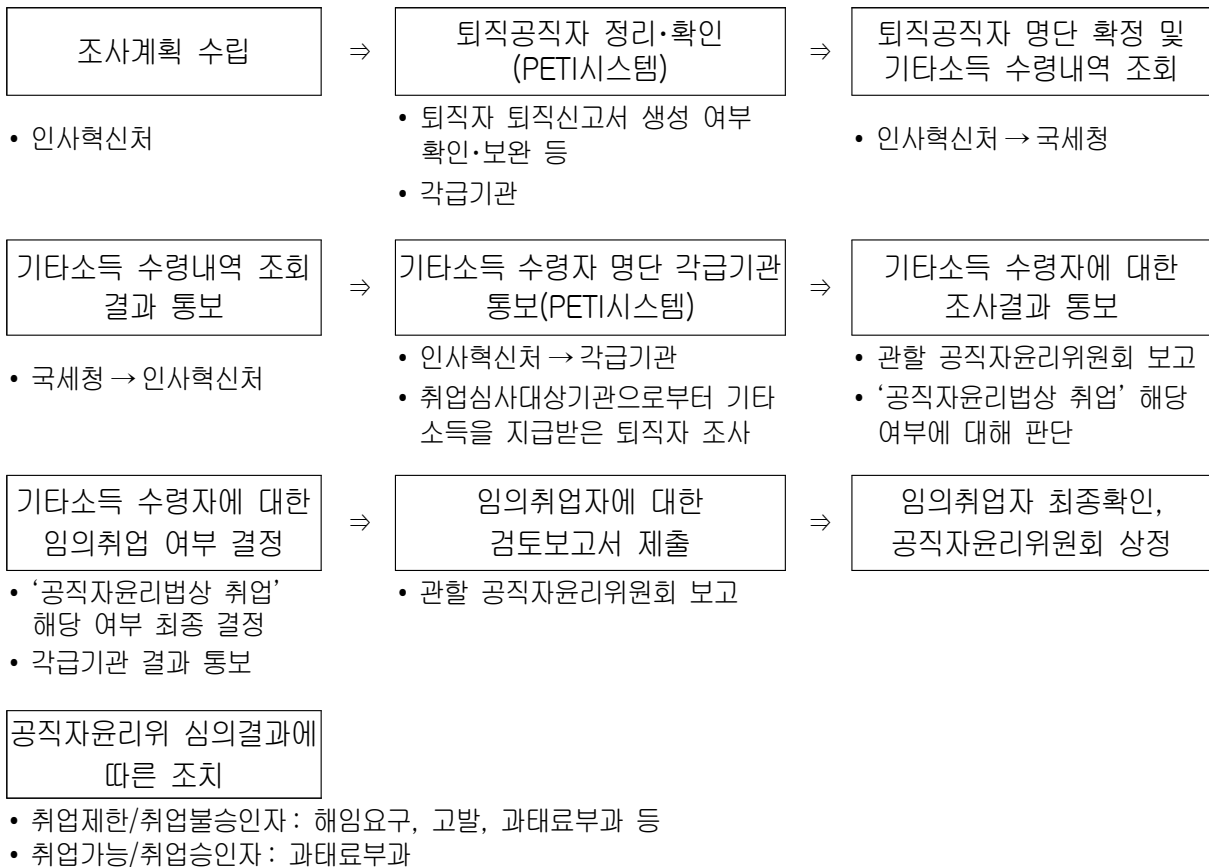
5. 조사결과 조치

-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
 -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8~11호)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검찰에 고발(법 제29조제1호)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10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취업여부 일제조사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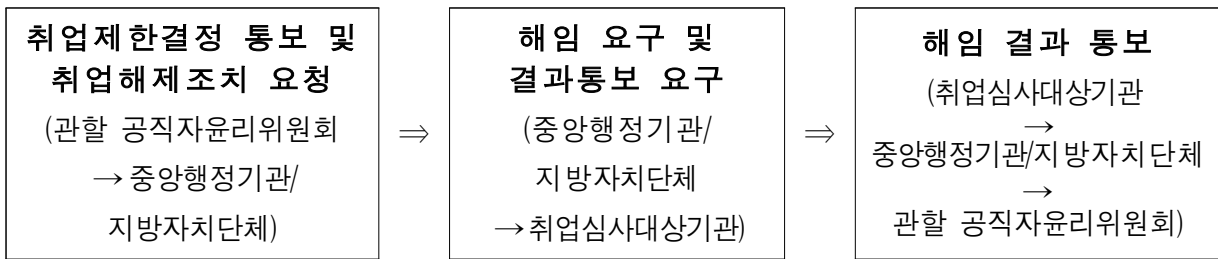
※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활용한 취업 여부 일제조사 업무흐름도



IV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1.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가. 취업해제 조치



※ 해임요구 거부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여 법원에 통보

(1) 취업해제 요청(법 제19조제1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¹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
- ※ 임의취업자 및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 결정자는 취업제한결과 통지시 취업해제조치를 동시에 하도록 요청

-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2) 해임결과의 통보

- 해임을 요구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법 제19조제2항)

14) 국회는 국회의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말함

나. 처벌

(1) 내용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9조제1호)

(2) 처벌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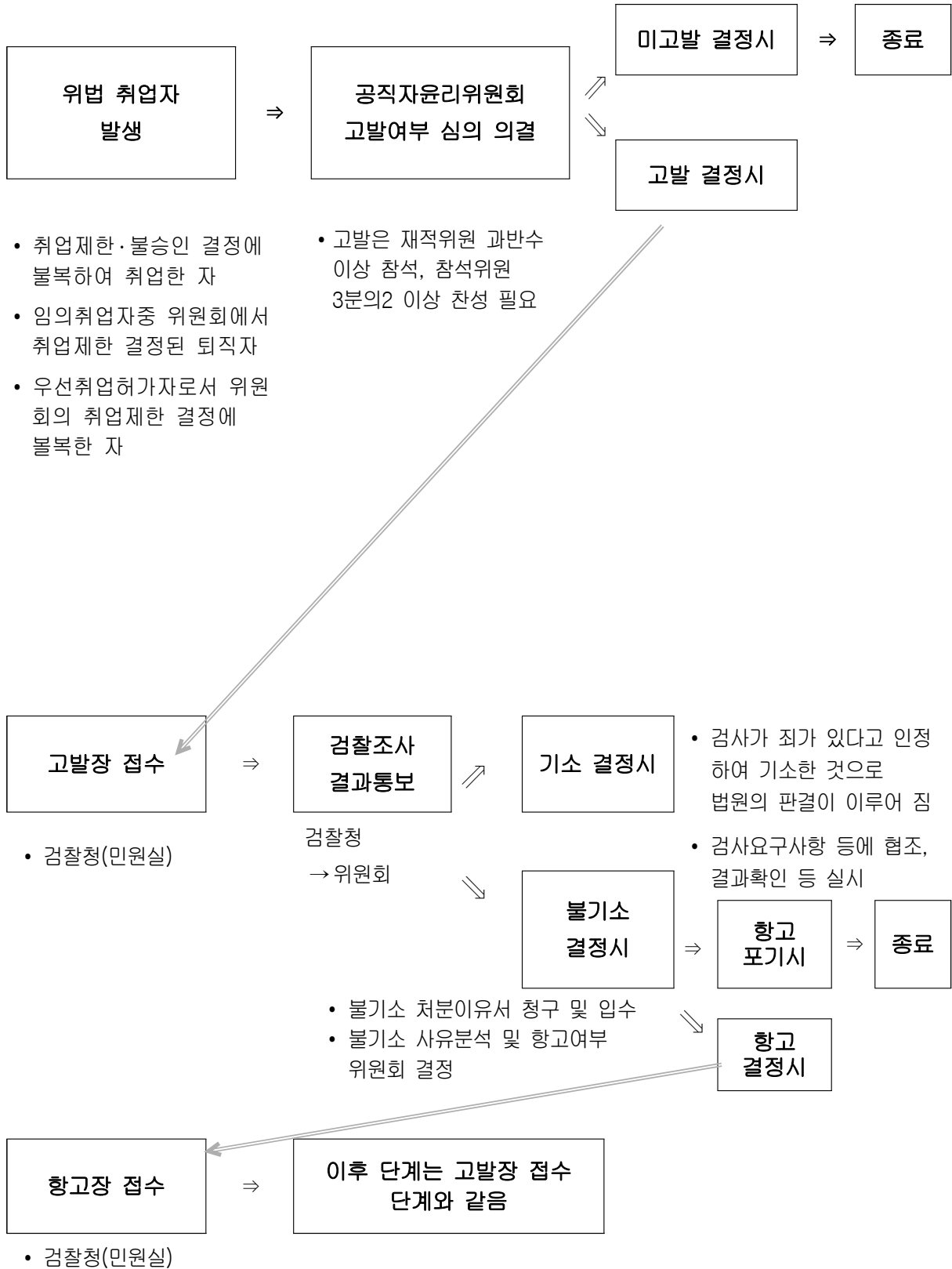
① 고발여부 결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 결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영 제19조제2항제4호))
- 임의취업자 또는 우선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의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 취업제한 결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②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소)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

(3) 업무 흐름도



2. 해임요구 불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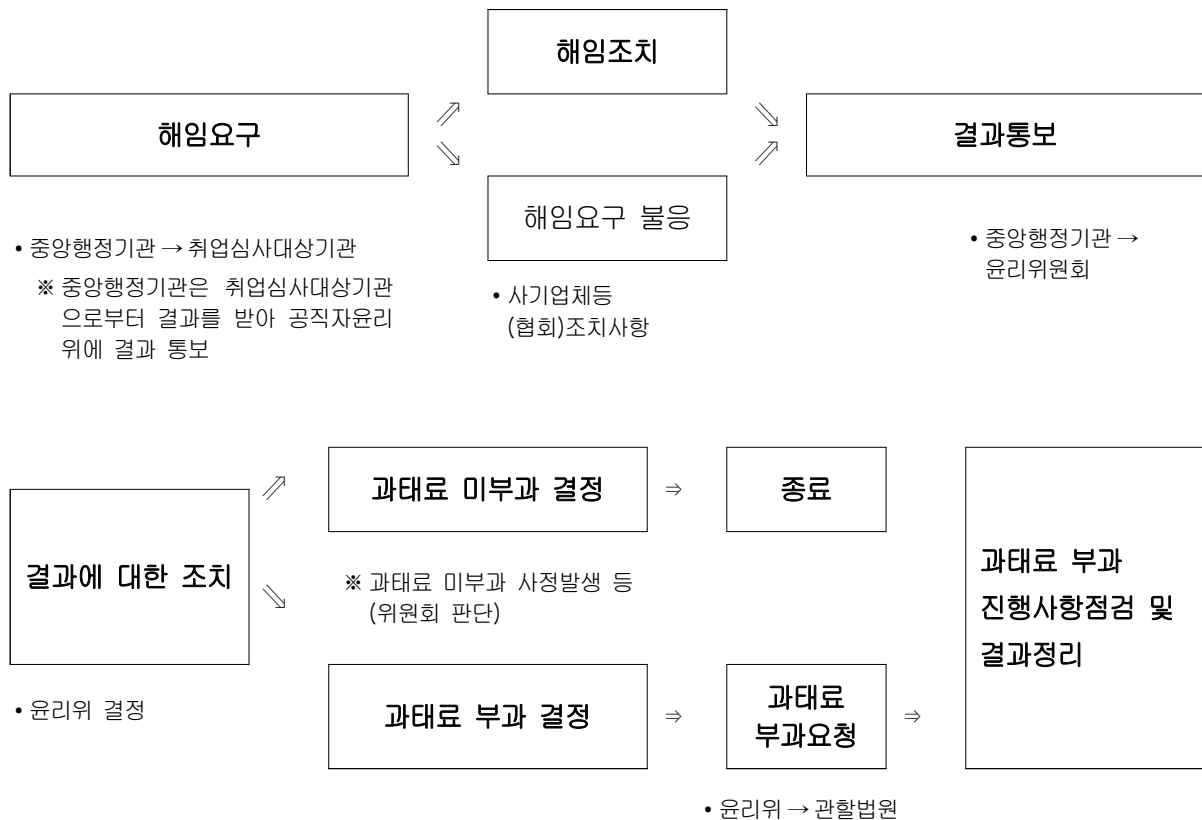
가. 제재내용

-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 제30조제3항제10호)

나. 과태료 부과 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30조제5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함
 -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약식재판)

다. 업무 흐름도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V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1.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 2014.12.30. 공직자윤리법 개정(2015.3.31. 시행) 시 제도 신설
- 목적
 -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

2.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하고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35조의6제1항)
-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6월 30일 까지 공시하여야 함(법 제19조의4제1항)

3. 공시하는 항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영 제35조의6제2항)

4.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19조의4제2항)

- 그 취업사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영 제35조의6제3항)

5.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1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30조제5항)

참고 질의·응답

1.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직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함
-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등과 특정분야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이 취업이력공시 대상에 해당됨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난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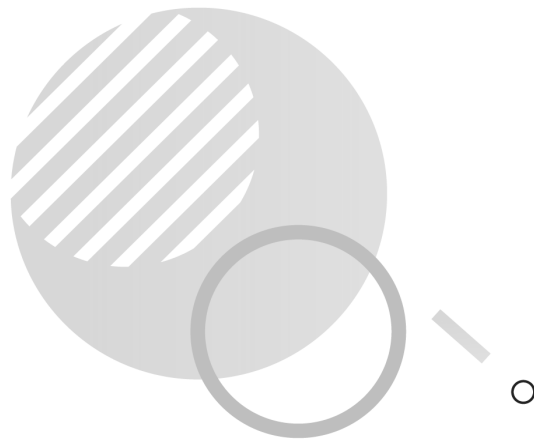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다가 이직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이직한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5 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5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퇴직공직자 로비스트(lobbyist)화 등 공직자와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I 업무취급 제한

1.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가. 취급금지내용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음(법 제18조의2제1항)

나.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적용대상업무

-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하였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승인 심사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 (제19조의2제2항)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재취업 한 경우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요청 가능(제19조의2제4항)

참고 질의·응답

1. 모든 공직자가 재직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부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 ▶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며,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됨
2.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제한은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 ▶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받게 됨
3. 어떤 경우 법 제1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아서 업무취급이 금지되는 것인지?
 - ▶ 예컨대, 재직 중 A업체에 B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임.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2) 업무취급 금지

가. 업무취급 금지 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 금지(법 제18조의2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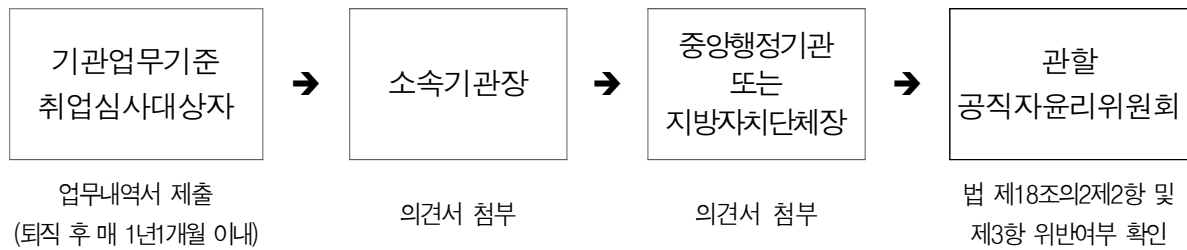
나. 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다. 적용기간 : 퇴직 후 2년간

라. 적용대상 업무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자신이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함. 단,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 퇴직 전 2년 간 근무한 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기관 모두 해당하며 본부·본청 및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는 각 해당기관의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판단

마.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① 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서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제1항)

② 제출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

③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영 제35조의3제1항)

④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법 제18조의3제3항 영 제35조의3제2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 취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포함(영 제35조의3제2항)

⑤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조치사항(영 제35조의3제3항)

-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 각 기관에 시행한 “업무내역서 제출대상자 안내” 공문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작성기준[취업심사과-2365('16.7.28.)]” 공문 참조

⑥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2+2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의3제2항)
-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영 제35조의3제4항)

⑦ 업무내역서 비공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함(영 제35조의3제5항)

3. 업무취급승인제도

가. 내용

-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제3항)



나.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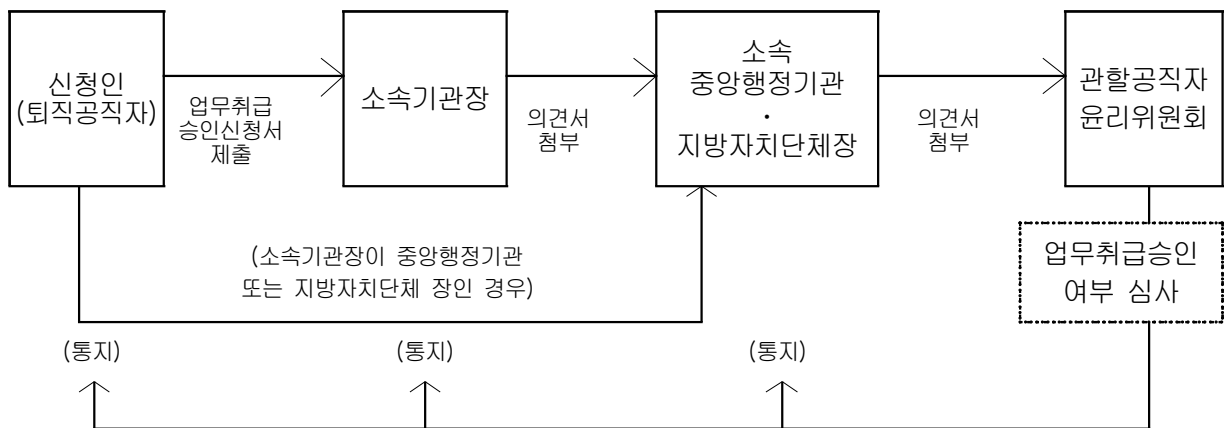
-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다. 승인사유(법 제18조의2제3항)

- ①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 ②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두 가지 사유 모두 충족되어야 함

라. 승인 절차



(1) 신청인(퇴직공직자)

- 취업개시 전 또는 후에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

※ 단, 취업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는 일정 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 호)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 확인서

(2) 소속기관장 등의 조치사항(영 제35조의2제2항)

-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3)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영 제35조의2제2항)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확인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조사·확인사항
 - 신청인이 법 제17조제3항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 업무취급승인 신청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신청 가능
 -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업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제출자료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업무취급승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4)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업무취급승인 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 업무취급승인 심사(승인·불승인 의결)
-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신청인, 소속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영 제35조의2제3항)
 - 업무취급 불승인을 의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



4. 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9조제2호) * '15.3.30. 이전 퇴직자는 舊法 적용 (1년, 1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0조제3항제9호)

참고 질의·응답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 이외의 업체에 취업하는 때에도 2+2 업무취급제한 대상인지?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을 받고, 이 경우에 한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그 기관의 소속기관장(예, ○○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공직자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 이외에 소속 중앙행정기관(본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한 업무의 취급도 금지되는지?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지방국세청에만 근무한 경우 소속 기관과 그 하급 기관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취급이 2년 간 금지됨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 경과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인지?
 - ▶ 업무내역서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데, 2년 경과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님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매 1년이 지난 1개월 이내 취업한 모든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II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1.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법 제18조의4제1항)

가. 대상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나. 금지대상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법 제18조의4제1항)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영 제35조의4제4항)

2.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신고(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가. 신고대상자

- (재직자)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8조의4제2항)
- (제3자)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의4제3항)

나. 신고절차

(1) 청탁·알선 신고

- (신고내용)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 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영 제35조의4제1항)
- (신고방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의한 별지 제20호의6서식(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



(2) 신고의 처리

- 신고내용의 확인 사항(시행령 제35조의4제2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법 제18조의4제4항)
 -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종결 처리(수사기관 미통보, 영 제35조의4제3항)

다. 신고자 보호

-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법 제18조의4제5항)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4제6항)
- 신고자는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및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영 제35조의4제5항)
-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영 제35조의4제6항)

참고 질의·응답

1.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 ▶ 법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이 금지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됨

3.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가.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청탁 금지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법 제18조의5제1항)

나.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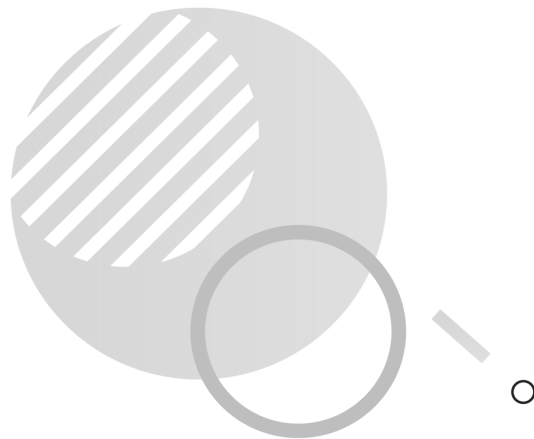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위한 알선행위 금지(법 제18조의5제2항)

4. 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 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9조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22조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취업을 청탁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22조제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 	시정권고(제23조)



제 6 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6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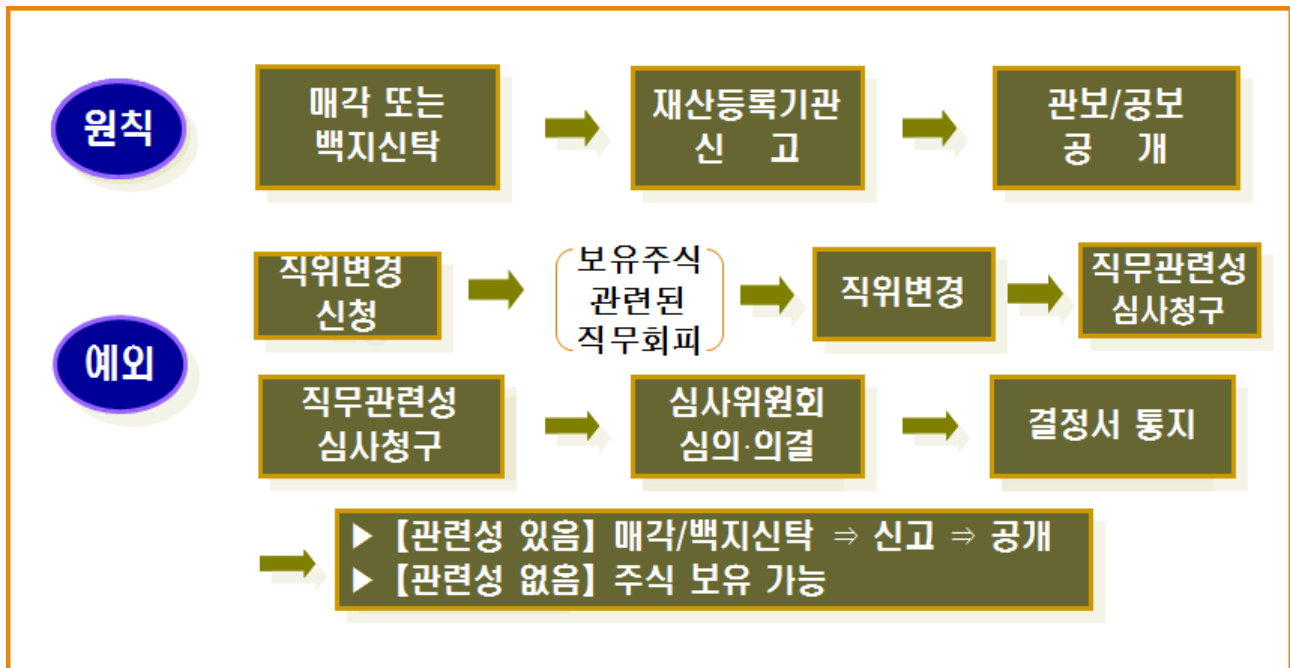
- ◆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적(公·私的)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 Trust)하여야 함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 ✓ 고위공직자(신탁자)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 ✓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
- ✓ 신탁자가 변경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원래 직위에서 심사 청구 또는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I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株式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株式을 매각하거나 株式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1. 대상자

- ① 재산공개대상자([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의 II-1. 공개대상자 참조)
- ②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영 제27조의3) >

- ▶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단·팀)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 금융위원회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윤리업무담당자 주의 사항

-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株式백지신탁대상자가 있는 경우 株式백지신탁제도 안내 및 관리 필요(예: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윤리업무담당자가 관리)

2. 대상株式

가. 대상株式의 범위 및 하한가액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株式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株式¹⁵⁾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영 제27조의4)

<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 >

- ▶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와 재산등록 시 고지거부자는 제외(법 제12조제4항)

15) 제48차(12.1.12.) 심사위원회는 법 제14조의4 제1항 제1호의 “해당 株式”의 의미가 3천만 원 초과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유株式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영 제27조의4에 따른 대상가액의 하한가액으로서 3천만 원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상한가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함. 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3천만 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지 않은 입법취지는 그 株式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해충돌의 범위에 있다고 본 것임. 둘째, 법 제14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무관련성 있는 株式일지라도 백지신탁 후 그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株式을 보유할 수가 있음

<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제7호) >

-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호가중개시장(Free Board)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및 상장폐지된 주식
- ▶ 그 외의 비상장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등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예외

- ①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면제를 받기위해 청구한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법 제14조의5제6항)
-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¹⁶⁾(영 제27조의8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16) 직무관련성 없다고 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은 자본시장, 부동산, 선박, 해외자원 및 문화산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임. 둘째, 투자회사의 주식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이며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법적형태에 따른 구조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간접투자상품으로서 동일함. 셋째,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서 투자자산은 별도의 자산운용회사가 관리하므로 이에 투자한 공직자가 관련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함. 마지막으로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희박함

< 기타 주식의 대상 여부 >

1)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¹⁷⁾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
 - ※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에 **포함**

2)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상 주식 **아님**

3) 이른바 랩어카운트¹⁸⁾(자문형 랩, 일임형 랩)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일임관리해주는 서비스(투자일임계약)로서, 주식의 실제 **운용은 증권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 법적으로는 개인의 직접투자이지만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심사위원회 결정)
 -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 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 원 기준이 적용됨. 랩어카운트와 비교할 때 투자자문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주식매매에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17) 우리사주의 기본운영구조 : ① (취득) 조합은 회사의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회사가 출연한 주식이나 현금, 조합원이 출연한 현금 등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② (배정) 취득한 주식을 조합계정 및 조합원계정에 배정, ③ (예탁) 조합은 취득한 주식을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게 되는데, 그 취득방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1~8년 등)이 달라짐, ④ (인출) 조합원이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며, 인출된 주식은 재예탁 불가

18) 랩(Wrap)으로 싸듯이 맞춤형 종합관리를 받는 개인증권계좌(Account)

참고 질의·응답

1. 의무예탁기간은 지났지만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우리사주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면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장기보유 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사 시 고려사항이 됨
2. 자문형 랩을 A, B, C 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 (ㄱ)주식이 A계좌에 1천만 원, B계좌에 1천만 원, C계좌에 2천만 원 있는 경우, 각 랩 계좌별로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 ▶ 각 랩 계좌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 가액이 4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 ▶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 (ㄱ)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 원, 자문형 랩으로 2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가액은 4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3.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①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②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④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⑤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⑥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¹⁹⁾
 -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²⁰⁾

윤리업무담당자 주의 사항

- ▶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며,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경우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을 해야 함
- ▶ 다만,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사항을 점검하여 재산공개대상자등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의무이행사항을 안내하고, 소속기관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인 철저

19) 법 제14조의5에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라 함은 현재 보유한 주식과 현재 근무하는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의미하므로 직무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직무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새로 심사를 받아야함

20)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영 제27조의8제1항제1호(법률·조례의 입안), 제2호(국정조사·감사, 행정사무조사·감사), 제6호(예산의 심의) 등을 근거로 소속 상임위 및 상설특위의 직무가 그 의원의 직무라고 보는 것임

II 주식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 기관에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 공무원 • 법관 기타 법원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처·청 소속 공무원 	- 그 부·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그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등록의무자 • 정부 부·처·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인사혁신처

<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신고 요령 >

- ▶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법 제11조)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 제3항)
- ▶ 백지신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그 신탁재산은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법 제6조의2제1항)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14조의4제4항)

참고 질의·응답

1.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백지신탁 할 수 있는지?
 - ▶ 일부 매각과 일부 백지신탁을 혼합할 수 있음. 또한 일부 매각과 일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가능함
2. 재산공개대상자가 되었으나 현안업무를 시급히 수행하다 보니 보유주식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한 경우?
 -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사유서(별지 제1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재(법 제8조의2 준용)를 받을 수 있음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영 제27조의12제2항)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사실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중 연월일 및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Ⅲ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가. 체결시기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나. 수탁기관

-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도 포함됨
 -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

참고 질의·응답

1.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와도 백지신탁계약을 할 수 있는지?

- ▶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펀드)의 성격상 특정 주식에 대한 정보의 접근 또는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수탁기관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투자운용에 대하여 고객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서 부적격함

다. 백지신탁계약의 요건(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마목)

< 백지신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적격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 ②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③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됨
- ④ 법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유(신탁재산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 ⑤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참고 질의·응답

1. 백지신탁을 하려는 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 ▶ 백지신탁의 장점은 공직자로서 공·사적 이해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 ▶ 다만, 계약해지가 법 제14조의10 제2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계약 후에는 모든 주식의 신규취득이 불가능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라.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법 제14조의6 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

< 주식취득사유법 제14조의6, 영 제27조의9 >

- ▶ 상속
- ▶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 인수
-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 취득
-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

참고 질의·응답

1. 백지신탁 후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 후에도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지?
 - ▶ 현행 법령에 매각 후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2. 백지신탁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지?
 -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이므로, 3천만 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2.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가.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수탁기관은 최초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 연장 가능
 - ※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신탁자와 수탁기관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제공 금지(법 제14조의7제1항)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관여 금지(법 제14조의7제2항)
 -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8조의2)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에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법 제14조의8제1항)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 원 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법 제14조의8제2항 및 영 제27조의10)
-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사유 및 1월 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법 제14조의10제3항)
 -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의 보고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타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송부
 - 등록기관에서는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수탁기관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 완료된 경우 처분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시행령 제27조의10제1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공개(시행령 제27조의12제3항)

3.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 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함(영 제27조의10)
-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를 작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1항)
-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④ 백지신탁 중 신탁자의 직위가 변경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신탁자는 백지신탁 관리·운용중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 서식)를 작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백지신탁 계약 해지 가능
- ⑤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된 경우

참고 질의·응답

1. 백지신탁 후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허가 요청은 언제 가능한지?
 - ▶ 법률상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그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2.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일단 백지신탁했다가 이후 상임위를 변경한 경우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 ▶ 상임위를 변경 후,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과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IV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1.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법 제14조의5제6항)
-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법 제14조의13)
 - * 보직 변경, 소속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 변경 등
 - 청구인은 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 서식에 의해 직위변경을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 심사 청구시(원래 직위 및 직위변경 후 청구 모두 해당) 청구인은 백지신탁의무를 면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필요시 관련자료 별도첨부)
 - ※ 청구인은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전자문서(수신: 인사혁신처장)로 심사 청구

나.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관할 기관(부서), 위원회 조례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제출, 거래내역서는 지연청구 시 제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지연사유서)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를 함께 제출

다. 철회 및 각하

- (철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인사명령, 잔고증명서, 기타 관계서류 등)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 주식을 매각하여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된 경우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주식이 아닌 것(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 원 미만의 랩어카운트,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²¹⁾ 등) 제외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각하) 철회사유에도 철회요청을 아니할 경우 심사위원회 직권으로 각하 가능

참고 질의·응답

1. 담당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에 변화가 없고, 기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이 약 5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정기변동 신고 과정에서 2천5백만 원 가액의 주식이 신규로 확인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님

라.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 필요
- 다만, 심사청구한 주식과 동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별지 제14호의6 서식) 중 “1. 보유주식내역”만 추가로 제출

21) 248쪽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예외 ② 참조

2.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가. 심사기간

- 심사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4조의5제7항)
 -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법 제14조의5제8항)

<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영 제27조의8제1항) >

- ▶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함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한 직무
 -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한 직무
 -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한 직무
 -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직무
 -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직무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한 직무
 -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직무
 - 그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다. 결정유형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 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시 필요한 경우 본인,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가능(법 제14조의5제9·10항)

마.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1)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심사결정서 통지시 조치사항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통보

(2) 의무 이행사항 확인 및 공개

-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1개월 이내) 소속 대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등록기관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함
 - ※ 중앙부처 윤리업무담당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인사혁신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3. 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백지신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조치 후 신고
-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 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백지신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조치 후 신고)

가.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 매각을 하더라도 재산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하지 않음
- 다만, 승진·전보·상임위 또는 상설특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 ※ 승진하였으나 직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제외

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통지된 주식

- ①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백지신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조치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재산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윤리업무담당자 주의사항

- ▶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 대상자가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별적으로 안내 및 관리 철저

②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함
- 단, 주가상승, 추가매입 등으로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백지신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조치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해야 하는 경우

①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 직위가 변경된 경우
 - ☞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새로운(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3천만 원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②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총가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 기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시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보유주식은 보유내역 작성 시 비교란에 기존 결정사항 별도 표시

③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 법 제14조의6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경우
 -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설치

- 백지신탁 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설치(법 제14조의5제1항)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법 제14조의5제2항·제3항)
 - (추천권)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법 제14조의5제3항)
 - (위원자격) ①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③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④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법 제14조의5제4항)
 - (위원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함 (법 제14조의5제5항)
 - (회의개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27조의7제3항)

참고 질의·응답

1.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2천만 원 추가 매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2천만 원 신규 매입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 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관련성 없음 주식은 얼마든지 추가매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식은 2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2. 직무관련성 있다고 결정된 주식의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만 매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만들면 계속 보유 가능한지?
 - ▶ 1개월 이내에 그 일부를 매각(또는 백지신탁)한 뒤 3천만 원 이하로 만든 상태에서는 계속 보유 가능함('18.4.26. 제102차 심사위원회 결정)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주의 사항

-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확인**
 - ◆ 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 원 미만인 랩어카운트,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등은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님
-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인지 여부 확인**
 - ◆ 담당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 변경, 계약체결 등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후, 주식 발행회사와 본인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부서 및 기관 간에 계약·협약, 조사·감사, 보조금지급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
 - ◆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시, 해당회사 주식 재심사 청구
- ▶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 1원이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요

V

직무 회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의11)

1. 적용 대상

-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그 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 위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직무를 준용

3. 직무회피 기간(법 제14조의11제1항)

- (백지신탁 시)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 ~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
- (직위변경 신청 시)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 ~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4.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5. 직무회피의 예외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법 제14조의11제3항)

6.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가. 신고대상 및 시기

-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나. 관련서식 및 신고기관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에 의해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 직무관여 내역 및 직무회피 불가능 증명 자료 첨부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 신고 받은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VI | 의무위반시 제재

1.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관여 위반 시 제재

(1)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2)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의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 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거나 직무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거나 직무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법 제28조의2)

다음의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위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는 경우

VII 직무관련 주식의 신규취득 제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법 제14조의15, 영 제27조의13)

1. 적용 부서(업무) 범위

-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중에서 ① 특정 산업 또는 기업 등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② 특정 산업의 발전 또는 기업의 경영·재산상 권리 등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관련 업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업무
 3.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업무
 5. 법령상 지도·감독 업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 계약 관련 업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업무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소지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

2. 적용 대상

-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본인)와 그 지휘·감독자
 - * 타 부처에서 해당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음
- 기관장(부기관장)은 소관기관 전체를 통괄하는 직위로서 직제상 관할 범위에 속하는 기관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모든 부서의 직무관련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됨
 -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과 그 관할 범위에 속하는 하위기관을 기준으로 함
- 실·국장의 경우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가 지정한 직무관련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됨
 - * 재산등록의무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가족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일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규정 등에 의한 포괄적 금지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3. 제한대상 주식

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적용되며, 다만 기관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주권 관련 사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지정할 수 있음
- 기관장이 판단하여 3천만 원(주식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준 가액) 이하의 범위에서 하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예 : 1천만 원 이상(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에 대해 신규취득 제한

나. 예외적 취득 허용

- 상속·증여(유증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한 주식의 신규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9(주식 취득 사유) 참고

참고 질의·응답**1.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직무), 주식의 범위는 어떻게 지정하는지?**

- ▶ 기관별로 직제 시행규칙상 부서별 업무범위와 기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되,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필요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운영) 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직무)와 주식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대상자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되나요?

- ▶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대상자는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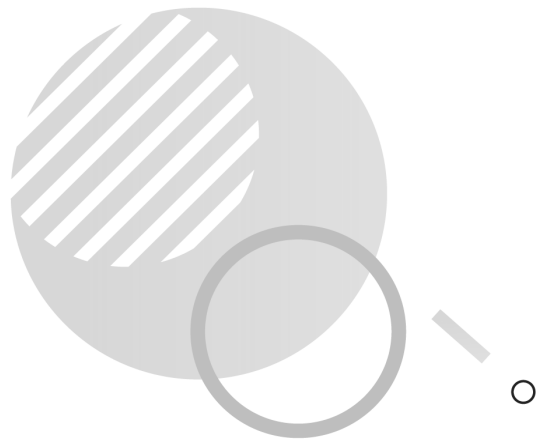
3. 기관장은 모든 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나요?

- ▶ 기관장은 소관기관 전체를 통할하는 직위로서 직제상 관할 범위에 속하는 기관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모든 부서 주식의 취득이 제한됩니다.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과 그 관할 범위에 속하는 하위기관을 기준으로 함



—
제 7 장
선 물 신 고
—



제7장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선물받은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은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

↓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붙임 6)

↓ (이관)

등록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예술적가치가 있는 것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 매각
---------	--

*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I

선물신고 내용

1. 선물신고제도 개요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2.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3. 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II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1.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유지
-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법 제22조, 제30조)

2. 신고서 접수(소속기관·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 3)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 선물평가표(붙임 3) 참조,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3. 선물이관 절차(등록기관의 장)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반기별료(상반기 신고된 선물의 경우 :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함 (영 제29조제1항)
 - ※ 이관시 첨부 서류 : 선물이관 공문서,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과 관련된 내용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 상황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29조제1항, 붙임 6 참조)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 (영 제29조제2항)

《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 구분 》

선물 신고 대상자	등록 기관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관, 법원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시·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소속 공무원	그 교육청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III | 선물의 처분

1. 처분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영 제30조제1항)

2.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영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규칙 제15조제2항)

3.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IV |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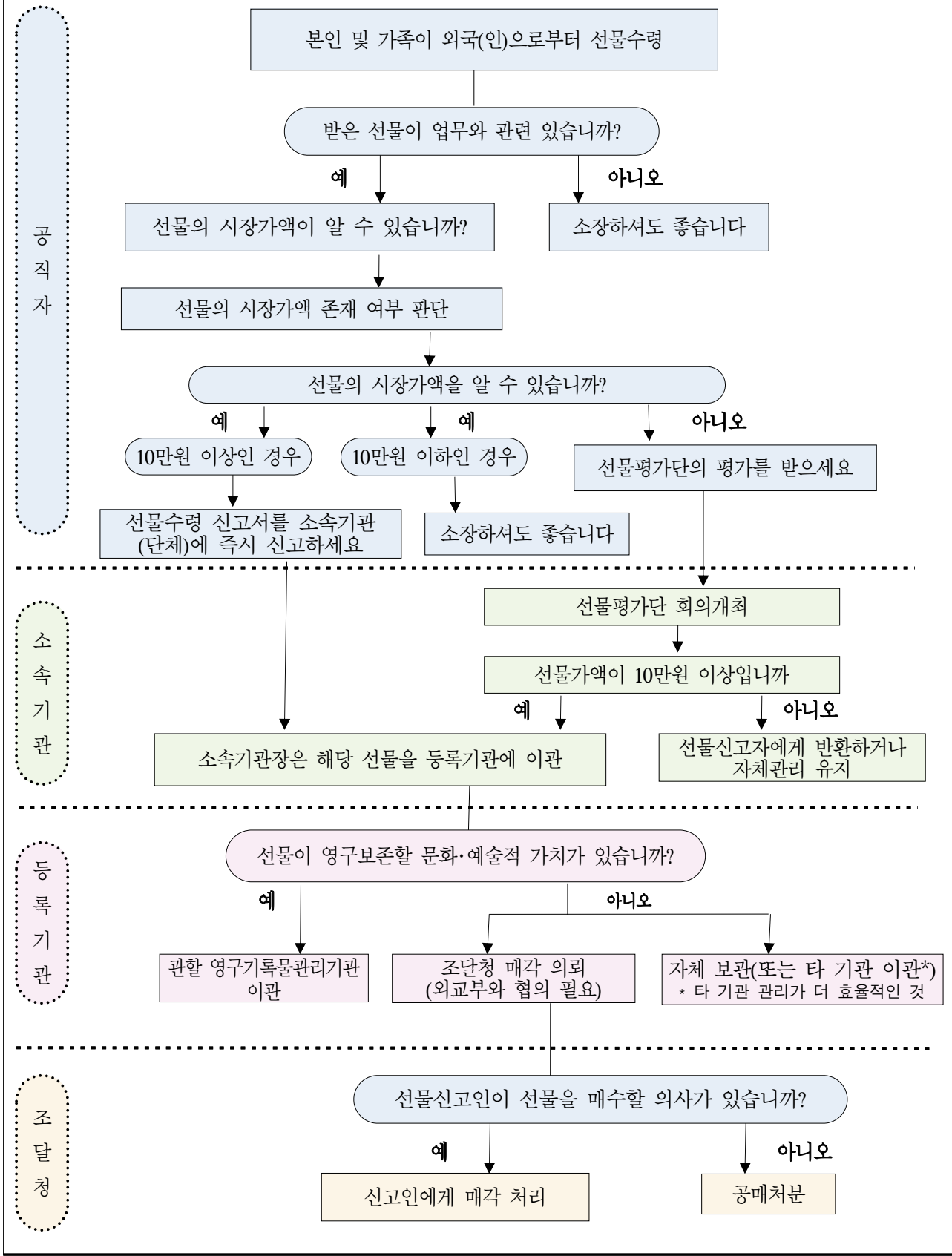
1.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 1) 연중 상설 게재
-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을 변경하여, 국외여행보고서 작성시 선물수령 여부와 선물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15.11월부터)

2.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 보관 관리중인 선물의 연1회 전수조사 실시
- 보관기관별 자체 기획전시 등 선물 활용도 제고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



공
직
자

소
속
기
관

등
록
기
관

조
달
청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 예시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 (이관)	
등록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붙임 2 선물 수령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선물 수령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등)				
선물 내역							
품명	규격	수량	증정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수령 경위
			국명	직위 (직급 등)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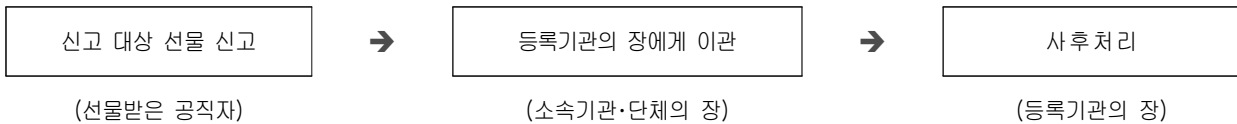
귀하

작성 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하십시오. [예 : 일반직고위공무원 가등급]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기재하십시오.
[예: 일반직고위공무원(직위없음)]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하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등]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3 선물 평가표 예시

선물 평가표(예시)

	품 명	천칭모형 기념품
	규 격	20×15cm
	신고인 (직 위)	홍길동 (장관)
선 물 사 진	증정(인)국명	미국

선물 신고대상 여부 판단			
평가위원	선물신고대상 여부		비고
	○	×	
단장(감사담당관)	○		
부단장(총무과장)	○		
간사(윤리계장)	○		
○○ 과장	○		
윤리업무 담당		×	
물품관리 담당	○	×	
외부위원	○		
결 과	6	2	

최종 의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선물신고 대상이라 판단 해당 선물을 즉시 신고하도록 수령인에게 안내 조치 ----- 추정가액 : 신고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10만원 미만) 추정가액을 명기
----------	--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붙임 5 선물 관리 대장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선물 관리 대장

일련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신고 연월일	신고인			증정인			수령일 및 장소	수령 경위	관리전환		관리 장소	비고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국명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월일	기관명		

작성 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하십시오. [예 : 일반직고위공무원 가등급]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기재하십시오.
[예: 일반직고위공무원(직위없음)]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하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등]

붙임 6 선물신고 관리상황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6.6.30.>

선물신고 관리상황(년도/ 분기)

1. 국외출장 및 선물수령실적

직위 (직급)	성명	출장국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선물수령내역(10만원·\$100이상)			선물평가단 평가여부
					선물명	수량	선물 가액	

2.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

직위 (직급)	성명	접견 인사				선물수령내역(10만원·\$100이상)			선물평가단 평가여부
		소속국명	직위	성명	방문목적	선물명	수량	선물 가액	

3. 신고선물 관리현황

신고선물	관리 현황			
	계	등록기관 이전	자체 관리	비고
금회 / 연간 누계	금회 / 연간 누계	금회 / 연간 누계	금회 / 연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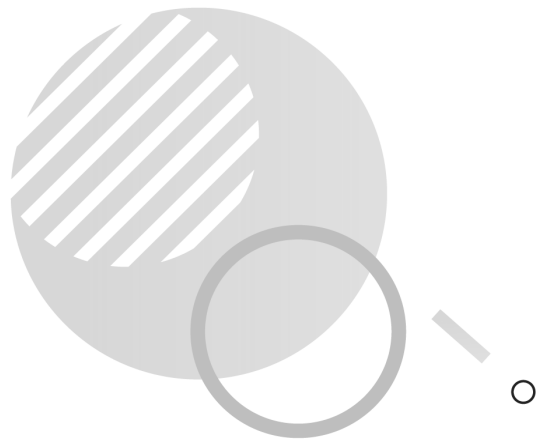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선물수령내역은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이 10만원 또는 \$100이상인 경우에만 선물명과 수량,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2. 선물가액 산정을 위해 선물평가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선물평가단 평가여부'에 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3. 신고선물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비고'란 에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제 8 장
공 직 유 관 단 체



제8장 공직유관단체

공공성이 큰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재산등록·공개의무 등을 부과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을 도모하고자 함

I 공직유관단체 개요

1. 공직유관단체 개요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관·단체(법 제3조의2제1항)로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까지 관보에 고시(영 제3조의2제2항)
-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법 제10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10조제4항)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까지 관보에 고시(영 제3조의2제5항)

2. 공직유관단체 지정효과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는 재산등록, 취업제한, 선물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임원으로도 지정되면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추가 부과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타 법률에 의해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 시책 추진 의무, 전 임직원의 선물신고 의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등이 발생

II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1.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법 제3조의2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 ① 한국은행
- ② 공기업
-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재출자·재출연 포함)
※ 재정지원(출연·출자·보조금) 규모는 매년 지원액의 3년 평균액으로 함
-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⑥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⑦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단체는 지정 대상이 아님
-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영 제3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2. 지정제외 등(영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
※ 관할 감독기관(등록기관)에서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신고서(신고변동일: 공직유관단체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를 생성하여 재산등록 의무자가 퇴직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등 제출(법률, 정관 등)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통보서식 : 기관·단체 현황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Ⅲ

재산등록·공개대상자

1.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 대상자

- ① 법에서 지정한 대상자(법 제3조제1항11호)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²²⁾
 -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②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법 제3조제1항12호)
 -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영 제3조제3항)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법 제3조제1항13호)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수석급 이상 직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

- ① 법에서 지정한 대상자(법 제10조제1항11호)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법 제10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24조제4항)
 -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22)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이 추천(각 1인)하는 위원(총5명)을 말함

참고 질의·응답

1.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공직유관단체(지방공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출자·출연·보조액’에 해당되나?
 - ▶ ‘출자·출연·보조액’은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금·출연금·보조금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출자·출연·보조액’에 해당합니다.
2. 재정지원, 임원의 선임 등 기관 단체 중 관련 법률 및 정관상 기관장 및 임원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나?
 - ▶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여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3. 기관 정관에 임원선임 절차에 대해 ‘이사회에서 선임 후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 ▶ 기관·단체 정관에 임원선임시 주무관청에 단순 보고만 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보고’는 일정서류만 제출하면 종료되는 형식행위이므로 법령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승인·동의·추천·제청 등)에서 제외(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20. 1. 31.)
4. 소관 기관의 1회성 행사 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야 하나?
 - ▶ 공직유관단체 지정시 임원 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바, 안정적인 공직유관단체 지정·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재정지원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에 해당됩니다.
5. 재산공개대상 기관·단체로 지정된 경우, 기관장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지?
 -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법 제3조제1항12호)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영 제3조3항) 이므로 기관·단체의 장이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비상임 임원은 재산등록대상 및 재산공개대상이 아닙니다.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1 기관·단체 현황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4.>

기관·단체 현황표

(앞쪽)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기관·단체 유형	감독기관

주요업무

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	[]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에 해당 []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
취업심사대상 기관 여부 (해당 항목에 "√" 표시)	[] 안전 감독 업무 [] 인·허가 규제 업무 [] 조달 업무 [] 해당 없음

1. 사유

※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거나 제외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정관규정 등)

2.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임기

3. 임원 선임 절차

직위	선임 절차
기관장	
부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4.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분	최초 설립 시	최근 3년간 재정현황			
		직전년도 (년도)	2년 전 (년도)	3년 전 (년도)	3년치 평균
총 자산					
예산총액					
출자금	(%)	(%)	(%)	(%)	(%)
출연금	(%)	(%)	(%)	(%)	(%)
보조금	(%)	(%)	(%)	(%)	(%)
위탁·대행사업비	(%)	(%)	(%)	(%)	(%)
기타 (금액 및 출처)					

5.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단위: 억원)

근거	위탁 또는 대행 업무 내용	구분 (위탁, 대행)	사업비(단위: 억원)
			(%)
			(%)

6. 담당자 정보

구분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작성방법

1. 기관명: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등기되었거나 또는 법령상 규정된 기관·단체명을 적으십시오.
2. 설립근거: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모든 법령 근거를 적으십시오.
3. 기관·단체 유형: ① 한국은행·공기업 ② 임원선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해당) ③ 지방공사·공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해당) ④ 재정지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해당) ⑤ 업무위탁·대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해당) ⑥ 재출자·재출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5호 해당) ⑦ 그 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 해당) 중 선택하여 적되,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하는 사항을 모두 적으십시오.
 - ※ 유형만 기재하고,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예시: 임원선임, 재정지원).
4.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5. 사유: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지정범위에 해당하거나 제외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고, 근거가 된 법령 등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임원현황: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및 비상근 이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파악하되, 상근여부를 반드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임기: 법령(정관) 상 임기를 적으십시오(예: 3년, 2년 등).
 - 주요 경력: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를 적으십시오.
 - ※ 공석의 경우에는 직위(직책)란에는 반드시 표기하고 성명/주요경력란은 공석으로 표기하십시오.
7. 임원선임 절차: 임면권자 및 선임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으십시오(예: 이사회 선출 후 장관 승인,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 임명 등)
8. 재정현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금 등을 적으십시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금·위탁대행사업비 외의 재정사항은 기타로 포함하되, 주요출처(예: 개인(민간)출연, 자체사업 수입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란에는 해당 연도 예산 대비 출자(출연·보조)금 비율을 적으십시오.
9.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 위탁 또는 대행 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 두십시오.
 - 주요 위탁 또는 대행업무의 내용,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비를 적고, (%)에는 기관의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적으십시오.
10. 담당자 정보
 - 공직유관단체: 현황표 기재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
 - 감독기관: 기관·단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 부서의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80g/㎡)]

참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20.3.31.개정, '21.1.1.시행)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3 공직유관단체 지정 효과

□ 공직자윤리법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장	제10조	○ 재산공개 의무
	제14조의4	○ (공개자) 보유주식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18조의5	○ 해당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
임원	제3조	○ 재산등록 의무
	제17조	○ 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
	제18조의5	○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재직 중 본인의 취업 청탁행위 금지
임직원	제15조	○ 외국으로부터 미화 100\$(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
	제18조의2	○ 임직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 취업 제한
	제18조의4	○ 퇴직 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제22조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위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유로 임직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에 해당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제8조	○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
	제81조의2	○ 부패방지의무 교육 실시
임직원	제7조	○ 청렴의 의무
	제7조의2	○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제56조	○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제82조	○ 직무관련 면직 자는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
	제86조	○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89조	○ 비위면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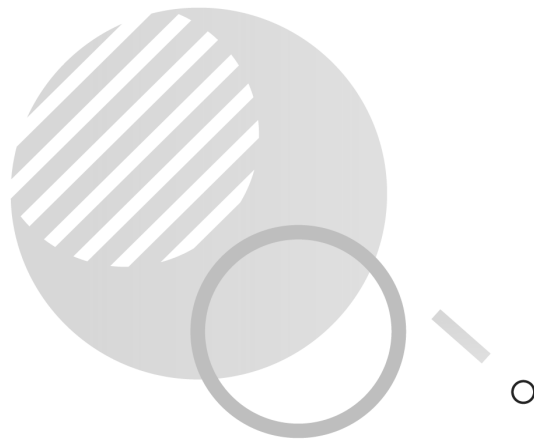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법률 전체 적용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 조성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한 직무수행 발견시 해당 직무 중지나 취소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한 직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임직원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의 금지 - 인가·허가 등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금지 -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등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 금지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의 신고 의무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나 통상적 관례 등의 경우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등의 신고 및 처리 의무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며 외부강의 시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을 초과 수수 금지 등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제 9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장 공직자윤리위원회

I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1. 설치근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법 제9조제1항)

2. 설치현황 : 265개(2020. 6. 1 현재)

- 중앙(5개)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 지방(260) : 각 지방자치단체(243), 시·도 교육청(17)에 설치

기관별	위원회(265개)	관할
①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② 대법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무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위 및 각급 선거관위소속 공무원
⑤ 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중앙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원 지방 및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⑥ 지방자치단체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17개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그 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226개 : 75시, 82군, 69구)	그 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⑦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17개)	그 시·도 교육위원 및 교육청소속 4급 이하 공무원

II | 위원회 구성

1.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구성(법 제9조제3항)

-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다만,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
- (구성)
 - 위촉위원 : 위원장 포함 7명(시·군·구 3명)
 - 판사·변호사·검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 임명위원 : 부위원장 포함 4명(시·군·구 2명)

나. 임기(법 제9조제3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각 위원회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법 제9조제4항)

< 위원회별 위원임기, 선임, 심사절차 등 관련 규정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대통령령
 - ※ 위원 임기 및 선임방법 : 위촉위원은 2년(1차 연임가능), 임명위원은 재직중인 기간이며,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
- ▶ 시·도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시·도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정함

2. 분과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제9조제5항)
- 분과위원회 구성, 회의·의결,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법 제9조제6항)

< 대통령령에서 정한 분과위원회 >

- ▶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 구성
 - 분과위원장 : 정부윤리위원회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위원 중 지명
 - 위원자격
 - 정부윤리위원회위원
 - 공직윤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분과위원회 기능(영 제22조의2제3항)
 -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 회의·의결(영 제22조의2제4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 ▶ 수당 등 지급(영 제22조의2제5항)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Ⅲ | 기능 및 권한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법 제9조제1항제1호)

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법 제8조)

-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 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입 심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승인
-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 허위등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 및 수입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재산공개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위임

나. 심사결과의 처리(법 제8조의2)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이상의 조치내용을 등록기관장 및 기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2. 재산공개 및 기타(법 제10조)

-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재산의 공개
-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앙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4.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법 제19조의3, 영 제35조의5)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② 업무취급승인 심사, ③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

< 공개 항목 >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퇴직시기
-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결과 및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 ▶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직위(직급), 취업일

5. 취업이력 공시(법 19조의4, 영 제35조의6)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6.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법 제2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7.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IV 직권 재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심사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 할 수 있음

< 재심 사유 >

- ▶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 ▶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V 회의·의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 규칙,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 구성(법 제9조제3항, 영 제16~17조, 제20조)

구 분	구 성	임기, 선임방법
위촉직(7인) - 위원장 포함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시민단체추천자	○ 대통령이 위촉 ○ 임기 : 2년(1차연임 가능)
임명직(4인) - 부위원장 포함	정부소속 공무원	○ 대통령이 임명 ○ 임기 : 해당직위 재임기간

2. 회의·의결(영 제19조제1~3항)

가. 회의소집 :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됨(영 제19조제1항)

나. 의결(영 제19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거짓등록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용 재산취득 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의 조사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용 재산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다. 위원의 심사·의결 제척 및 회피(영 제19조의2)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됨
 -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라. 위원 해임 및 해촉(영 제19조의3)

-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회의 비공개(영 제19조제5항)

-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3. 기 타

가. 재산등록현황 보고(영 제8조)

- 등록기관장²³⁾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재산등록서류 이송(영 제9조)

- 위원회가 등록기관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하면 등록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함

다. 담당직원의 지정(영 제23조)

- 등록기관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

라. 연차보고자료 제출(영 제36조)

- 등록기관장, 수임 심사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등록기관을 말함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system)

제1장 공직윤리시스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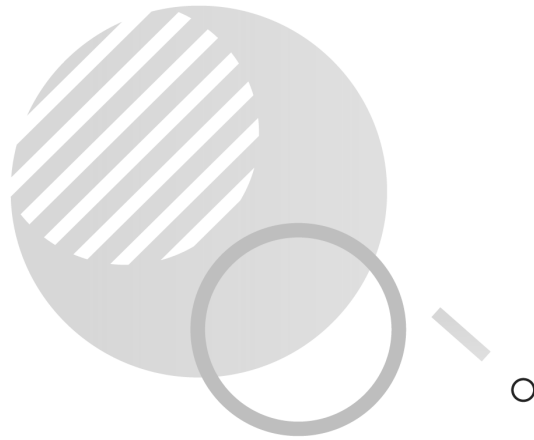
제2장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업무하기





제 1 장

공직윤리시스템 이해



제1장 공직윤리시스템 이해

I 용어의 이해

구분	용어	내용
시스템	재산등록시스템	등록의무자가 재산사항 신고, 고지거부 허가신청,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윤리업무시스템	업무담당자가 등록의무자 관리 및 심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회신업무시스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보유기관이 등록대상자 재산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의무자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
	의무면제자	전보, 강임 등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된 등록의무자
	신고유예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
	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의거 신고내용(공개목록)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등록의무자
재산등록	신분변동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등록의무자의 신분 상태 변경
	변동일	신분변동이 발생한 날짜 (=인사발령일자)
	등록기준일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날짜 (=변동일) ※ 정기 변동사항 신고시는 매년 12월 31일
	(재산)등록대상	재산신고시 등록해야 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소유자별 보유재산사항(16종)
	재산등록(신고)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재산사항을 기재한 재산신고서의 제출
심사권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공위, 정부공윤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행정부 전체 등록의무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소속의 3급(4급) 이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관장
	수임기관	행정부에서 4급(5급) 이하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 고지거부 심사 등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수임소속기관	수임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수임기관의 재산심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예시) 경찰청(수임기관)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수임소속기관)

구분	용어	내용
재산심사	심사처분기준	재산신고, 심사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처분 기준
자료회신 (자료조회)	심사조회	재산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 및 부동산 기관에 심사대상자의 보유재산 조회
	사전조회	수시 및 정기 변동신고를 위해 금융 및 부동산 기관에 등록대상자의 보유재산 조회(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정기변동	정기변동(신고)	매년 12월 31일을 등록기준일로 모든 등록의무자가 재산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재산신고
	정보제공동의서	정기 변동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매년 11월말까지 사전 제출해야 하는 정보제공 동의서

II 재산신고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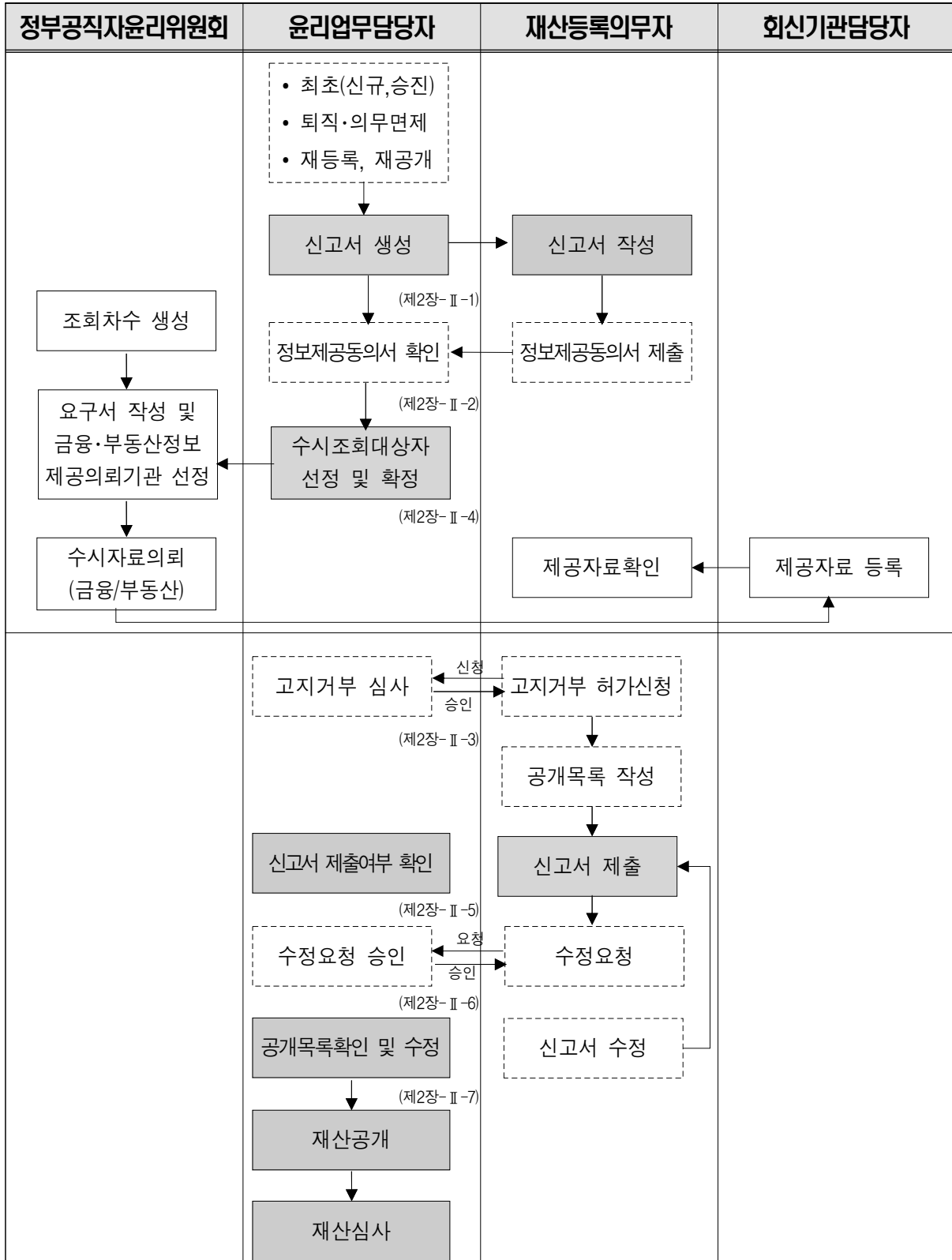
신고종류	발생사유	세부내용
최초신고	신규	최초로 재산신고의무가 발생할 때 신분변동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예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비공개자), 민간에서 정무직 임용(공개자))
	승진	비공개자에서 공개자로 승진 또는 전보 시 신분변동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예시)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 적용
변동신고	정기변동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일로 1월부터 2월말까지 신고
	퇴직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의무면제	의무면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재등록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변동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의무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재공개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변동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 공개자였던 등록의무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보완신고	최초보완	최초 재산신고서 심사결과 보완명령 이상의 심사처분 결과에 따른 보완 신고
	변동보완	변동재산신고서 심사결과 보완명령 이상의 심사처분 결과에 따른 보완 신고

※ 소속변경, 전출입 등 재산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의무자관리 기능을 통해 처리

III 업무 흐름도

1. 수시 신고

([] : 해당 사항 발생시 처리)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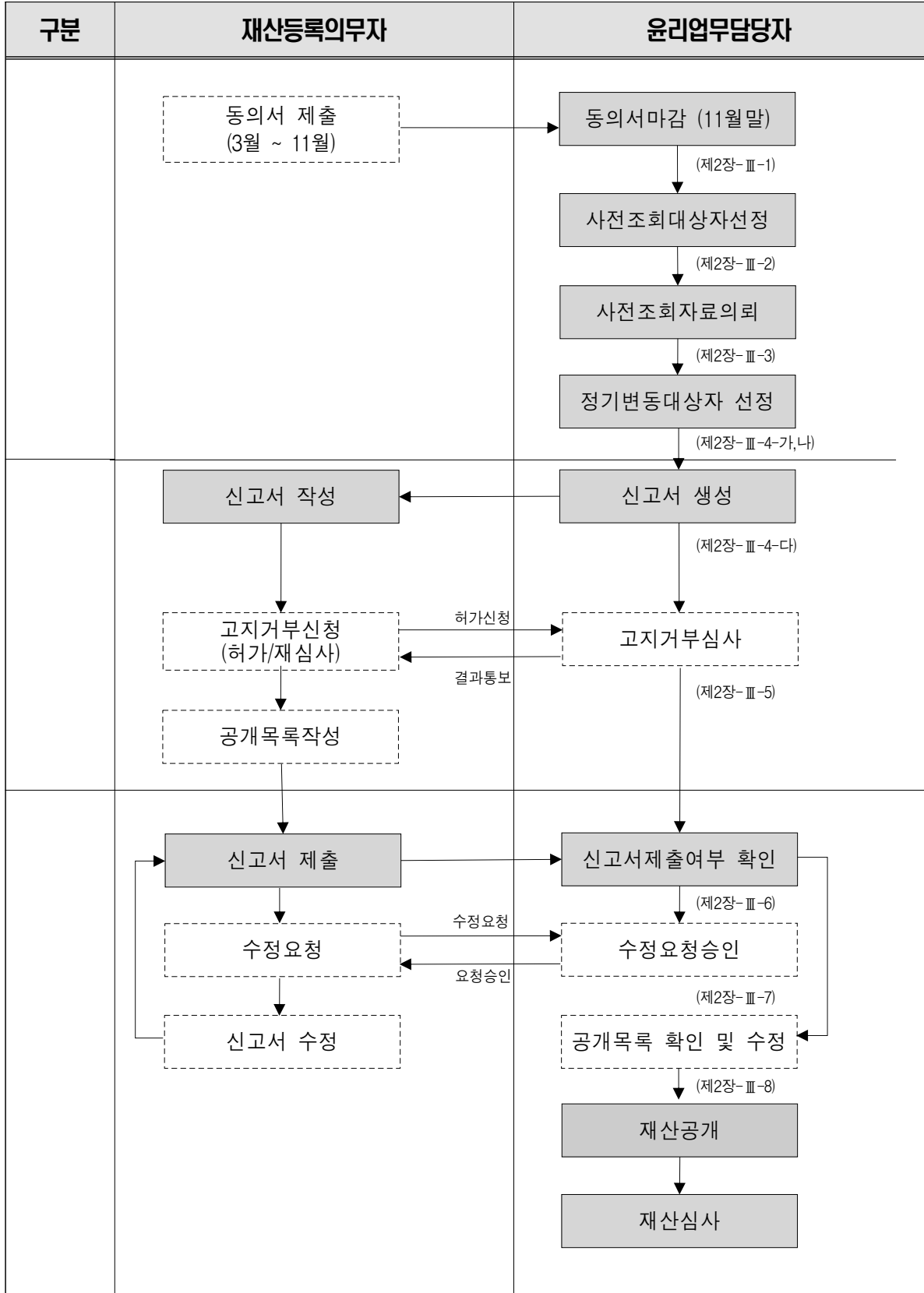
《참고》 윤리담당자의 수사조회업무 세부처리절차

• 수사조회업무 처리절차

의무자 정보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I 시스템 [재산등록]-[등록의무자]-[의무자관리] ▶ 의무자 신분변동 상태 확인 및 인사발령 사항 현행화, 신고서 생성
동의서 제출 안내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30. 법 개정 전 동의서를 제출한 수사조회대상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 ※ '16.6.30. 이전 동의서의 효력은 정기변동 시에만 적용됨 ▶ 등록기준일의 다음달 15일경까지 제출 [단, 등록기준일이 1일인 경우 초일산입 적용으로 그 달의 15일까지 제출]
동의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I 시스템 [재산등록]-[동의서관리]에서 확인 처리 ▶ 입력된 정보와 제출된 정보제공동의서 원본을 비교하여 확인처리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I 시스템 [재산등록]-[사전신고자료조회]-[수사조회대상자선정]에서 처리 ▶ 수사신고 [최초, 재등록, 퇴직, 의무면제] 중 법개정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명단을 PETI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정, 확정 ▶ 매달 20일경까지 진행
자료조회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조회대상자선정에서 확정 된 명단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 의뢰
금융정보 활용입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동의 한 수사 의무자에게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하여 안내하고, 금융정보활용입력을 이용하여 재산신고가 가능함을 안내 ▶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16일부터 가능 [단, 등록기준일이 1일인 경우 바로 다음 달의 16일부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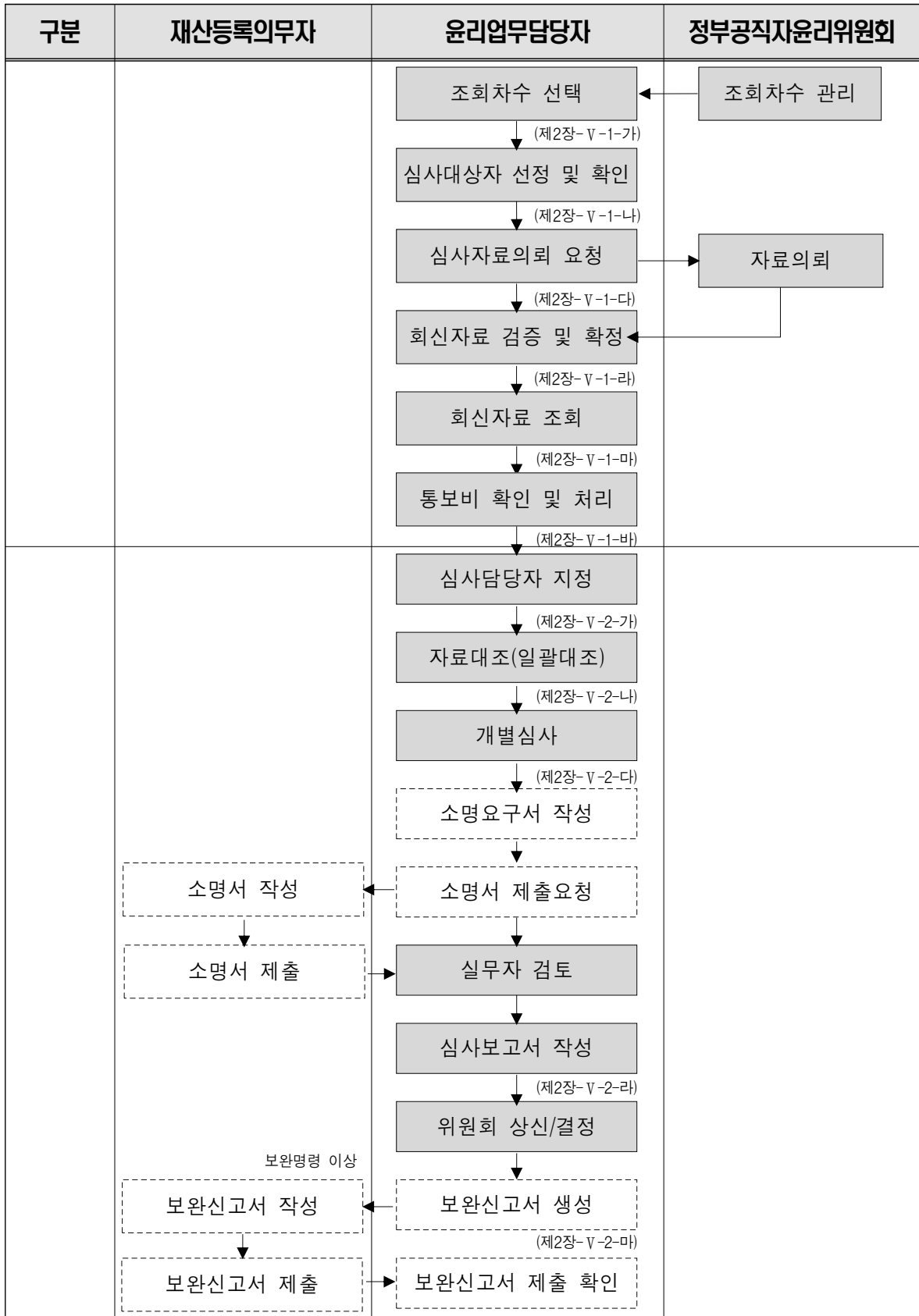
2. 정기변동신고

([] : 해당 사항 발생시 처리)



3. 재산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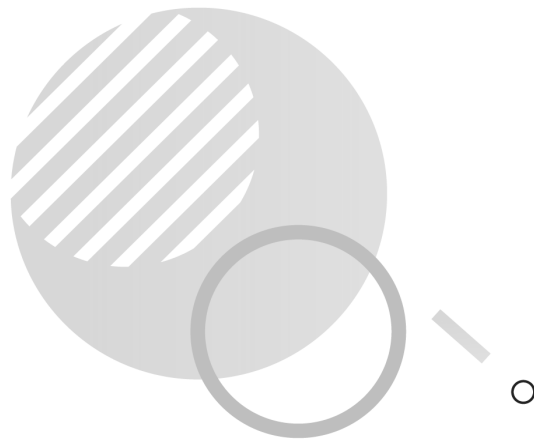
([] : 해당 사항 발생시 처리)





제 2 장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업무하기



제2장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업무하기

I 시스템 사용준비

1. 사전준비

가. 시스템 사용 신청

- 각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가 신규 담당자를 추가/변경하거나 본인의 직무를 추가하는 경우 공직윤리시스템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담당자변경/신청] 으로 신청
 - ※ 선임자가 후임자 신청 및 인계 가능, 선임자가 없는 기관은 신청서 제출
 - ※ 수신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PETI) [게시판]-[자료실]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신청 서식」 (참고)

- 윤리업무담당자로 등록된 후에는 전자정부통신망(행정망)에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를 이용하여 로그인 가능
 - ※ 최초 접속 시 접속주소 : <https://www.peti.go.kr/mgm/>

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신청(교육청 등)

- 행정망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대표적 기관 지방교육청 등)은 공직윤리업무시스템 사용신청서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자 신청서를 같이 작성·첨부하여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로 문서 송부

PETI) [게시판]-[자료실]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신청 서식」 (참고)

다.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신청

- 재산 및 고지거부 심사 시 재산등록대상(주민등록정보), 재산등록항목(토지, 건물)의 명세·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활용
-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요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털(<http://www.share.go.kr>) 참조

참고 1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신청 서식**

윤리업무 담당자 신청서

- 소 속 기 관* :
- 소 속 부 서* :

공직윤리 업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신규, 변경) 통보합니다.

윤리업무 담당자 정보	
성 명*	변경전
	변경후(신규)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파일(공직자재산등록정보) 취급자 관리를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input type="checkbox"/> 재산등록·심사 <input type="checkbox"/> 취업확인	
직 급*	
이메일(E-mail)*	
@ ※ 기관메일 또는 공직자통합메일 사용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공직윤리 업무안내 발송용	
FAX	
직장주소	
□□□□□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정부원격근무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원관리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 직급, 전화번호, 행정전자서명
- 선택항목 : 휴대폰 번호, 이메일

나.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접속일시, 브라우저 종류, OS 종류

※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홈페이지 개선 등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회원관리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나. 서비스이용내역

- 보유근거 :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 29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3년
- 보유항목 : 아이디, 성명, 소속

※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유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3 행정정보공동이용 현황

1. 행정정보공동이용 목적

- 재산등록사항 및 고지거부 심사 시 재산등록대상(주민등록정보), 재산등록항목(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명세·권리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 할 경우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토록 하여 등록 의무자의 편의도모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공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동법시행령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이용기관 : 265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공무원, 시·도, 시·군·구, 각 교육청, 국회, 중앙선관위 등)

2. 행정정보공동이용 현황

○ 이용사무별 공동이용정보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	보유기관	이용범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	기관별 권한부여자 (최소범위로 제한)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
	가설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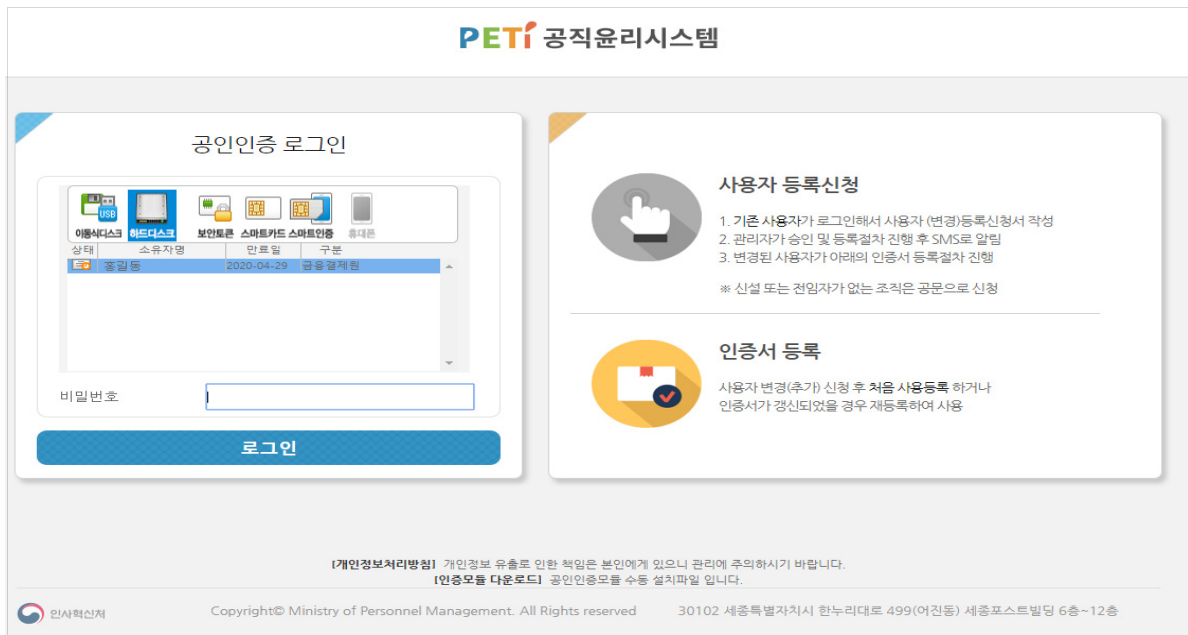
3.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 신청 절차

- ① 행정정보공동 업무포털 (<http://www.share.go.kr>) 접속하기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
- ② 공직자재산등록심사 이용사무 찾기 : [열람권한관리] >> [열람권한신청] 메뉴 클릭
- ③ 열람권한 신청하기 : 이용사무명 “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 조회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관련 규정 및 열람신청자(이용자)의 업무분장내역”을 입력하고 신청버튼 클릭
- ④ 기관 권한부여 책임자의 승인 받기
- ⑤ 정보제공기관 권한부여 책임자의 승인 받기
- ⑥ 열람권한 신청결과 확인하기 : 처리상태는 요청/부분승인/승인/반려/반납 등으로 나타남

2. 시스템 로그인

가. 프로그램 설치

-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또는 크롬(Chrome)을 실행시킨 후 주소창에 윤리업무담당자 홈페이지 주소(<https://www.peti.go.kr/mgm/>)를 입력하여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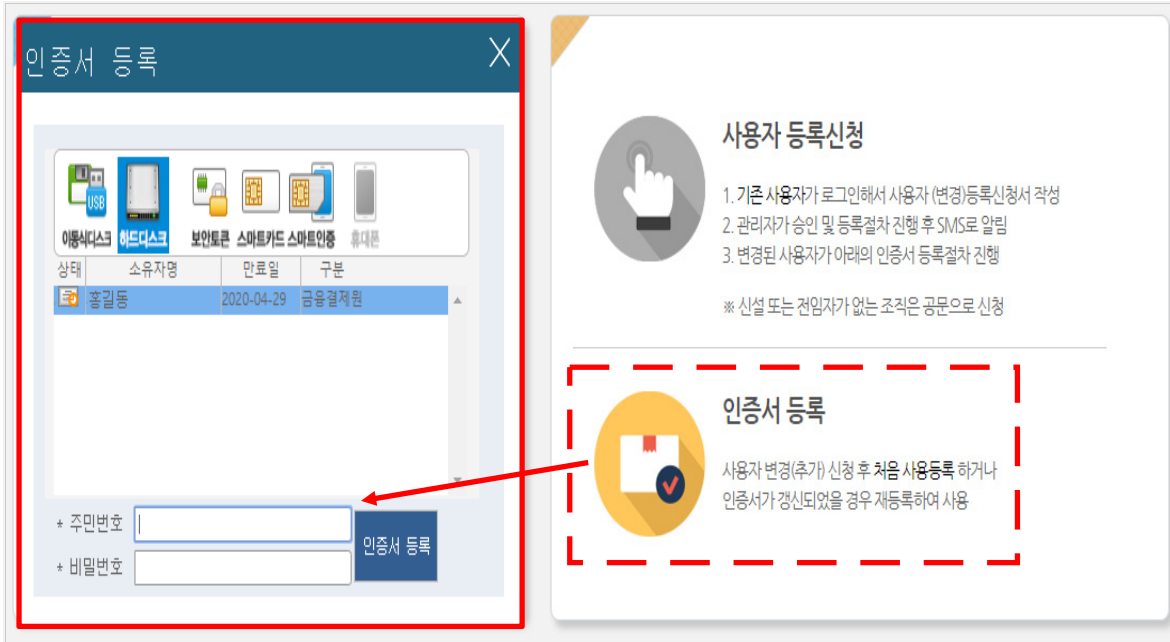
TIP Chrome에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치 방법

- ▶ 사이트 접속시(붉은 삼각형의 느낌표)의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이 나올 경우 페이지 하단의 [고급]버튼 클릭
→ www.peti.go.kr(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클릭하여 진행

나. 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 인증서 등록
 - 시스템에 처음으로 접속할 때는 먼저 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
 - 등록된 인증서를 갱신 또는 재발급하였을 경우 먼저 인증서를 등록 후 사용

-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PETI시스템에 로그인



< 사용가능한 인증서 >

명 칭	인증서 발급기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행정안전부, 교육부, 검찰청, 대법원, 국방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위한 개인 인증서
공인인증서 (NPKI)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범용, 인터넷뱅킹용, 금융거래용으로 발급된 인증서

다. PC승인(업무용PC 교체 및 자리이동시)

- 공직윤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인증된 PC에서만 사용 가능
 - 최초 접속 시 자동으로 담당자 업무용PC의 IP·MAC주소를 등록(1인 1대)
 - ※ PC교체(변경)시 서비스데스크(☎ 1522-4273)로 문의

라. 초기화면

○ PETI시스템 첫 화면에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이 표시됨

주요기능	설 명
나의일정	주요일정을 추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메뉴
자주 찾는 업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등록하여 사용
나의현황	기관의 현등록의무자 수와 심사 현황을 확인
나의할일	등록의무자 관리 등 처리해야 하는 작업 목록 표시
따라하기	재산신고 요령과 윤리업무에 대한 간편 자료 제공
제도소개 / 매뉴얼	항목 별 매뉴얼 제공

TIP 초기화면에서 편리하게 업무하기

- ▶ ‘자주 찾는 업무’에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등록하여 활용
- ▶ ‘자주 찾는 업무’에 등록된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기능으로 바로 이동
- ▶ 수시일정 등 업무 추진일정을 ‘나의 일정’에 등록하여 상시 확인

II 수시신고

1. 신고서 생성

가. 최초신고(신규임용/승진)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 위 “(PETI)”의 의미는 윤리업무담당자용 시스템상의 해당 메뉴 위치를 의미함
- 임용, 승진 등 인사발령으로 신규 등록의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직자를 먼저 추가등록 후 신고서 생성
 - [추가]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변동일, 소속, 직급, 심사권한구분 등은 정확히 확인 후 등록
 - ※ 등록의무자 상태(퇴직 후 1년 이상 또는 의무면제 후 3년 이상)에 따라 최초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중복확인을 먼저 실행하여 중복확인 후 정보를 등록
- 주민등록번호 중복확인 결과 중복이 없으면 신규 등록의무자로 저장 가능하며 신상명세(소속기관, 직위, 직급 등)를 등록
 - ※ 필수사항 외의 정보(한자,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는 등록의무자가 재산신고 시 입력 가능

주요사항	상 세 내 용
주민등록번호	중복확인을 실행하여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공개/비공개	공개/비공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개/비공개 기준은 윤리법령 등을 참조
신분변동일	실제로 신분변동이 발생한 일자를 입력해야 하며, 신고의 기준일이 됨
심사권한구분	등록의무자의 직위/직급에 따른 심사권한을 정확히 선택 후 입력

등록의무자상세 X

초기화 는 필수 항목입니다. [지정사유], [기타사유]가 맞지 않는 경우 직급을 다시 선택하시고 저장 하십시오. 저장

주민번호	920702-1234567 <input type="checkbox"/>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 제외	성명	한글 김공직 <input type="checkbox"/> 실명확인 한자 김공직 <input type="checkbox"/>	*변동일	2019-05-23 <input type="text"/>	*공개구분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소속	인사혁신처 <input type="text"/> 선택	상세소속	인사관리국 <input type="text"/>	세부상세소속	<input type="text"/>	직위	<input type="text"/>	
*직급	서기관 <input type="text"/> 선택	*지정사유	03. 4급이상의 공무원 <input type="text"/>	*기타사유	--지정사유가 기타인 경우 선택하세요-- <input type="text"/>	지정사유	<input type="text"/>	
*심사관한구분	<input type="radio"/> 정부공무원 <input checked="" type="radio"/> 수임기관						의무자상태	<input type="radio"/> 현등록의무자
주소	자택	국내 <input type="text"/> 주소찾기	주소	<input type="text"/>	영	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장	국내 <input type="text"/> 주소찾기	주소	<input type="text"/>	영	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	자택 <input type="text"/>	직장 <input type="text"/>	*휴대폰	010152242 x <input type="text"/>	휴대폰이 없는 경우 111-1111-1111으로 입력해주세요.			
Email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온라인메일	<input type="text"/> @ mail.go.kr				
비고	<input type="text"/>							

- 실행결과 중복인 경우 기존 타기관 퇴직자, 의무면제자로 등록된 경우이므로 확인 후 등록기관(소속) 등 변경 정보를 수정 후 등록

※ 타기관 퇴직 및 의무면제자를 해당기관 등록의무자로 등록 시 마지막 등록정보가 표시되며 현등록의무자로 등록 후, 소속기관을 현행화하고 재산신고서를 생성해야 정상 등록 됨

<주민등록번호 중복확인 결과 타 기관의 퇴직자인 경우 표시 화면>

퇴직 및 의무면제자 정보 X

퇴직 및 의무면제자 정보

성명	홍길순		
의무자상태	퇴직 <input type="text"/>	변동일자	2009-01-01 <input type="text"/>
소속	행정안전부 <input type="text"/>		
직급	서기관 <input type="text"/>	직위	<input type="text"/>
신고서 제출여부	미생성 <input type="text"/>		

해당 기관의 현등록의무자로 등록하시겠습니까? YES NO
 현등록의무자로 등록할 경우 'YES'선택 → 소속변경 → 의무자등록(저장) → 신분변동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의무자를 추가한 후 하단의 [신분변동 이력] 탭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생성

[김공직]신분변동상세
✕

신분변동상세
저장

업무자	김공직 (920702-*****)	한자	김공직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변동일	2019-05-23	의무자상태	현등록의무자		
소속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직급	서기관	직위	
비고					

신고서생성 신고서생성 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신고서종류	최초등록신고	변동사유	신규	심사권한구분	수임기관
-------	--------	------	----	--------	------

주요사항	설명
변동일	신분변동일(=등록기준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 여부 ※ 공개자를 비공개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신고서종류	‘최초신고’로 선택
변동사유	‘신규’ 또는 ‘승진’을 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 받을 심사권한이 표시됨

- 미작성, 작성중 신고서는 삭제가 가능하나, 제출된 신고서는 삭제가 불가

신고서 상태	설명
미작성	신고서가 생성하였으나, 등록의무자는 미확인 상태 → 신고서 삭제 및 재생성 가능
작성중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 → 신고서 삭제가 가능하나 등록의무자와 반드시 협의 후 처리
제출완료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 → 신고서 삭제 불가능

- 신고서가 생성되고 나면, 등록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유선 또는 SMS 통보) 고지거부,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한 사항도 안내

나. 의무면제신고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의무면제자가 되면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등록 의무자의 상태를 의무면제로 변경
- [신분변동 이력]탭에서 [추가]버튼을 클릭 → 의무자 상태를 ‘의무면제’로 변경 → 의무면제신고서를 생성한 후 등록의무자에게 신고서 작성하도록 안내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으로 '20.06.04. 시행 예정안
 - '20.06.04. 이후 의무면제 2차가 발생한 대상자는 해당 의무면제 신고는 하지 않으나, 시행일 이전('20.06.03.)까지 발생한 의무면제 2차 신고 대상자는 해당 의무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의무면제신고는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입·전출 처리 하지 않음(법 제11조)

주요사항	설 명
변동일	인사발령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 여부 ※ 비공개자를 공개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신고서생성	신고서 생성을 위해 반드시 체크
신고서종류	‘변동신고’로 선택
변동사유	‘의무면제’로 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 받을 심사권한이 표시됨

[홍길동]신분변동상세 X

신분변동상세
저장

의무자	홍길동 (770101-*****) 한자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변동일	2020-04-02	의무자상태	의무면제 <input type="checkbox"/> 2개월째 말일미내 재등록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전산서기관 <input type="checkbox"/>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서생성 신고서생성 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신고서종류	변동등록신고	변동사유	의무면제
		심사권한구분	수임기관

다. 퇴직신고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의 상태를 퇴직자로 변경
- [신분변동 이력]탭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퇴직신고서를 생성한 후 등록 의무자에게 신고서 작성하도록 안내

주요사항	설 명
변동일	퇴직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 여부 ※ 비공개자를 공개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신고서생성	신고서 생성을 위해 반드시 체크
신고서종류	‘변동신고’로 선택
변동사유	‘퇴직’으로 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 받을 심사권한이 표시됨

[홍길동]신분변동상세 X

신분변동상세 저장

의무자	홍길동 (770101*****) 한자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변동일	2020-04-02	의무자상태	퇴직 <input type="checkbox"/> 2개월째 말일내 재등록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전산서기관
비고			

신고서생성 신고서생성 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신고서종류	변동등록신고	변동사유	퇴직
		심사권한구분	수임기관

라. 재등록신고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퇴직 후 1년 이내 또는 의무면제 된 이후 3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 발생하는 경우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의 상태를 현등록의무자로 변경
- [신분변동 이력]탭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재등록신고서를 생성한 후 등록의무자에게 신고서 작성하도록 안내

주요사항	설 명
변동일	인사발령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 여부 ※ 비공개자를 공개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신고서생성	신고서 생성을 위해 반드시 체크
신고서종류	‘변동신고’로 선택
변동사유	‘재등록’으로 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 받을 심사권한이 표시됨

[홍길동]신분변동상세
✕

신분변동상세
저장

의무자	홍길동 (770101-*****) 한자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변동일	2020-04-02	의무자상태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2개월째 말일이나 재등록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전산서기관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비고			

신고서생성 신고서생성 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신고서종류	변동등록신고	변동사유	재등록
		심사권한구분	수임기관

마. 재공개신고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공개대상자에서 비공개대상자로 변동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로 해당 대상자의 공개여부를 ‘공개’로 변경
- [신분변동 이력]탭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재공개신고서를 생성한 후 등록 의무자에게 신고서 작성하도록 안내

주요사항	설 명
변동일	인사발령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 여부 ※ 비공개자를 공개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신고서생성	신고서 생성을 위해 반드시 체크
신고서종류	‘변동신고’로 선택
변동사유	‘재공개’로 선택
심사권한구분	재산심사를 받을 심사권한이 표시됨

[홍길동]신분변동상세 X

저장

신분변동상세

의무자	홍길동 (770101*****) 한자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비공개 <input type="radio"/> 정기 <input type="radio"/> 수시		
변동일	2020-04-02	의무자상태	재공개 <input type="checkbox"/> 2개월째 말일내 재등록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직위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서생성 신고서생성 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신고서종류	변동등록신고	변동사유	재공개	심사권한구분	정부공무원

2.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확인

(PETI) [재산등록] - [동의서관리] - [동의서관리]

- 재산신고 시 본인과 배우자,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회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 종류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 ※ 2016.06.30. 전 제출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에만 유효하므로 기 제출자도 수시 신고(최초,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재공개)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2016.06.30. 이후 개정 서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시신고자(최초,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재공개)의 경우는 해당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다음달 15일 까지 제출
(단, 매월 1일 등록기준일의 경우 초일산입 적용으로 그 달 15일까지 제출)
 - ※ 수시신고(최초, 재등록, 재공개) 시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의 경우 정기변동신고에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
-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의 기재내용과 시스템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스템 등록된 동의자 정보와 정보제공동의(철회)서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 시스템에 등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기 시 수시 및 사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유의
 -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후 정보변경한 뒤 개명된 이름 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윤리업무담당자가 시스템에 등록 가능

※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정보제공동의서는 다음 재산신고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항 목	설 명
제출구분	동의 또는 철회 선택
확인여부	완료/진행중(미완료) ※ 확인여부가 완료 건에 대해서만 자료의뢰됨

조회조건

제출일: 시작일 2018-05-24, 종료일 2019-05-24

소속: 하위소속포함

등록의무자: 성명 김공직, 생년월일 YY-MM-DD

제출구분: 전체 동의 철회

동의서구분: 전체 금융 부동산

공개여부: 전체 공개 비공개

심사권한구분: 전체

파일첨부여부: 전체 첨부 미첨부

확인여부: 전체 완료 진행중

[초기화](#) [조회](#)

동의서관리 | 동의현황

주민번호오류자내역

동의서관리 1000 (총 1 건)

<input type="checkbox"/>	확인여부	제출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현소속	직위	직급	공개구분	심사권한구분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2019-05-24	김공직	92-07-02	인사혁신처 인사...	인사혁신처 인사...		서기관	공개	수입기관

정보제공 동의서 내역 ✕

동의(철회)서 확인처리 [윤리업무담당자 입력] [저장](#) [삭제](#)

※ 권속의 관계, 성명,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철회서 확인처리** 후 의무자에게 '권속정보변경'을 통해 정보 변경 안내 및 변경처리 후 동의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족정보변경'은 신고서 제출 및 수정기한이 지나면 재산등록 시스템 '마이페이지' 좌측에 보이게 됩니다.

*성명	김공직	*주민번호	920702-1234567	*심사권한구분	수입기관
*소속	인사혁신처	*제출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동의 <input type="radio"/> 철회	*제출일	2019-05-24
직급	서기관	확인자		확인일자	
*첨부파일	report (1).pdf 내려받기 삭제				

※ 관계, 성명, 주민번호, 서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가능한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010-1234-5678

[전속에서 추가](#) [신규추가](#) [삭제](#)

<input type="checkbox"/>	관계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동의서(철회)서		부동산동의서(철회)서		금융동의서	부동산동의서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서명확인여부	서명확인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김공직	920702-1234567	010-1522-4273	동의서 처리중	2019-05-24	동의서 처리중	2019-05-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배우자	900505-2222222	010-1522-1522	동의서 처리중	2019-05-24	동의서 처리중	2019-05-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고지거부 심사

(PETI) [재산등록]- [의무자관리] - [고지거부관리]

- 등록의무자가 신청한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 고지거부 허가신청 심사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사완료해야 함**
 - 신청일, 신청구분, 처리단계 등의 조건을 입력 후 목록을 조회하고 심사대상의 리스트가 조회되면 심사수행
- 등록의무자가 오프라인으로 고지거부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윤리업무담당자가 고지거부 신청 기한내에 시스템에 등록 가능

※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한은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고지거부 신청기한이 경과되면 윤리업무담당자도 등록 불가

《 고지거부 처리단계에 대한 설명 》

구 분		설 명
처리 단계	작성중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신청서를 작성중인 상태로 제출 전 상태 → 등록의무자에게 고지거부신청에 대한 사항 확인 후 제출독려 → 잘못 신청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삭제 가능
	심사중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신청서를 작성완료 후 제출한 상태 → 고지거부 심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태임
	심사완료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상태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고지거부관리

고지거부관리 고지거부신청조회

심사영단 심사보고서출력 요약보고서출력 재심사대상지정 고지거부허가만료지정

고지거부관리 1000 건/페이지(총 4 건)

* 처리단계가 [작성중]인 건 중 [재산등록의무자 입력] 건은 고지거부 신청기한내에 의무자가 제출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신청일	최초적용 등록기...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상세소속	현소속	직위	직급	의무자 상태	공개 구분	심사권한구분	신청 연월	허가 연월	불허 연월	반려 연월	처리단계
<input type="checkbox"/>	2020-04-01	2020-03-16	홍길동	70-10-10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현등록의...	비공개	수임기관	2	0	0	0	심사중
<input type="checkbox"/>	2020-04-01		김공직	81-09-0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현등록의...	비공개	수임기관	2	0	0	0	작성중
<input type="checkbox"/>	2020-04-01	2020-03-06	박윤리	89-01-0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현등록의...	비공개	수임기관	2	0	0	2	심사완료

- 심사대상자를 선택하여 세부사항 조회, 관련 사항 확인 후 심사결과 입력

《 고지거부 확인사항 》

항 목	설 명
증빙서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고지거부 신청서, 증빙서류
고지거부기간	신청한 해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2.30.까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됨
특이사항/메모	고지거부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부가적인 정보 기재
신청내역	증빙자료 제출 여부, 허가구분, 고지거부사유, 검토 등 기재하고 필요 시 [친족에서 추가]를 선택하여 친족추가가능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서류를 별송으로 받은 경우 스캔하여 추가하고, 첨부 서류가 많은 경우 압축하여 추가(개당 5MB이내, 최대 3개까지 가능)
고지거부 심사기준 보기	고지거부 심사기준과 심사의견 작성 예시, 심사방법, 심사 시 주의점 등 담당자가 참고할만한 사항 확인 가능

- [심사완료] 클릭 시 고지거부 심사결과가 반영됨

고지거부 추가/수정
✕

심사보고서출력
심사완료
신청철회

[윤리업무담당자 압력]
삭제
저장
SMS

등록의무자 신청정보	성명	김공직	생년월일	92-07-02	공개여부	비공개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서기관	직위	
	신청일	2019-05-24	핸드폰번호	010-1522-4273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허가 <input type="radio"/> 재심사		증빙서류	Hydrangeas.jpg 내려받기 삭제 2019-05-24 10:23 Desert.jpg 내려받기 삭제 2019-05-24 10:23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심사현황	증빙서류접수일	2019-05-24	처리일	YYYY-MM-DD	심사미감예정일	
	최초적용 신고서등록기준일	2019-05-23	신고서종류	최초등록	변동사유	신규
	고지거부기간		처리단계	심사중	처리자	
	특이사항					
	메모					

고지거부 신청내역(허가) ※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클릭하면 e-하나로민원에 접속됩니다.

2020 심사기준 보기
친족에서 추가
삭제

	관계	성명	주민번호	직업	증빙자료 확인여부	신청사유구분	기타사유	검토의견	허가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남	장남	900506-5555555	(주)공...	예	독립생계유지		의견 예시	선택

4. 수시조회대상자 선정 및 확정

(PETI) [재산등록] - [사전신고자료조회] - [수시조회대상자선정]

- 수시신고 대상자(최초, 의무면제, 퇴직, 재등록, 재공개) 중 정보제공동의자에게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신기관에 의뢰할 대상자(명단)를 확정
 - **2016.6.30. 이전** 제출된 정보제공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에만 유효하므로 기 제출자도 수시신고를 위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2016.6.30. 이후** 서식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수시신고자가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서 중 윤리업무담당자의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수시조회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자로 조회됨
 - 수시조회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선정자탭의 기타에서 조회되며 개별선정 클릭하면 회신기관에 의뢰할 대상자로 선정됨

※ 먼저 [미선정자]탭의 기타에서 개별선정을 해야만 [선정자]탭에 명단이 조회됨

- 수시조회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등록의무자와 친족 중 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확인 후 이상없을 경우 개별선정하여 수시조회 대상자에 포함
 - [미선정자(원인 확인 후 추가할 대상)]탭의 주민번호오류자에서는 수시조회 대상자 중 주민등록번호 검증 프로그램 상 오류자가 조회됨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아닌 경우 해당 대상자를 선택 후 개별선정하면 [선정자] 탭으로 이동함
- ※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조회될 수 있음
- ※ [미선정자]탭에 남아있는 대상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인 경우 해당 신고서의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수시조회대상자 선정 확정하기 이전까지 정보 수정 절차 진행해야 함

선정자	주민번호오류자(미선정자)	동의서미확인자(미선정자)	기타(미선정자)
-----	----------------------	---------------	----------

미선정자-주민번호오류자 목록									개별선정	미선정자목록	엑셀
선택	등록의무자 정보					친족정보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관계	성명	주민번호			
<input type="checkbox"/>	홍길동	920710-1234567	인사혁신처	6급		모	모친	550303-4444444			
<input type="checkbox"/>	홍길동	920710-1234567	인사혁신처	6급		부	부친	500202-3333333			
<input type="checkbox"/>	홍길동	920710-1234567	인사혁신처	6급		배우자	배우자	790101-2222222			

- 정보제공동의서 미확인자의 경우 **[미선정자(원인 확인 후 추가할 대상)]**탭의 **동의서미확인자**에서 조회됨
 - 윤리업무담당자가 제출된 동의서를 ‘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동의서관리]** 메뉴에서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를 **[미선정자(원인 확인 후 추가할 대상)]**탭의 **기타**에서 반드시 개별선정하여 수시조회대상자 명단에 포함

※ [미선정자]탭에 남아있는 대상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선정자	주민번호오류자(미선정자)	동의서미확인자(미선정자)	기타(미선정자)
-----	---------------	----------------------	----------

미선정자-동의서미확인자 목록							미선정자목록	엑셀
선택	등록의무자 정보				동의서 미확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부동산		금융
<input type="checkbox"/>	김공직	920702-1234567	인사혁신처	서기관		2	2	

- 수시신고자가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윤리업무담당자가 ‘확인’완료하거나, 동의서 미확인자에서 조회된 대상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확인’완료한 경우 **[미선정자(원인 확인 후 추가할 대상)]탭의 기타**에서 조회됨
 - 조회되는 대상자 전체를 선택 후 개별선정하여 선정자로 포함
- ※ [미선정자]탭의 기타에 개별선정하지 않은 대상자가 남아있는 경우 수시조회 대상자 확정 불가

선정자 | 주민번호오류자(미선정자) | 동의서미확인자(미선정자) | **기타(미선정자)**

미선정자-기타 목록 개별선정 | 미선정자목록 | 엑셀

선택	등록의무자 정보				동의자 인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부동산	금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길동	920710-1234567	인사혁신처	6급		1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공직	920702-1234567	인사혁신처	서기관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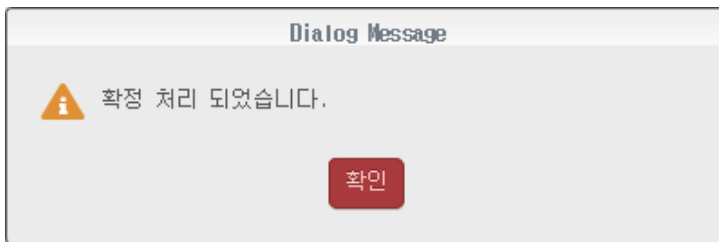
- 미선정자를 모두 확인 후 수시조회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
 - **확정** 클릭하여 수시조회를 위한 승인받은 내부결재문서 파일을 첨부 후 저장하면 확정이 완료됨(첨부파일은 필수항목으로 미첨부시 확정 불가)

선정자 | 주민번호오류자(미선정자) | 동의서미확인자(미선정자) | 기타(미선정자)

사건수시대상자선정 목록 ※ TIF, JPG, GIF, PDF 파일만 가능합니다. (4000PI 스캔파일) | **확정** | 엑셀

※선정대상자수(의무자 - 의무자만/천족만) - 부동산:2명 - 2건/4건, 금융:2명 - 2건/4건
 ※선정자수(의무자 - 의무자만/천족만) - 부동산:2명 - 2건/4건, 금융:2명 - 2건/4건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최종 등록기준일	최종 신고구분	선정자수		동의자명단
							부동산	금융	
김공직	920702-1234567	인사혁신처	서기관		2019-05-23	신규	2	2	동의자명단
홍길동	920710-1234567	인사혁신처	6급		2019-05-24	신규	4	4	동의자명단



5. 신고서 제출확인

(PETI) [재산등록] - [신고서관리] - [신고서제출확인]

-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제출상태와 제출일 확인
- 제출기한일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 안내 및 문자 메시지(SMS) 통보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 작성중 내용을 문의하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보기** 를 클릭하여 작성중인 신고서 내용을 조회
 - 등록기관에서는 **상세보기** 를 클릭하여 해당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제출마감일 까지 신고서 내용을 열람 가능
 - 재산신고서의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만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28조)

제출여부	설 명
미작성	신고서는 생성되었으나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작성중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
제출완료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신고서 관리

신고서제출확인 | 수정요청승인관리 | 신고서상태변경관리 | 재산변동없음신고자확인

신고서제출확인 1000 건/페이지(총 2건)

등록기준일	의무자상태	성명	생년...	소속	신고서...	변동사유	신고일자	제출기한일	제출여부	주식 거래내역	신고내역	미동의자		2016.06.30 이전	
												금융	부동산	금융	부동산
2019-12-30	현등록의무자	홍길동	78-11-11	인사혁신처	최초등록	신규		2020-03-02	작성중	X	상세보기	0	0	0	0
2019-12-30	현등록의무자	이공직	80-04-04	인사혁신처	변동등록	재등록		2020-03-02	작성중	X	상세보기	1	1	1	1

※ 수시 신고자인 경우 2016.6.30. 이전 서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2016.6.30. 이후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6.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PETI) [재산등록] - [신고서관리] - [수정요청승인관리]

-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 시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수정요청은 법정기한(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내에만 가능하므로, 등록의무자에게 안내 필요
 - 수정요청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 수정 후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승인여부	설 명
처리중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수정요청이 제출된 상태
승인	신고서 수정요청을 허가한 상태
반려	신고서 수정요청을 불허한 상태 ※ 반려시에는 반드시 처리사유 기재

※ 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승인 없이 언제든지 수정가능

신고서제출확인
수정요청승인관리
신고서상태변경관리
재산변동없음신고자확인

수정요청승인관리
 1000
건/페이지 (총 0 건)
목록의 체크박스는 엑셀 저장 시에만 이용됩니다.
엑셀 ALL
엑셀

<input type="checkbox"/>	요청일	등록기준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신고서종류	변동사유	심사권한구분	공개구분	승인여
<input type="checkbox"/>	2019-05-08 17:13:20	2019-03-22	홍길동	79-07-10	인사혁신처	서기관		최초등록			비공개	

수정요청승인관리 - 목록에서 선택 후 승인여부를 선택하시면 자동 저장 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승인여부 <input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처리중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요청사유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margin-top: 5px;"> 처리사유 </div>
--	--

TIP 수정요청 승인사유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거 신고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승인가능

7. 재산공개(공개대상자)

가. 공개목록 관리

(PETI) [재산등록] - [공개목록관리] - [공개목록관리]

- 재산공개대상자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개목록을 생성하여 공개준비
 - 등록의무자가 내용을 변경하면 반드시 재생성 필요(붉은색으로 표기됨)
- 공개된 후에는 [공개] 버튼을 통하여 ‘공개일’, ‘공개번호’ 등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
 - 잘못 [공개] 처리한 경우 [미공개] 버튼으로 상태변경
 - [미공개]로 변경시 입력한 ‘공개일자’, ‘공개번호’가 초기화되므로 주의

기능명	구분	설 명
관보서식	버튼	관보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
법정서식	버튼	관보 게시내용을 등록의무자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 서명이 포함된 서식
공개/미공개	버튼	공개일자 및 공개번호를 입력하거나 삭제
순번	목록	일괄출력 시 출력되는 순번(1부터)을 지정 ※ 확인이 용이하게 직급순으로 정렬
공개목록 조회	목록	·공개목록생성 : 게시를 위한 공개목록 생성 ·공개목록수정 : 생성된 공개목록 내용 수정 ·공개목록조회 : 공개된 공개목록 내용 조회
붉은색 배경	목록	공개목록 생성이후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수정한 상태이므로 공개 목록 재생성이 필요한 상태 ※ 신고서 내용과 공개목록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생성하여 작업 진행

공개목록관리

관보서식일괄출력 법정서식일괄출력 재산공개현황

○ 공개목록관리 (총 5건) 추가 저장 삭제 역선택 ALL 엑셀 SMS

<input type="checkbox"/>	순번	등록기준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상세소속	직위	직급	신고구분	공개목록조회	신고서 제출여부	공개시한일	공개목록로당일	공개구분
<input type="checkbox"/>		2018-12-01	이윤리	79-01-01	인사혁신처				신규	공개목록생성	제출	2019-02-28	2019-02...	
<input type="checkbox"/>		2018-12-31	박재산	68-10-25	인사혁신처				정기변동	공개목록수정	제출	2019-03-31	2019-03...	
<input type="checkbox"/>		2018-12-31	홍길순	76-08-08	인사혁신처				정기변동	공개목록수정	제출	2019-03-31	2019-03...	
<input type="checkbox"/>		2019-01-03	김민사	61-03-01	인사혁신처				재등록		제출	2019-04-31		
<input type="checkbox"/>		2018-12-31	최정직	71-09-03	인사혁신처				정기변동	공개목록조회	제출	2019-03-31	2019-03...	

TIP 공개목록 공개시기

- ▶ 수시공개는 매월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신고한 신고서(신규, 변동신고)를 제출마감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 ▶ 정기공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나. 공개목록 수정

(PETI) [재산등록] - [공개목록관리] - [공개목록수정]

- 재산공개를 위해 생성한 최종 공개목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목록 작성 지침에 따라 편집 후 공개
 - 공개목록 수정 시 등록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법정서식으로 출력하여 등록의무자 본인 확인 가능**
 - 소재지, 권리의 명세, 비고(또는 변동사유) 등만 수정 가능(예금, 증권은 수정 불가)
 - 재산신고서와 공개목록을 대조·확인하여 재산이 누락 또는 오기되거나 개인 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본인확인을 받은 후 [수정완료]를 통하여 확정

공개목록조회				
성명	김공직	등록기준일	2019-05-23	
순번	<input type="text"/>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서기관	직위
				<input type="text"/>
수정완료 법정서식일괄출력 관보서식일괄출력 공개목록가져오기 저장				
본인과의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현재가액	비고
토지(소계)			22,100	
본인	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0㎡	22,100	
건물(소계)			50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건물 48.00㎡	25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건물 48.00㎡	250,000	
예금(소계)			71,250	
본인		국민은행 35,000 , 우리은행 1,250	36,250	
배우자		신한은행 35,000	35,000	
증권(소계)			10,506	
본인	상장주식	ㅇㅇ전자 500주	10,506	
총계			1,030,129	

TIP 공개시 주의할 사항

- ▶ 공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공개목록 작성 검토 필요
 - 소속 / 직위 확인(예 : 교육부 강원대학교 / (전)총장)
 - * 국방부 직위 기재 안함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 번지·동·호, 상가 번지·층·호 등)는 본인 확인 후 반드시 삭제
 - 단위 착오 확인(천원) : 재산번호, 예금액 증감이 큰 경우 등
 - 고지거부 사유 확인 :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기타 중 선택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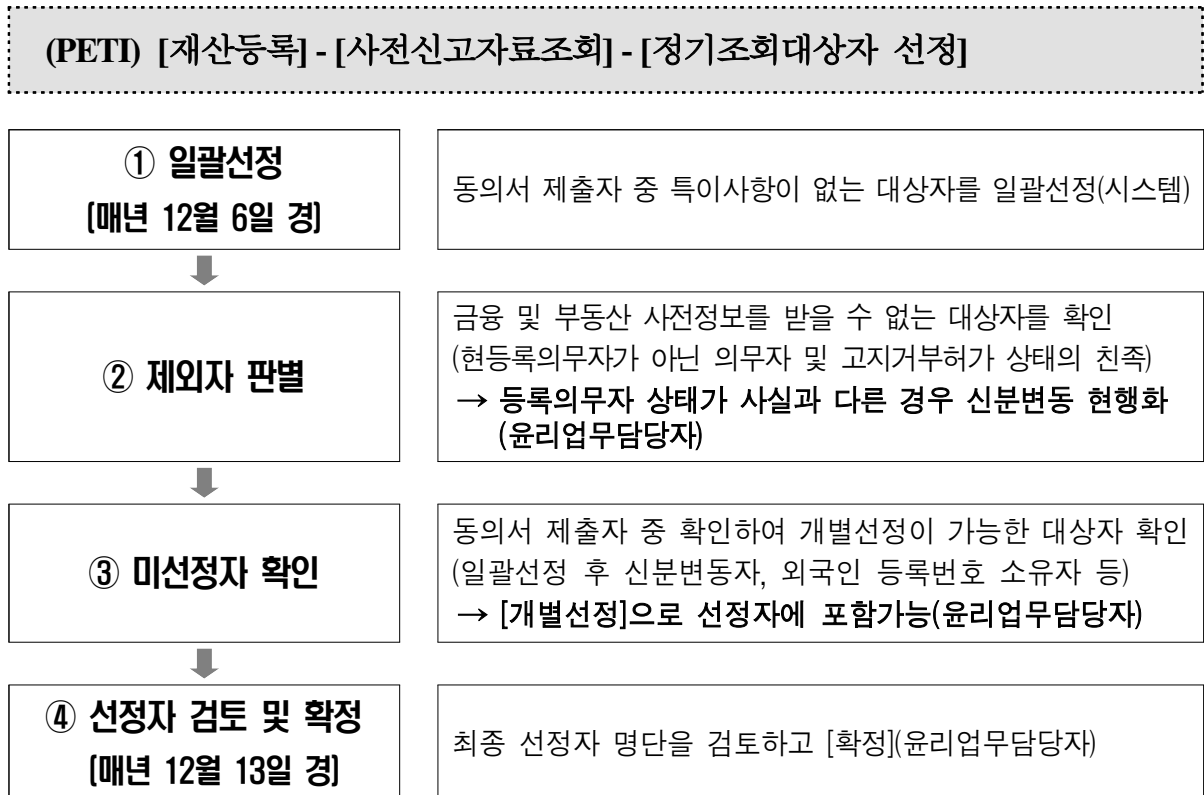
Ⅲ

정기변동신고

1.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마감 및 확인

-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동의서 제출 및 확인 완료(제출 마감일 : 매년 11월 30일)
 - 등록의무자의 친족등록정보와 동의서 서류간 일치여부 확인
 - [동의서관리]에서 '진행중' 상태가 없도록 처리
(p313 2.정보제공동의서 제출확인 참조)
- ※ 금융, 부동산 등의 정기조회자료 제공은 동의서 처리단계가 '완료' 상태인 대상자만 의뢰 가능
- ※ 제출마감일 이후 추가 동의 명단 제출 불가함에 유의

2. 정기조회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 사전 정보제공 대상자 선정은 시스템을 통한 일괄선정 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매년 11월 중 공지

- [제외자]탭에서는 정기변동신고자가 아닌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 고지 거부 허가받은 대상자가 조회됨
 - 제외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실제 제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외자에 포함된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 후 기타(미선정자)에서 개별선정하여 선정자로 포함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최종 등록기준일	최종 신고구분	최종 의무자구분
홍길동	580116-1616164	인사혁신처			2019-12-02	퇴직	퇴직
이공직	640707-1070707	인사혁신처			2019-12-24	퇴직	퇴직
박윤리	910202-1402002	인사혁신처			2019-12-02	퇴직	퇴직
최재산	910808-2080808	인사혁신처			2019-12-24	퇴직	퇴직
공직	710909-1090909	인사혁신처			2019-12-02	퇴직	퇴직
윤리	740505-2050505	인사혁신처			2019-12-24	퇴직	퇴직

- [미선정자(원인 확인후 추가할 대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동의서 미확인자,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조회됨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의 경우 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자로 오류여부 확인 필요
 - ※ 오류자가 아닌 경우 개별선정하여 선정자로 포함
 - 동의서 미확인자의 경우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 중 윤리업무담당자의 ‘확인’ 완료가 되지 않은 대상자로 [동의서관리] 메뉴에서 확인
 - ※ 동의서 ‘확인’ 후 기타에서 개별선정하여 선정자로 포함
 - 기타의 경우 시스템에서 일괄선정 이후 현등록의무자로 신분변동 되었거나, 동의서 미확인자에서 ‘확인’처리된 대상자, 전출기관에서 미선정되어 전입된 등록의무자가 조회됨
 - ※ 기타에서 조회되는 대상자 모두 선택하여 개별선정으로 선정자로 포함 (기타에 대상자가 남아있는 경우 사전조회대상자 확정 불가능)

재산등록 > 사전신고자료조회 > 정기조회 대상자선택

선택자: 주민번호오류자(미선정자) 동의서미확인자(미선정자) **기타(미선정자)** 퇴직/신고면제자(제외자) 고지거부허가자(제외자)

미선정자-기타 목록 개별선택 엑셀

등록의무자 정보					동일자 인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부동산	금융
김윤리	690112-1234567	인사혁신처	서기관		3	3

- 선정자, 미선정자, 제외자에 표시되는 대상자 검토 후 정기조회 대상자 확정
 - ※ 선정자 탭에 표시되는 대상자를 의뢰하며, 사전조회대상자 확정을 하지 않으면 자료의뢰가 불가함

재산등록 > 사전신고자료조회 > 정기조회 대상자선택

선택자: 주민번호오류자(미선정자) 동의서미확인자(미선정자) 기타(미선정자) 퇴직/신고면제자(제외자) 고지거부허가자(제외자)

사전정기대상자선택 목록 확정 엑셀

※선정대상자수(의무자 - 의무자만/친족만) - 부동산:307명 - 304건/999건, 금융:317명 - 317건/1040건
 ※선정자수(의무자 - 의무자만/친족만) - 부동산:269명 - 267건/829건, 금융:277명 - 277건/832건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	직위	최종 등록기준일	최종 신고구분	선정자수		동의자명단
							부동산	금융	
홍길동	580116-1616164	인사혁신처			2019-12-31	정기변동	4	4	동의자명단
이공직	640707-1070707	인사혁신처			2019-12-31	정기변동	2	2	동의자명단
박윤리	910202-1402002	인사혁신처			2019-12-31	정기변동	3	3	동의자명단
최재산	910808-2080808	인사혁신처			2019-12-31	정기변동	3	3	동의자명단
공직	710909-1090909	인사혁신처			2019-12-31	정기변동	4	4	동의자명단
윤리	740605-2050505	인사혁신처			2019-12-31	정기변동	6	6	동의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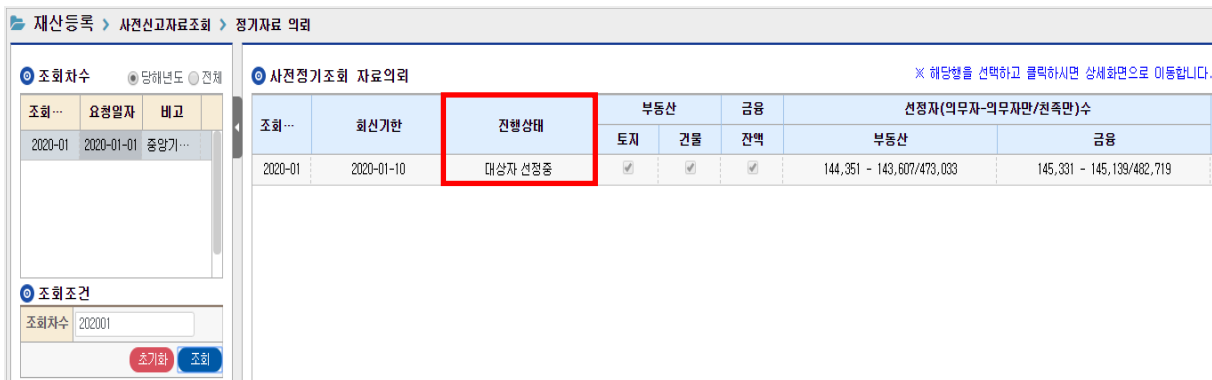
TIP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외국인인 경우 재산조회가 가능하나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하여 조회대상자에서 제외
 - 재산등록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만 등록토록 안내
- ▶ 신고유예자의 경우 정기조회대상자에 포함

3. 정기자료 의뢰

(PETI) [재산등록] - [사전신고자료조회] - [정기자료의뢰]

- 수시조회자료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 및 부동산정보 보유 기관에 일괄 처리하나, 정기자료의뢰는 대상자 확정 후 각 기관별로 자료의뢰까지 진행해야 함
- 정기조회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가 ‘대상자선정’, ‘요구서작성’, ‘요청완료’인 경우에만 조회가능



진행상태	설 명
대상자 선정중	정기조회대상자 선정 진행중인 상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
대상자 선정완료	정기조회대상자 확정이 완료되어 자료의뢰 가능한 상태
요구서 작성	정기자료의뢰를 위해 요구서 작성 중인 상태
자료의뢰 완료	정기자료의뢰 요구서를 작성 완료하여 ‘의뢰요청’까지 완료된 상태

- 사전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요구서 작성 및 의뢰요청
 - ※ 요구서는 시스템에 등록된 담당자 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먼저 [개인정보관리] 버튼을 통해 연락처 정보 등을 현행화

정기자료의뢰상세화면

의뢰요청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김달당	요청건수 (업무자-의무자만/전직원)	부동산(340 - 338/1,076) 금융(340 - 348/1,151)
------	-------	-----	-----	------------------------	--

요구서 금융기관 부동산 요청내역

요구서출력 확인서출력

저장

요청기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일자	2020-01-01
문서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0호	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0호	제출기한	2020-01-10

요구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자	인사혁신처	행정주사	김달당	전화번호 : 044-123-4567 예)02-345-6387
책임자	인사혁신처	4급	조과장	FAX번호 : 044-123-5678 예)02-345-6387

요구기관주소

30102 무평번호찾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동 호 (머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금융기관 확인 및 부동산 조회기관 선택
 - 금융기관은 일괄 선정되어 있어 확인만 가능함
 - 부동산 조회기관 선택 시 중앙부처(수입소속기관 포함)는 토지자료 의뢰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토지자료 의뢰기관으로 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시·도 지적과를 선택
 - 건물자료(연계자료)는 조회의뢰기관이 선정되어 있음

정기자료의뢰상세화면

의뢰요청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김달당	요청건수 (업무자-의무자만/전직원)	부동산(340 - 338/1,076) 금융(340 - 348/1,151)
------	-------	-----	-----	------------------------	--

요구서 금융기관 부동산 요청내역

요구서출력 확인서출력

* 의뢰하실 기관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토지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지적부서)

저장

조회연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nput checked="" type="radio"/>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채담당	044-123-4567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	최담당	02-123-4567	
<input type="radio"/> 인천광역시	최담당	032-123-4567	
<input type="radio"/> 대전광역시	최담당	042-123-4567	
<input type="radio"/> 대구광역시	서담당	053-123-4567	
<input type="radio"/> 광주광역시	정담당	062-123-4567	
<input type="radio"/> 울산광역시	배담당	052-123-4567	
<input type="radio"/> 부산광역시	김담당	051-123-4567	
<input type="radio"/> 경기도	서담당	031-123-4567	

10 count (s)

연계 자료

조회연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nput checked="" type="radio"/> 행정안전부 지방과세 분석과			

- 요청내역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관인날인] → [의뢰요청] → 공문시행
 - 위원회 관인이 날인된 ‘정보제공요구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인날인] 버튼을 클릭**
 - ※ 수임기관(수임소속 포함)은 관인 없이 [의뢰요청]
 - 부동산 탭에서 선택한 **토지자료 조회기관으로 협조공문 시행**
 - ※ 토지자료 협조공문은 위원회별로 시행하므로 수임 및 수임소속기관은 불필요

정기자료의뢰상세화면
✕

관인선택
관인날인(위원회)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자	김달달	요청건수 (의무자·의무자만/선택만)	부동산(340 - 338/1,076) 금융(340 - 348/1,151)
------	-------	-----	-----	------------------------	--

요구서
금융기관
부동산
요청내역

요구서출력
관인서출력

대상자구분

 전체
 금융
 부동산

인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부동산	금융
1	홍길동	00-12-20	서울특별시			5	5
2	이공직	76-01-31	서울특별시			4	4
3	박윤리	00-10-22	서울특별시			5	5
4	최재산	00-03-15	서울특별시			4	4
5	공직	99-06-12	서울특별시			4	4
6	유리	67-02-02	서울특별시			6	6

정기자료의뢰상세화면
✕

의뢰요청
관인선택 취소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김달달	요청건수 (의무자·의무자만/선택만)	부동산(340 - 338/1,076) 금융(340 - 348/1,151)
------	-------	-----	-----	------------------------	--

요구서
금융기관
부동산
요청내역

요구서출력
관인서출력

대상자구분

 전체
 금융
 부동산

인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부동산	금융
1	홍길동	00-12-20	인사혁신처			5	5
2	이공직	76-01-31	인사혁신처			4	4
3	박윤리	00-10-22	인사혁신처			5	5
4	최재산	00-03-15	인사혁신처			4	4
5	공직	99-06-12	인사혁신처			4	4
6	유리	67-02-02	인사혁신처			6	6

4.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및 신고서 생성

(PETI) [재산등록]-[정기변동 신고서생성]

가. 사전준비

- 등록의무자 상태 현행화
 - 등록의무자가 제출해야 될 신고서가 남아 있는 경우 정기변동신고서가 일괄 생성이 되지 않으므로 신고서 제출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 ※ 정기변동신고서 일괄생성 요청 시 미제출 신고서(보완신고서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의 정기변동신고서는 자동생성 불가
 - 진출된 등록의무자가 이전기관의 정기변동대상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전입·전출관리를 통하여 승인처리
- 심사종결 처리확인
 - 해당연도 재산심사 미종결 대상자를 확인하여 심사종결처리
 - ※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이후 이전 신고서가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으로 심사 종결 될 경우 마지막 신고서가 아니므로 보완신고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정기변동 업무 전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함

재산심사 > 소명/심사결과관리 > 심사보고서 관리

조회처수		대상자 목록	
조회처수	비고	소명진행 단계	심사진행 단계
<input type="checkbox"/>	2019-05 (비공개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04 (비공개자)		
<input type="checkbox"/>	2019-03 (비공개자)		
<input type="checkbox"/>	2019-02 (비공개자)		
<input type="checkbox"/>	2019-01 (비공개자)		

소명진행 단계	심사진행 단계	소명 요구	심사 보고서	심사 종결	등록기준 일자	변동사유	성명	생년월일	소속
		X	X	X	2018-12-31	정기변동	홍길동	63-09-09	
	심사보고서작성	X	○	X	2018-12-31	정기변동	박윤리	81-01-01	
	심사종결	X	○	○	2018-12-31	정기변동	이공직	77-11-11	
	심사종결	X	○	○	2018-12-31	정기변동	최재산	66-02-01	

- 작성중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보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및 10월 이전 등록기준일인 수시 신고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불가

나. 정기변동대상자 선정

- 대상자의 목록이 조회되며 **대상자선정** 클릭하여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로 선정
 - 정기변동대상자로 선정되어야지만, 정기변동신고 일괄생성 또는 정기변동 신고서 생성예약이 가능함

주요사항	설 명
대상자 선정	등록의무자를 선택 후 정기변동대상자임을 확인
신고서 생성	100명 미만인 경우, 직접 신고서를 생성하는 경우
신고서생성 예약	100명 이상의 선정된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서 생성 예약
정기변동대상자	금번 정기변동대상자 인원수
선정자	정기변동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수
미선정자	정기변동대상자로 미선정된 인원수
정기변동신고서 생성자	선정자 중 정기변동신고서를 생성한 인원수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정기변동 신고서생성

조회조건

등록 기한일: 2019-12-31

공개여부: 전체 공개 비공개

대상자 선정여부: 전체 선정 미선정

소속: 인사혁신처

생년월일:

생년월일: W-##-##

신고서 생성여부: 전체 생성 미생성

대상여부: 전체 대상 미대상

제출여부: 전체 제출 미제출

조회

대상자선정
일괄선정예약
신고서생성예약
예약취소
예약처리결과
신고서생성
익셀

정기변동관리(총 886건)

※ 현등록의무자 : 888명 / 정기변동대상자 0명 / 미대상자 : 50명
 ※ 선정자 : 0명 / 미선정자 : 322명 / 정기변동신고서 생성자 : 31명
 ※ 예약진행상태 : 예약건이 없습니다.
 ※ 예약가능시간 : 2019.12.22 00:00 ~ 12.30 24:00

<input type="checkbox"/>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의무자상태	미대상여부	대상자 선정여부	신고서 생성여부	총액 알치여부	제출 여부	심사 종결여부	위원회 결정
<input type="checkbox"/>	김공직	70-01-01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종결	-
<input type="checkbox"/>	홍길동	81-10-05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	-
<input type="checkbox"/>	이윤리	75-05-25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종결	-
<input type="checkbox"/>	박재산	68-11-07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	-
<input type="checkbox"/>	한정혁	77-03-22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	-
<input type="checkbox"/>	황인사	81-06-10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	-
<input type="checkbox"/>	강동록	76-11-10			인사혁신처	현등록의무자	-	선정	생성	-	-	-	-

다. 신고서 생성

(PETI) [재산등록] -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예약
 - 선정된 등록의무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예약 후 익일 신고서 생성결과 확인
 - ※ 생성예약은 시스템에 예약 등록한 순서대로 자동처리되며, 마감일에 근접하여 예약하는 경우 시스템 부하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예약 신청
 - ※ 정기변동신고서 생성예약은 1회만 가능하므로 대상자 목록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예약처리결과 확인
 - 예약실행 후 생성된 결과를 확인하고 미생성된 신고서는 직접 생성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예약 취소
 -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생성 예약 후 신분변동 등의 다수의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기변동 신고서 생성 예약 취소 가능

※ 단, 예약실행 전까지만 취소 가능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개별 생성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예약 이후 신분변동 등으로 누락된 정기변동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 후 개별 생성

※ 정기재산변동신고서의 개별 생성은 선정자 수가 100명 미만이거나, 예약생성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진행



TIP 신고서 생성예약 시 유의사항

- ▶ 위원회 개최일이 생성예약 마감일에 근접한 경우 위원회 의결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선정하여 예약실행
- ▶ 위원회 의결결과 보완신고 대상자 등은 보완신고서를 생성하여 생성예약일 이전에 조기 제출토록 독려하고, 이후 윤리업무담당자가 개별 생성하여 신고서 생성

5. 고지거부 심사

- 등록의무자는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신청 가능
 - 고지거부 심사에 대한 사항은 p315 “II. 수시신고-3. 고지거부 심사” 항목 참고

6. 신고서 제출확인

-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제출상태와 제출일 확인
 - 신고서 제출확인은 p320 “II. 수시신고-5. 신고서 제출확인” 항목 참고

7.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 시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은 p321 “II. 수시신고-6. 신고서 수정 요청 승인” 항목 참고

8. 재산공개(공개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개목록을 생성하여 공개준비
 - 재산공개는 p322 “II. 수시신고-7. 재산공개(공개대상자)” 항목 참고

IV | 의무자 관리

1. 전입·전출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전입전출]

- 인사변동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입·전출처리
 - 전출 작성 시 전출일, 심사권한을 정확히 입력
 - 전출 작성 및 전입 승인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최종 신고서 생성 및 제출 여부(정기변동, 최초(승진 시))
 - 전입기관은 해당 기관의 등록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 전입·전출로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전입·전출시 심사관할을 정확히 확인 후 요청해야 함
- ※ 전출일과 전출기관이 같은 경우 복수의 등록의무자도 일괄 처리가 가능

주요 상태	세 부 내 용
전출일	신분변동일
전출-작성중	전출을 등록하는 중이며 전입기관에서는 확인 불가능 (전출 요청 미완료)
전출-승인중	전출내용을 작성하고 전입기관의 승인을 대기하는 중
전입-승인중	새로운 전입요청이 있으며 승인을 대기하는 중
전출-승인완료	전입기관에서 해당 전출건을 승인한 상태
전입-승인완료	새로운 전입요청을 승인한 상태 ※ 승인전 반드시 전출일과 심사권한에 주의요
회수	전출기관에서 '전출-승인중'인 전출요청을 취소 ※ '승인완료'는 불가능
반려	전입기관에서 '전입-승인중'인 전입요청을 반려 ※ '승인완료'는 불가능

전입전출 요청정보
✕

저장
전출요청

처리상태	전출-작성중	전출입일자	2019-05-23	
전출기관	인사혁신처	전입기관	행정안전부	선택
처리내역	전출요청자	인사혁신처	종길동	전입처리자
	요청일자	2019-05-23		처리일자
비고	2019.05.23 행정안전부로 전출			비고

삭제
추가
일괄심사완료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신고서		신고서 건수	심사권한구분		심사완료 여부	심사진행	의무자 상세정보
					최초	최종		이전	이후			
<input type="checkbox"/>	종길동	92-07-01		인사혁신처	2019-05-01	2019-05-01	1	수입기관	선택	선택		상세정보

TIP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 ▶ 전출기관에서 “심사중”인 등록의무자는 전출 이후에 진행중인 심사는 종결까지 완료해야 함
- ▶ 고지거부 심사중인 상태인 경우 심사 완료 후 전입·전출 진행
- ▶ 퇴직·의무면제자는 전출입 처리가 불가하며, 퇴직·의무면제자가 타기관에서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윤리업무담당자가 [의무자관리] 메뉴의 추가화면에서 등록의무자를 직접 등록

2. 심사관할권 조정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심사관할권]

○ 현 등록기관내에서 등록의무자가 승진 등으로 심사관할이 변경된 경우 심사관할권 조정요청

※ 등록의무자가 승진 등으로 인해 심사관할이 변경된 경우, 등록의무자의 심사권한을 보내기 위해 심사관할 조정을 타기관에 요청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한 경우(4급 → 3급) 퇴직전 직급을 적용하여 각 위원회 또는 수입기관에서 심사하며 정부공윤위로 위임하지 않음

주요사항	설 명
변동일	신분변동일을 기재
심사관할(변경 후)	변경 후 심사관할을 확인하여 선택
심사완료여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심사완료여부를 선택

심사관할조정 요청정보 ✕

심사관할권조정요청
저장 삭제

처리상태	요청-작성중		
의무자소속기관	행정안전부	변동일	2020-02-11 📅
변경전 심사관할	수입기관	변경후 심사관할	정부공윤위
변경전 처리내역	처리자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홍길순
	처리일자	2020-02-11	
	요청사유	2020.2.11.일자 3급 승진	
변경후 처리내역	처리자	소속	성명
	처리일자	YYYY-MM-DD	
	변경사유		

대상자 선정 내역 추가 삭제 일괄심사완료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신고서		신고서 건수	심사관할		심사완료 여부	심사진행	의무자 상세정보
				최초	최종		변경전	변경후			
홍길동	92-07-01			2019-05-01	2019-05-01	1	수입기관	정부공윤위	예		상세정보

3. 신고유예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신고유예]

- 외국과견근무, 휴직,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등의 사정으로 의무 면제 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유예를 신청

항 목	실 명
유예신청일	신고유예 신청일
발생일	신고유예 시작일
종료일	신고유예 종료예정일
실제 복귀일	최초 복귀예정일이며, 종료일 이전 복귀 시 수정 ※ 실제 복귀일 변경시 종료일이 자동변경 됨
첨부파일	신고유예신청서, 허가대장

- 신고유예자 발생 시 [추가]를 클릭하여 신청내용을 입력
 - 신고유예는 3년을 초과하여 등록불가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 복귀 재산신고 후 다시 신규 신고유예신청
 - 종료일은 복귀예정일 전일이며, 복귀시 실제 업무복귀일로 변경하여 등록
※ 신고유예 등록시 '의무자상태'는 신고유예자로 바뀌며, 신고유예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신고서 생성이 불가능함

신고유예 정보 ✕

저장

*생명	홍길동	선학	92-07-01	*신고유예 신청일	2019-05-23	*최종등록기준일	2019-05-01	(최종 재산등록(변동) 신고기준일)	
*소속	행정안전부	상세소속		*유예신청사유	휴직	*유예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정기변동 <input type="radio"/> 의무면제 신고유예 및 년도 2020 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분 (3)회		
직위		직급	6급	*종료일	2022-05-21	*실제 복귀일	2022-05-22	허가일	2019-05-23
*발생일	2019-05-23		*종료일		2022-05-21		*실제 복귀일		
승인(반려)일	YYYY-MM-DD		승인(반려)자				반려사유		

찾아보기 ...

	번호	파일명	등록일시	삭제
<input type="checkbox"/>	1	Chrysanthemum.jpg		✕

유예신청서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별지 제5호의4서식>
 허가대장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별지 제5호의5서식>

등록의무자	심사대상자관리	천족정보	개명처리	전입전출	심사관할권	신고유예	기간연장	퇴직자사용연장	퇴직자신고서삭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p>인사변동</p> <p>신분변동</p> <p>전입전출</p> <p>심사관할조정</p> <p>신고유예</p> <p>신고면제</p> <p>기간연장</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등록의무자 목록 1000 건/페이지(총 1 건)</p> <p>추가 삭제 액셀 액셀 ALL SMS</p>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10%;">의무자상태</th>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0%;">생년월일</th> <th style="width: 10%;">소속</th> <th style="width: 10%;">상세소속</th> <th style="width: 10%;">직위</th> <th style="width: 10%;">직급</th> <th style="width: 10%;">공개구분</th> <th style="width: 10%;">변동일</th> <th style="width: 10%;">휴대폰</th> <th style="width: 10%;">심사관할</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td> <td>신고유예</td> <td>홍길동</td> <td>92-07-01</td> <td>행정안전부</td> <td></td> <td></td> <td>6급</td> <td>비공개</td> <td>2019-05-01</td> <td></td> <td>수임기관</td> </tr> </tbody> </table>											의무자상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상세소속	직위	직급	공개구분	변동일	휴대폰	심사관할	<input type="checkbox"/>	신고유예	홍길동	92-07-01	행정안전부			6급	비공개	2019-05-01		수임기관
	의무자상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상세소속	직위	직급	공개구분	변동일	휴대폰	심사관할																						
<input type="checkbox"/>	신고유예	홍길동	92-07-01	행정안전부			6급	비공개	2019-05-01		수임기관																						

TIP 신고유예 종료시 신고서 생성

- ▶ 신고유예는 정기변동신고와 의무면제신고만 신청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유예한 신고서를 생성 후 신고하도록 안내 필요
- ▶ 정기변동 유예복귀 신고서 생성 시 변동일은 복귀일자가 아닌, 유예 받은 정기변동 신고의 등록기준일로 생성해야 함
 - ex) 2019.08.01.~2020.06.30.까지 유예 한 경우 신고서 생성 시 변동일을 2020.06.30.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19.12.31.로 지정하여 정기변동 생성
 - ※ 단, 11~12월 복귀자는 전년도 정기변동이 아닌 돌아오는 당해 연도 정기변동 작성 대상임
- ▶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중에 신고유예 신청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영 제5조의3에 의하여,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중 신고유예 발생자는 해당 변동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유예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을 독려하여 제출 받은 후 신고유예자로 관리

4. 신고기간 연장 신청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기간연장]

-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신고기간내 재산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등록기관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해당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 등록의무자는 병가·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 허가 신청하여야 함

구 분	연장기간
공개자	최장 20일까지 허가
병가·해외체류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20일(공개자), 또는 30일(기타)까지 허가
기타	최장 30일까지 허가

- 기간연장 추가 : [추가]버튼으로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내용을 등록

기간연장 정보 ✕

저장

성명	홍길동 <input type="text" value="선택"/> 92-07-01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최종등록기준일	2019-05-21
등록의무기간	2019-05-21 ~ 2019-07-31				
소속	인사혁신처	상세소속		신청일	2019-05-23
직위		직급	6급	연장신청기한	2019-08-30 (등록의무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사유구분	병가	연장사유	병가		
처리일	YYYY-MM-DD	처리자		반려사유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번호	파일명	등록일시	삭제
<input type="checkbox"/>	1	Chrysanthemum.jpg		

- 기간연장조회 : 기간연장 신청된 이력을 관리

등록의무자	심사대상자관리	천족정보	개명처리	전입전출	심사관할권	신고유예	기간연장	퇴직자사용연장	퇴직자신고서삭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① 기간연장 목록 1000 건/페이지(총 1 건) 추가 삭제 역선택 역선택 ALL SMS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input type="checkbox"/></th> <th>신청일</th> <th>성명</th> <th>생년월일</th> <th>소속</th> <th>직위</th> <th>직급</th> <th>심사권한구분</th> <th>등록기준일</th> <th>연장신청기한일자</th> <th>처리일</th> <th>처리자</th> <th>처리상태</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td> <td>2019-05-24</td> <td>홍길동</td> <td>92-07-10</td> <td>인사혁신처</td> <td></td> <td>6급</td> <td>수임기관</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2019-05-24</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2019-08-30</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2019-05-24</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홍길동</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승인완료</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심사권한구분	등록기준일	연장신청기한일자	처리일	처리자	처리상태	<input type="checkbox"/>	2019-05-24	홍길동	92-07-10	인사혁신처		6급	수임기관	2019-05-24	2019-08-30	2019-05-24	홍길동	승인완료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심사권한구분	등록기준일	연장신청기한일자	처리일	처리자	처리상태																							
<input type="checkbox"/>	2019-05-24	홍길동	92-07-10	인사혁신처		6급	수임기관	2019-05-24	2019-08-30	2019-05-24	홍길동	승인완료																							

5. 신고면제

(PETI)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 - [의무자관리]

- 신고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이력을 추가하여 의무자상태를 신고면제로 선택 후 저장

항 목	설 명
변동일	신고면제 확정일
공개여부	재산공개자 여부 선택 ※ 재산공개자를 비공개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자상태	신고면제로 선택하고 사유 선택
신고서생성	체크를 선택하지 않음

신분변동상세 저장

의무자	홍길동 (771111-*****) 한자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변동일	YYYY-MM-DD <input type="text"/>	의무자상태	신고면제 <input type="text"/> 사망 <input type="text"/>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직급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직위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생성 신고서생성 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신고서종류	<input type="text"/>	변동사유	<input type="text"/>
심사권한구분	정부공무원		

TIP 신고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는 경우

- ▶ 신고면제자가 그 면제사유가 해제되어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는 경우 신규 재산신고서를 작성

V

심사 관리

1. 심사자료 관리

가. 조회차수 생성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조회차수관리] - 추가

- 조회차수는 심사자료 조회 및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룹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심사대상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
- [추가]클릭하여 조회차수, 요청일, 회신기한, 문서번호 및 비고란을 기재하여 저장
 - 회신기한은 요청일로부터 16일~20일 이내로 지정
 - 문서번호는 반드시 내부결재 승인받은 문서번호로 작성

항 목	설 명
조회차수	생성된 조회차수(YYYY01~99까지 순서대로 부여)
요청일	조회요청 요청예정일
문서번호	자료조회 실시를 위한 시행문의 문서번호
심사기준	적용 심사처분기준
비고	조회차수 관련 사항으로 조회조건, 심사대상자 선정조건 등 조회차수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 - 예 : 'yy.mm.dd. ~ 'yy.mm.dd. 신고서제출 비공개자
허용면적/금액	대조심사 시 신고 자료와 조회자료의 차이가 범위에내이면 이상 없는 자료로 인정할 오차면적/금액 * <u>심사기준에 따른 허용값을 확인하여 초기값과 다른 경우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u> * 초기값 : 토지(10㎡), 건물(30㎡), 예금·채무(101천원), 증권(0주), 채무(101천원), 재산증감(0천원) * 예를 들어 토지의 허용오차 10㎡로 하면 10㎡미만의 차이는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조회차수 관리

조회차수 목록 조회 추가 저장 삭제

조회차수	요청일	문서번호	회신기간	비고	심사기준	조회구분
2018-01	2018-01-01	내부번호-001-01	2018-05-10	2018/01/01 ~ 2018/05/10일까지_수정	7차(2015.07.24 의결) 심사	
2016-10	2016-07-01	심화교육-02	2016-07-17	심화교육 자료의뢰	6차(2012.12.27 의결) 심사	
2015-03	2015-06-22	11111	2015-07-29		6차(2012.12.27 의결) 심사	

4 count(s)

조회차수(년도+차수) ex) 200801 과 같이 기술하시오.

요청일	<input type="text" value="YYYY-MM-DD"/>	회신기간	<input type="text" value="YYYY-MM-DD"/>	문서번호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 최대 글자수는 1000자 입니다.				
도자허용연적	<input type="text" value="10"/> 회 미만	예금허용금액	<input type="text" value="101"/> 천원 미만	증권허용주수	<input type="text" value="0"/> 주 미만
건물허용연적	<input type="text" value="30"/> 회 미만	채무허용금액	<input type="text" value="101"/> 천원 미만	재산증감허용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 심사처분기준

- 심사차수에 따라 재산심사 처분 결과계산 등 시스템처리 및 기능이 달라짐
 - 심사처분기준 변경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문서와 공문을 [업무관리] - [심사기준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처리기간은 문서접수 후 2~3일 소요)
 - 변경된 심사처분기준은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조회차수관리]의 심사 기준에서 확인
- ※ 승인되기 전에 생성한 조회차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승인 이후 생성한 조회차수부터 변경된 심사처분기준이 적용됨

나. 심사대상자 선정 및 확인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심사대상자선정] - [집중심사대상자선정]

- 제출한 신고서를 대상으로 해당 조회차수에서 심사할 대상자를 선정
 - 집중심사대상자 선정 : 금융 및 부동산 정보에 대해 심사하며,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등록의무자만을 선별하여 선정 가능
 - 부동산대상자 선정 : 부동산 정보만 심사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선정
- ※ 부동산대상자 선정은 특별히 부동산 자료만 조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며,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

항 목	설 명
조회차수	선정한 대상자를 등록할 그룹
상세선정적용	상세선정에서 선택된 항목에 일치하는 대상자 조회
현 조회차수	선택된 조회차수에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표시
전 조회차수	다른 조회차수에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표시 ☞ 해당 신고서가 전 조회차수가 포함된 경우 현 조회차수에 등록 불가
대상등록	현 조회차수에 대상자를 등록
대상제외	현 조회차수에 등록된 대상자를 제외
상세설정관리	상세선정적용에서 사용할 상세조건관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집중심사대상자 목록' (Concentrated Examination Target List) page. On the left,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조회차수' (Search Number) set to 2019-02, '대상제외' (Exclude Target) checked, and '상세선정적용' (Apply Detailed Selection) checked. The main table lists individuals with columns for '현 조회차수', '전 조회차수', '등록의무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등록기준일', '신고구분', '순재산증가액', and '신고소득액'. One individual, '홍길동' (Hong Gil-dong), is selected with a checkmark in the '현 조회차수' column.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TIP 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 통상 재산심사는 집중심사대상자 선정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모두 조회하여 심사를 진행함
- ▶ 심사대상자 선정 시 대상인원수에 따라 조회 및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조회차수를 나누어 차수별로 최대 2천명 내외 단위로 구성
- ▶ 부동산대상자 선정, 집중심사대상자 선정은 같은 차수로 생성되지 않음
- ▶ 사전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 부동산 정보조회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명의인 통보비용 예산을 고려하여 선정

○ 상세설정관리

- 기관 특성상 비공개자 전원을 심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중심사를 위해 특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등록의무자를 별도로 선별하여 심사하고자 할 때 사용
- ※ 여러 조건값들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음

항 목	설 명
이전 차수 조건이관	이전 차수에서 선정된 조건을 불러오기
조건초기화	선정된 조건을 모두 초기화
기본 선정조건	기본선정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대상자를 추출 * 기본선정조건을 A,B,C 조건을 설정 할 경우 A 또는 B 또는 C에 해당하는 대상자 추출(OR개념)
추가 선정조건	기본선정조건에 속하는 대상자 중에서 추가선정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추출(AND개념)
조건 값	선정기준별 기준값

상세설정관리
✕

이전차수조건이관
조건초기화
저장

순번	선택기준	조건값	조건	선택구분
<input type="checkbox"/>	1	소득보다 순재산증가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2	소득보다 순재산감소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3	재산변동없음		
<input type="checkbox"/>	4	직계비속 신규 고지거부자		
<input type="checkbox"/>	5	부동산 신규거래 있는자		
<input type="checkbox"/>	6	등록전축수대비 주택보유자		% 이상
<input type="checkbox"/>	7	주소지(시군구)외 부동산보유자		건 이상
<input type="checkbox"/>	8	자동차 신규취득자		
<input type="checkbox"/>	9	현금 과다보유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0	주식 과다보유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1	신규금융채무 과다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2	사인간채권 변동액 과다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3	사인간채권 보유액 과다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4	사인간채무(기타) 변동액 과다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5	사인간채무(기타) 보유액 과다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6	회원권 과다취득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17	신고기간 미준수		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18	최초신고대상자		
<input type="checkbox"/>	19	사전익회 친족포함		
<input type="checkbox"/>	20	미상사(금융조회 미상사)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1	전년도경고이상처분자		
<input type="checkbox"/>	22	순재산 증가		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23	순재산 감소		천만원 이상

○ 기본선택조건

순번	선택기준	조건값	조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 count(s)			

○ 추가선택조건 [기본선택과 AND 조건으로 검색]

순번	선택기준	조건값	조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 count(s)			

○ 심사대상자 확인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심사대상자선정] - [심사대상자확인]

- 회신기관에 자료조회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조회차수에서 선정된 심사대상자 (친족포함)를 최종 확인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확인 후 등록의무자에게 수정토록 안내 후 재 선정

대상자선정(집중)		대상자선정(부동산)		대상자선정(재산형성)		심사대상자확인						
○ 심사대상자확인 목록												
대상제외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보기 엑셀 친족포함대상자엑셀 SMS												
<input type="checkbox"/>	등록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직급	등록기준일	신고구분	재산증감액	공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홍길동	920710-1234567	인사혁신처	과장	4급	2019-12-31	정기변동	-2,000	년	본인	홍길동	920710-1234
										배우자	이여향	570202-2222
										부	홍공공	330303-3333
										모	홍육경	350404-4444
										장남	홍공익	800505-5555
										장녀	홍공주	860606-6666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다. 심사자료 의뢰요청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심사자료 의뢰]

- ‘심사대상자 선정 및 확인’이 완료된 조회차수에 대해 회신기관에 자료요청
 - ※ 요구서작성 → 금융기관 선정 → 부동산기관 선정 → 요청내역확인 → 관인날인 → 의뢰요청 순으로 진행
- 심사자료 의뢰 진행상태 확인
 - 자료의뢰가 완료(요청완료 및 회신중)된 이후에는 [심사자료 의뢰]메뉴가 아닌 [회신자료 관리]에서 의뢰한 내용에 대한 확인 가능
 - 수임기관이 금융자료 조회를 요청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조회가 가능(법 제8조제12항)

진행상태	실 명
대상자선정	해당 조회차수에 심사대상자가 선정된 상태
요청내역 작성	자료의뢰 요청내역이 작성중인 상태
자료조회승인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료의뢰 승인요청을 한 상태 ※ 단, 수임기관만 해당함
반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조회 반려가 된 상태로 반려사유를 확인하면, 진행상태가 대상자선정으로 변경됨 ※ 단, 수임기관만 해당함
승인완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조회 승인이 된 상태 ※ 단, 수임기관만 해당함

④ 심사자료의뢰 엑셀

요청기관	조회차수	승인요청	승인일	회신기한	진행상태	금융		부동산				요청건수(전쪽포함)	
						잔액	거래	토지	건물	회원권	자동차	금융(사건/심사)	부동산(사건)
인사혁신처	2019-02			2019-06-10	대상자선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6 /0)	6 (6 /0)

○ 요구서 작성

- 문서번호는 자료조회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 시행문의 문서번호를 입력
- 요구일자와 제출기한은 수정불가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 후 진행

항 목	설 명
요구일자	자료의뢰 요구일자
제출기한	의뢰명단에 대해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기한일 확인
책임자	각 부서 책임자명을 기재(과장 등)
연락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 요청정보 또는 회신정보 확인시 필요

자료의뢰상세화면

금융승인요청서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홍길동	금융요청건수 전체(업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건:6 (1 /5)	부동산요청건수 전체(업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건:6 (1 /5)
------	-------	-----	-----	------------------------	----------------------------	-------------------------	----------------------------

요구서 | 금융기관 | 부동산 | 요청내역

저장 | 미리보기

요청기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요구일자	2019-05-24
문서번호	00-공윤위	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0호	제출기한	2019-06-10
요구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자	인사혁신처	4급	홍길동	전화번호 : 044-123-4567 예) 02-345-6987
책임자	인사혁신처	4급	홍길동	FAK번호 : 044-123-6789 예) 02-345-6987
요구기관주소	p0102 우편번호찾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_____ 동 _____ 호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요구내용	명역인의 인적사항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금융조회명단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금융조회 명단의 조회기준일자 참조
	요구의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
	사용목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예금, 보험, 주식, 채권등 모든 예탁금 및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잔액

○ 금융기관 선정

- 자료의뢰 요청할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선정(금융기관 전체 선정)
- 기관별 심사여건을 고려하여 선정가능하며,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선택 후 선정해제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2편
공직윤리시스템의 이용

자료의뢰상세화면 X

금융승인요청서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홍길동	금융요청건수 전체(의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건:6 (1 /5)	부동산요청건수 전체(의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건:6 (1 /5)
------	-------	-----	-----	------------------------	----------------------------	-------------------------	----------------------------

요구서 | 금융기관 | 부동산 | 요청내역

선정상태 전체 선정 미선정
 금융기관구분 전체
 금융기관명

담당자등록상태 전체 등록 미등록
 지역별금융기관
 ※지역별금융기관 조회 옵션은 담당자의 주소로 검색합니다.
 ex) 충북, 대전, 충남, 경북, 경남, 부산, 서울, 인천, 강원

<input type="checkbox"/>	순번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선정상태
<input type="checkbox"/>	1	경남은행					선정
<input type="checkbox"/>	2	광주은행					선정
<input type="checkbox"/>	3	국민은행					선정

○ 부동산기관 선정

- 의뢰기관이 자동선택되어 있으며 [저장] 클릭하여 부동산기관 선정 완료

- 토지 및 회원권 의뢰기관에는 반드시 협조공문 발송

※ 수입기관은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와 국세청(조사기획과)에 별도 협조 공문 시행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수입소속기관은 토지자료 및 회원권 의뢰시 해당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지적과 및 지방국세청으로 의뢰하고, 반드시 별도 협조 공문을 시행해야 함

자료의뢰상세화면 X

금융승인요청서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홍길동	금융요청건수 전체(의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건:6 (1 /5)	부동산요청건수 전체(의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건:6 (1 /5)
------	-------	-----	-----	------------------------	----------------------------	-------------------------	----------------------------

요구서 | 금융기관 | 부동산 | 요청내역

* 의뢰하실 기관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토지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각 시도 지적부서)

<input type="checkbox"/>	조회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대전광역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대구광역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광주광역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울산광역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부산광역시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02-000-0000	

18 count(s)

회원권 자료 (국세청 조사기획과)

<input type="checkbox"/>	조회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청 (조사기획과)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서울지방국세청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중부지방국세청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대전지방국세청		02-000-0000	
<input type="checkbox"/>	광주지방국세청		02-000-0000	

○ 요청내역 확인

- 자료조회 대상자를 최종 확인
- [금융, 부동산사전조회여부]항목을 이용하여 사전자료로 자료가 회신된 대상자 (통보비 제외자) 확인 가능

자료의뢰상세화면

승인요청 금융승인요청서

요청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홍길동	금융요청건수 전체(의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전:6 (1 /5)	부동산요청건수 전체(의무자수/전족수)	심사:0 (0 /0) 사전:6 (1 /5)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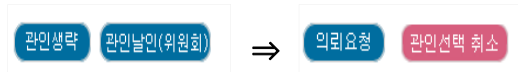
요구서 | 금융기관 | 부동산 | 요청내역

대상자구분 전체 금융 부동산 전족제외 사전조회여부 역발

순번	성명	주민번호	관계	소속기관	조회기준일	금융사전조회여부	부동산사전조회여부	비고
1	홍길동	920710-1234567	본인	인사혁신처	2019-12-31	Y	Y	
2	이여왕	570202-2222342	배우자	인사혁신처	2019-12-31	Y	Y	
3	홍공공	330303-3333453	부	인사혁신처	2019-12-31	Y	Y	
4	홍오오	330303-3333454	부	인사혁신처	2019-12-31	Y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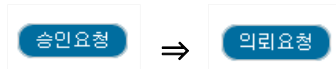
○ 관인날인

- 관인날인 후 의뢰요청하여 자료의뢰를 완료
- 관인등록 및 변경은 [위원회]-[관인관리]에서 추가 및 수정



○ 의뢰요청

- 승인요청 : 수입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후 의뢰요청
- 의뢰요청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뢰요청]으로 자료의뢰



※ 자료의뢰 후에는 이전단계로 되돌아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용 검토 후 의뢰

TIP 사전 vs 심사

- ▶ 사전 : 해당 조회차수에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명단 중 재산신고시 정보제공동의를 하여 정보제공을 받은 인원수(사전조회 자료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자료의뢰되지 않음)
- ▶ 심사 : 해당 조회차수에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명단 중 재산신고시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인원수(실질적 자료의뢰 수)

라. 회신자료 검증 및 확정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 관리] - [내역관리]

○ 회신내역 관리

- 자료의뢰 후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화면에서 기관별로 회신상태 확인 가능
- 자료의뢰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에만, 회신내역 표기 및 진행상태 확인
- 회신기한이 경과되면 [회신마감]을 클릭하고 자료검증 및 이관을 통해 심사자료로 확정
- ※ 회신기관 중 시중은행 및 대형 보험사 등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반드시 자료회신여부 확인(완료) 후 회신마감 처리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 가능
- ※ 재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신기한을 연장하여 처리 가능

회신내역 진행상태	설 명
회신대기	회신기관에서 PC로 내려받기 이전 상태
요청열람	회신기관에서 PC로 내려받기 이후 상태 또는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
회신완료	회신기관에서 회신자료를 등록·완료한 상태
회신마감	각 기관 업무담당자가 회신마감처리를 한 상태 → 회신기관에서는 자료등록 불가능

내역관리		검증/이관	자료조회										
<input type="button" value="회신마감"/> <input type="button" value="회신기한연장"/> <input type="button" value="회신기한연정미역"/>													
<input checked="" type="radio"/> 조회처수													
□	조회처수	요청일자	회신 마감일자	회신상태	문서번호	요청 기관수	접수 기관수	금융		부동산			
								잔액	거래 내역	토지 (지적과)	건물 (연계)	회원권 (국세청)	자동차 (연계)
□	2019-02	2019-05-28	2019-06-15	요청완료	00-공윤위	216	1	☑	-	☑	☑	☑	☑

회신상세내역			
요청일자	2019-05-28	회신기한일자	2019-06-15
요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잔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지-지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물-연계시스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원권-국세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동차연계시스템		
금융요청건수 (사건/심사)	등록의무자:1 (1 /0) 천족포함:6 (6 /0)	부동산요청건수 (사건/심사)	등록의무자:1 (1 /0) 천족포함:6 (6 /0)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요청자	홍길동
비고	2019.12.31 정기변동 대상자	회신상태	요청완료

구분	기관구분	회신기관	회신일	회신신고자수 (사건/심사)	회신건수 (사건/심사)	회신상태	미회신자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금융	은행	국민은행(금융(잔액))	20190528	2/0	4/0	회신대기	미회신자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	은행	신한은행(금융(잔액))	20190528	1/0	2/0	회신대기	미회신자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	은행	우리은행(국내)(금융(잔액))	20190528	1/0	1/0	회신대기	미회신자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	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금융(잔액))	20190528	1/0	1/0	회신대기	미회신자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	증권 - 선물	NH투자증권(증권(잔액))	20190528	1/0	1/0	회신대기	미회신자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	증권 - 선물	삼성증권(증권(잔액))	20190528	1/0	1/0	회신대기	미회신자확인	

○ 회신자료 검증 및 이관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 관리] - [검증/이관]

- 회신된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검증하여 오류발생 내역을 제외하여 심사 데이터로 확정하거나, 오류로 확인된 회신기관에 재회신을 요청
 - ※ 오류발생내역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지 않으면 심사자료로 이관되지 않음
- 처리 중 [다시 가져오기]를 통하여 작업을 모두 초기화 할 수 있음
- 심사데이터로 확정된 검증자료는 [이관] 버튼으로 자료 이관
 - ※ 정상적으로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버튼만 활성화됨

《검증 오류내용》

구분	내 용	설 명
공통	날짜형식오류	날짜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금융	숫자형식오류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간 경우
	계좌오류	계좌정보에 값이 없는 경우
	동일계좌	소유자, 계좌,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계좌	소유자가 다르고 계좌가 일치하는 경우
	채권구분	채권구분에 값이 없는 경우

내역관리												검증/이관		자료조회	
<p>① 회신검증/이관</p> <p>다시가져오기 검증 이관</p> <p>※ 소회된 목록에서 항목선택지 삭제수정가능합니다. 선택(v)된 대상은 이관에서 제외됩니다.</p> <p>토지 건물 예금 증권 회원권 자동차</p>															
제외	번호	조회기준일	자료조회일	신고자 성명	소유자주민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자동차명	배기량	년식	차종	번호	예러내용		
<input type="checkbox"/>	1	2019-12-31	2019-12-31	홍길동	920710-1234567	홍길동	51보1084	그랜저	2656	2006	승용	예러내용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2	2019-12-31	2019-12-31	홍길동	570202-2222342	이여왕	23나3112	아반떼	1600	2010	승용				

마. 회신자료 조회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 관리] - [자료조회]

- 이관된 자료 확인
 - 심사자료로 확정된 회신자료에 대해 확인하며 사전자료와 심사자료를 구분하여 조회 가능
 - 각 탭별로(토지, 건물, 예금, 증권-상장주식, 회원권, 채무-금융기관채무, 자동차) 이관된 회신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회신자료 관리															
<p>① 조회차수</p> <p>조회차수 요청일자 비교</p> <p>2020-02 2020-01-09 '19.8.2...</p> <p>2020-01 2019-10-24 '19.4.2...</p>															
<p>② 조회조건</p> <p>조회차수 202001</p> <p>자료구분 전체 심사 사전 수시</p> <p>신고자명 </p> <p>소유자명 </p> <p>초기화 조회</p>															
구분	조회기준일	신고자	신고자 생년...	관계	소유자	소유자 생년...	소재지	산	번지	호	지목	면적	공... 수	변동일자	변동사유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이공직	60-01-01	본인	이공직	60-01-01			0	대	40,557	0	2019-02-18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이공직	60-01-01	본인	이공직	60-01-01			0	전	4,076	5	1990-03-15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이공직	60-01-01	본인	이공직	60-01-01	산		0	일야	13,190	4	1999-04-06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이공직	60-01-01	본인	이공직	60-01-01			0	대	61,649	0	2008-06-10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김윤리	60-01-01	본인	김윤리	60-01-01			0	전	4,076	5	1990-03-15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김윤리	60-01-01	본인	김윤리	60-01-01			4	답	370	0	2009-10-07	주소변경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6-01	김윤리	60-01-01	본인	김윤리	60-01-01			5	답	1,167	0	2009-10-07	주소변경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5-27	김윤리	60-01-01	본인	김윤리	60-01-01			5	답	2,444	0	1997-08-18	축적통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2019-05-03	김윤리	60-01-01	본인	김윤리	60-01-01			53	대	99.2	0	2017-12-13	주소변경

바. 통보비 확인 및 처리

(PETI) [재산심사] - [심사자료관리] - [청구내역 관리]

- 청구내역 확인
 - 자료회신 후 금융기관에서 명의인 통보가 발생하는 인원 및 통보단가 입력하여 청구요청한 내용(청구공문(직인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확인
 - 입금완료 시 지급일, 지급코드(이체명)를 등록하여 자료관리

④ 청구내역

<input type="checkbox"/>	조회차수	진행상태	요청기관명	회신기관명	전화번호	지급요청일	지급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일	지급코드 (이체명)	지급여부
<input type="checkbox"/>	2019-02	접수	인사혁신처	부산은행			홍길동	1522-4273	2019-05-28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2019-02	미접수	인사혁신처	우체국			홍길동	1522-4273			미지급

TIP 통보비 지급시 유의사항

- ▶ 통보비용 입금 시 입금자명을 기관명(인사혁신처, 전라남도 등)으로 기재
- ▶ 통보비용 지급은 분기별 1회 이상 처리(지급 지연 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 예산마감일을 고려하여 마지막 자료조회 의뢰일정을 조정하고, 예산마감 후 청구된 비용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2. 재산심사

가. 심사담당자 지정

(PETI) [재산심사] - [재산심사] - [심사담당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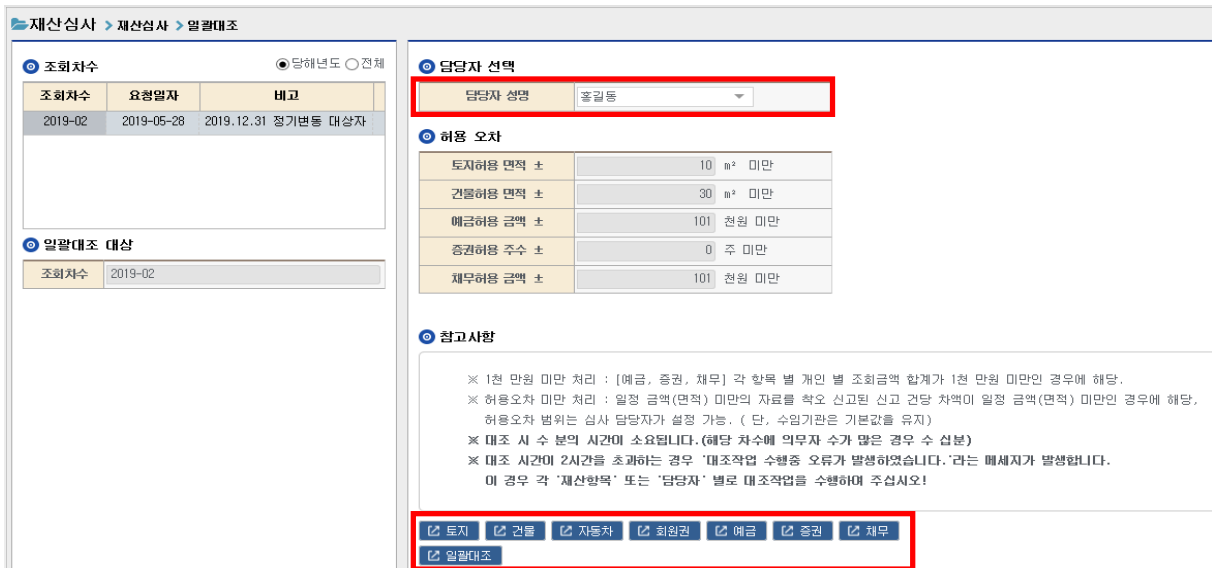
- 해당 조회차수의 심사대상자에 대해 심사할 담당자를 지정
 - ※ **심사담당자가 지정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정**
 - 심사담당자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 할 경우 결과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담당자지정]클릭하여 지정해야 함

등록기준일	성명	생년월일	직급	계급	현소속	현상세소속	이전소속
<input type="checkbox"/>	2019-12-31	홍길동	92-07-10	4급	4급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나. 자료대조(일괄대조)

(PETI) [재산심사] - [재산심사] - [일괄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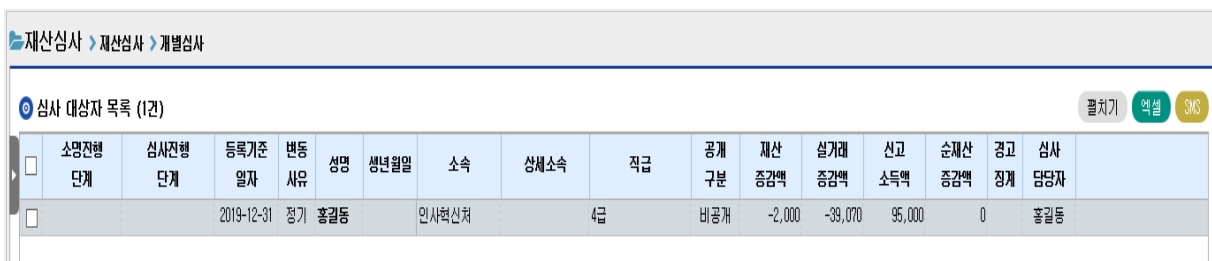
- 심사대상자가 신고한 재산등록사항과 회신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여 누락 및 허위자료 식별
- 조회차수와 담당자를 선택한 후 하단 일괄대조 또는 개별버튼을 이용하여 실행
 - 재산항목별로 대조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예금과 증권, 자동차 등 서로 상호 비교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버튼순(좌측 → 우측)으로 작업
 - ※ 심사대상자가 많은 경우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괄대조 버튼이 아닌 재산항목별 개별버튼으로 진행



다. 개별 심사

(PETI) [재산심사] - [재산심사] - [개별심사]

- 심사대상자를 선택하여 개별대조심사 상세화면에서 재산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심사를 진행



○ 공통사항

항 목	설 명
재산등록의무자 상세정보	등록의무자의 현 시점의 정보를 표시 → 신분변동사항 등 확인 시 사용
과거심사자료확인	과거 심사자료 및 특이사항 확인
신고서조회	심사대상 신고서 재산항목별 조회
열람기록	신고시 의무자의 부동산 및 금융정보 열람기록 조회
신고내용 확인내역	신고시 의무자가 확인한 신고내용 확인내역 조회
신고자료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자료
조회자료	회신기관에서 회신된 심사자료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신고자료와 회신기관에서 제공받은 조회자료의 대조결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표시 → 심사담당자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
대조심사	해당 탭의 심사내용이 초기화 됨 → 삭제한 ‘누락 및 허위신고자료’의 자료가 다시 원복됨
연계/연계해제	신고자료와 조회자료를 각각 선택하여 일치 및 일치취소
소명대상등록/ 소명대상제외	현재 심사대상자를 소명대상자로 등록 및 제외시 사용

개별대조심사상세

기본사항

성명/구분: 홍길동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 920710-1234567
신고서종류: 변동등록 (정기변동)
직위: 과장 (4급)
소속: 인사혁신처
이메일: song@korea.kr
등록기준일자: 2019-12-31

친족사항

재산변동흐름 - 본인

개별대조심사

항목	종류	주인등록번호	제출횟수	공개구분	비공개
성명	한글	홍길동	920710-1234567	공개구분	비공개
한자	한자	홍길동	2	직위/직급	과장 (4급)
현근무지	소속	인사혁신처	상세소속	인사혁신처	기타소속(직접입력)

심사요소

심사기준

- > 잘못된 신고 금액
- * 예금은 순누락
- > 비조회성 재산
- > 친족누락

선정 사유

> 선정사유가 없습니다.

○ 기본사항

- 신고서 제출당시의 신상명세서 표시

○ 친족

- 심사대상자의 친족정보를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록여부 확인

※ 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확인

- 본인정보, 친족정보에 등록된 주소지가 [건물]이나 [집중심사]에 소유권, 전세권 등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 등록한 친족정보와 확인된 친족정보가 상이할 경우, 누락친족 등록 후 친족에 대한 소명요청, 누락친족재산조회로 재산유무 등 관련 사항 확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등록 제외	변동사유	관리상태	직업
본인	홍길동	920710-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2길 25, 202동 1...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가	
배우자	이여왕	570202-22223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2길 25, 202동 1...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소일괄변경	자가	주부
부	홍공공	330303-33334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202동 1...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가	농업
모	홍옥경	350404-444456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202동 1...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가	주부
장남	홍공익	800505-55556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가동 501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가	(주)공익건설
장녀	홍공주	860606-6666786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효자동, 기숙사A...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가	대학생

○ 토지~금융채무(조회 가능한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회원권, 금융채무 항목들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자료(신고자료)와 회신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조회자료)의 대조결과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로 확인되는 대조내역을 통해 심사담당자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추가 심사자료 및 신고서 등을 통해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에 있는 자료가 성실신고로 인정된 경우 또는 신고자료나 회신자료의 상세지번 오류로 누락·과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삭제를 클릭
- ※ 추후 다른 심사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모탭에 확인내용 등을 기재
-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에 남아있는 자료는 필요시 등록의무자에게 소명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잘못 신고한 자료는 심사보고서의 잘못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됨

《 대조내역 용어설명 》

대조내역	설 명	비고	
		신고 자료	조회 자료
누락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다	신고자료가 조회자료에 없거나 신고자료의 신고금액(면적·수량)이 조회자료의 조회금액(면적·수량)보다 큰 경우	○	○
과소	신고자료의 신고금액(면적·수량)이 조회자료의 조회금액(면적·수량)보다 작은 경우	○	○
임차권미신고	친족정보입력에 입력한 거주지를 총괄표의 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관리형태소명	건물을 2건 이상 신고했으나, 등록의무자와 등록친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지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해 채무(건물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조회	예금, 증권, 채무(금융)의 경우 자료의뢰 시 요청되지 않은 기관은 미조회기관으로 나타남	○	

○ 토지

- 연계된 자료는 누락 및 허위자료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먼저 각각 선택한 후 연계해제를 클릭하여 해제 후 등록, 등록방법은 체크 후 ▼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 신규 취득 토지는 등기정보 열람을 통해 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담보 등 설정된 사인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



○ 건물

- 건물의 조회자료는 지방세 과세자료(매년 6.1. 기준)를 활용함에 따라 실제 소유 관계와 6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 대법원 등기부등본 자료는 [대법원자료 보기] 클릭하여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신고자료가 맞을 경우 향후 심사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메모] 란에 관련 사항을 기재
- 시스템으로 자료 비교 시 권리명세의 사소한 차이(띄어쓰기 등)도 누락·과다로 인식하므로 세부사항 확인 필요
- 대조내역이 ‘임차권미신고’인 경우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지 건물을 [건물]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전세권 누락 여부)
 - ☞ 또는 [집중심사]탭의 비조회성재산 항목에서 전세권 신고여부 확인
- 대조내역이 ‘관리형태소명’인 경우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지 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한 건물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건물임대채무 누락 여부)
 - ☞ 또는 [집중심사]탭의 비조회성재산 항목에서 건물임대채무 신고여부 확인

- 성년자녀와 본인의 주소지가 같으면 주민등록정보를 통해 사실 확인
- 거주하지 않는 주택, 기타 건물은 전세(임대)채무 신고여부 확인
- 건물을 공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시점의 관리비납부영수증 확인
- 예금, 채무 변동 신고 시 비고란에 자녀 전세권 및 주거 매입 등을 기재한 경우[건물], [토지]항목의 신고 여부 확인

개별 대조심사

기변사항 | 신분변동 | 신고유예 등 | 권속 |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 증권 | 회원권 | 금융채무 | 소명요구서 | 실무자검토 | 심사보고서

집중심사 | 변동요약서 | 메모

신고자료 (2건) 조회자료 (0건)

권리자	관계	소제지	건물
관리종류	상세주소	상세주소	대지
<input type="checkbox"/> 종길동	본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유권	258번지 논현두산위브아파트(2단지) 20...	
<input type="checkbox"/> 이여왕	배우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유권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동 101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 (3건)

대조내역	관리자	관계	관리종류	소제지	매모	가액	건물면적
<input type="checkbox"/> 과다	이여왕	배우자	소유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동 101호		143,000	84㎡
<input type="checkbox"/> 관리형대소영	이여왕	배우자	소유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동 101호		0	84㎡
<input type="checkbox"/> 임차권미신고	홍공공	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90-1번지 부영2차아파트 202동 110호		0	0㎡

○ 예금

- 예금변동이 클 경우 비고란의 사용처 및 자금출처를 반드시 확인
- 보험의 계약자(주로 등록의무자나 배우자)와 피보험자(주로 자녀)를 혼돈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교차 확인 후 소명요구
 - ※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이었다가 미만이 된 경우 해당년도에는 신고대상
-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완전소멸성보험(자동차보험 등)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대상이며,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총불입액의 신고 여부 확인
-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 및 펀드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 [증권]항목의 누락 여부 확인 → 조회자료가 증권탭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차 심사 수행
- 투자회사의 신탁예금은 신고기준일 현재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금융채무항목에 신고했는지 확인
-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토지, 건물항목에 신고한 물건에 대한 계약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교차하여 확인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제150회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 '07.9.6)

개별대조심사

기본사항 신분변동 신고유예 등 친족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회원권 금융채무 집중심사 변동요약서 메모 소명요구서 실무자검토 심사보고서

신고자료 (7건) ● 연계자료 ● 누락허위신고 자료 대조심사 조회자료 (4건) 누락/허위신고자료 보기 연계 연계해제 소명대상등록

권리자	관계	계좌번호	예금종류	신고금액	계좌번호	소유자	관계	계좌번호	조회금액
이여왕	배우자	국민은행	자유적금	2,500	412345-01-4444444	이여왕	배우자	국민은행	2,500
이여왕	배우자	국민은행	자유적금	0	412345-01-4444444-1	이여왕	배우자	국민은행	0
이여왕	배우자	국민은행	형약저축	3,500	431564-02-6134812	이여왕	배우자	국민은행	3,500
홍길동	본인	국민은행	연금보험	0	457615-01-333333-2	홍길동	본인	국민은행	0
홍길동	본인	국민은행	올커버암치료	6,480		홍길동	본인	국민은행	6,480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 (2건) ● 삭제 ● 전체삭제 ● 출력 ● 액셀 ● 화면확장

대조내역	권리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비고	신고금액	조회금액	차감액	개설일자	만기일자
과다	홍길동	본인	국민은행	45761501333333		6,000	5,000	1,000	2009-02-18	
누락	이여왕	배우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4943512		0	24,000	24,000	2007-10-03	

○ 증권

-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종가) 누락·과다, 비상장주식은 최종진단가액유형에 따라 가액 확인
 - 주식의 누락의 경우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대상인지 확인
 - 증권은 대조 시 예탁기관, 계좌번호, 종목코드, 수량을 비교하므로 동일한 주식이 누락·과다로 표기된 경우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에서 삭제처리
 - 주식수량의 증감이 없어도 등록기준일 종가기준으로 가액은 신고해야 함
- ※ 평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의 금액을 산정·확인

개별대조심사

기본사항 신분변동 신고유예 등 친족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회원권 금융채무 집중심사 변동요약서 메모 소명요구서 실무자검토 심사보고서

신고자료 (5건) ● 연계자료 ● 누락허위신고 자료 대조심사 조회자료 (3건) 누락/허위신고자료 보기 연계 연계해제 소명대상등록

권리자	관계	계좌번호	증권종류	신고수량	계좌번호	소유자	관계	계좌번호	주식명	조회
홍길동	본인	512456332145	상장주식	5	512456332145	홍길동	본인	512456332145	KT	0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030200	KT	15.0	030200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030200	KT	0
홍길동	본인	512456332145	상장주식	5	512456332145	홍길동	본인	512456332145	인터파크	0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035080	인터파크	2.0	035080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035080	인터파크	0
이여왕	배우자	13-04684-1354	상장주식	5	13-04684-1354	이여왕	배우자	13-04684-1354	삼텍	0
홍길동	배우자증권	036710	삼텍	5	036710	홍길동	배우자증권	036710	삼텍	0
홍길동	본인	512456332145	상장주식	5	512456332145	홍길동	본인	512456332145	인터파크	0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108790	인터파크	2.0	108790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108790	인터파크	0
이여왕	배우자	13-04684-1354	상장주식	5	13-04684-1354	이여왕	배우자	13-04684-1354	삼텍	0

누락 및 허위신고 자료 (1건) ● 삭제 ● 전체삭제 ● 출력 ● 액셀 ● 화면확장

대조내역	권리자	관계	예탁기관	증권종류	계좌번호	비고	종목코드	발행인	신고수량
과소	이여왕	배우자	삼성증권	상장주식	3-1212-1245123		005930	삼성증권	5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은 기재내용 및 가액 확인
- 회원권 가액은 취득가를 원칙으로 하나, 골프회원권은 국세청 기준시가임
- 콘도미니엄 누락 시 신고기준금액(건당 500만원)에 해당되는지 확인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 및 분양이 가능하므로 [건물]에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원권에 신고토록 안내

대조내역	권리자	관계	발행인	회원번호	가액
과다	이여왕	배우자	레이크힐스제주골프클럽	M-09-1234	

○ 금융채무

- 자동차 할부구입의 경우 금융채무가 발생하나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자 명의로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누락이 발생하므로 확인
- 보유재산에 비해 과다하게 대출이 증가된 경우(담보물에 비해 대출금이 많은 경우) 직위를 이용한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

대조내역	권리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신고
과다	홍길동	본인	신한은행	4512456851231	

○ 집중심사

- 회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항목(현금, 사인간채권·채무, 전세권, 분양권, 건물임대채무 등) 중 신고한 내역에 대해 등록의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요구서 추가’에 체크하여 저장 가능
 - ☞ 소명요구서 생성시 해당 내용으로 소명요청 가능
- 사인간 채권·채무 과다보유자는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거래상대방 확인 등을 통해 심사
- 현금 과다 보유, 사인간 채권·채무를 장기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확인
- 부동산의 임대채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건물임대채무 등록여부 확인

구 분	설 명
선정사유	집중심사대상자선정을 통해 선정된 조건표시
비상장 주식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비상장주식 내역 표시 (비상장상세 클릭하여 세부내용 확인)
비조회성재산	분양권,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권·채무, 금 및 백금, 골동품 등 비조회성 신고 자료
총계미합산재산	총괄표에서 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재산항목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출연재산의 신고내용)

집중심사 X

선정사유 (1건) 저장 소명대상등록 역셀

연번	대상자 선정사유		메모	소명요구서 추가
1	신규금융채무과다			

비상장주식 (3건) 비상장상세

연번	관계	소유자명	권리명세	메...	증권가액	현가액	소명요구서 추가
1	배우자	배우자	미래에셋대우(주), 콘텐츠케이투 (현보유량: 1,000주)	☰	1,000	1,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배우자	배우자	미래에셋대우(주), 우아한가죽물 (현보유량: 1,000주), 특이사항(특기사항)	☰	1,000	1,000	<input type="checkbox"/>
3	장녀	장녀	미래에셋대우(주), 콘텐츠케이투 (현보유량: 2,000주), 특이사항(특기사항)	☰	2,000	2,000	<input type="checkbox"/>

비조회성재산 (2건)

연번	관계	소유자명	재산종류	권리명세	메모	증권가액	현가액	소명요구서 추가
1	본인	홍길동	채무	[건물임대채무] 김공직 임대(전세)보증금(서울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2단지)	☰	400,000	400,000	<input type="checkbox"/>
2	배우자	배우자	채권	[사인간채권] 이윤리(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204동, 전화번호: 010-1234-5678)	☰	0	8,000	<input type="checkbox"/>

총계미합산재산 (0건)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출연재산)

연번	관계	소유자명	재산종류	권리명세	메모	증권가액	현가액	소명요구서 추가
----	----	------	------	------	----	------	-----	----------

○ 비상장주식의 심사

[홍길동] 비상장상세																																																							
법인 별 비상장주식 목록 (법인 별 2건 / 소유자 별 3건 (전량매도 1건))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최종결정 가액유형	최종결정가액 (1주당/원)	증권가액 (천원)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천원)	첨부파일																																														
						증가액	감소액																																																
-	우아한가죽들	222222-1234567	액면가	10,000	1,000	0	0	10,000	다운로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관계</th> <th>소유자명</th> <th>수량</th> <th>자가진단</th> <th>진단가액유형</th> <th>진단결정가액(원)</th> <th>가액(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 (변동)</td> <td>배우자</td> <td>배우자</td> <td>1,000</td> <td>진단결과</td> <td>평가액</td> <td>9,000</td> <td>10,000</td> </tr> <tr> <td colspan="8">· 최근매매일 : 2018-11-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근미거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제3자거래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액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량매도</td> </tr> <tr> <td>보유량</td> <td>前보유량(주)</td> <td>現보유량(주)</td> <td>증가량(주)</td> <td>감소량(주)</td> <td colspan="2">특기사항</td> </tr> <tr> <td>보유액</td> <td>前보유액(천원)</td> <td>現보유액(천원)</td> <td>증가액(천원)</td> <td>감소액(천원)</td> <td colspan="2">특기사항 테스트</td> </tr> <tr> <td colspan="2">형성과정</td> <td colspan="7">· 취득일자:2018-02-21경 구입 · 취득경위:K-STOC를 통해 매입 · 소득원:xx은행에 저축해두었던 예금</td> </tr> </tbody> </table>									연번	관계	소유자명	수량	자가진단	진단가액유형	진단결정가액(원)	가액(천원)	1 (변동)	배우자	배우자	1,000	진단결과	평가액	9,000	10,000	· 최근매매일 : 2018-11-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근미거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제3자거래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액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량매도								보유량	前보유량(주)	現보유량(주)	증가량(주)	감소량(주)	특기사항		보유액	前보유액(천원)	現보유액(천원)	증가액(천원)	감소액(천원)	특기사항 테스트		형성과정		· 취득일자:2018-02-21경 구입 · 취득경위:K-STOC를 통해 매입 · 소득원:xx은행에 저축해두었던 예금						
연번	관계	소유자명	수량	자가진단	진단가액유형	진단결정가액(원)	가액(천원)																																																
1 (변동)	배우자	배우자	1,000	진단결과	평가액	9,000	10,000																																																
	· 최근매매일 : 2018-11-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근미거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제3자거래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액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량매도																																																						
	보유량	前보유량(주)	現보유량(주)	증가량(주)	감소량(주)	특기사항																																																	
	보유액	前보유액(천원)	現보유액(천원)	증가액(천원)	감소액(천원)	특기사항 테스트																																																	
형성과정		· 취득일자:2018-02-21경 구입 · 취득경위:K-STOC를 통해 매입 · 소득원:xx은행에 저축해두었던 예금																																																					
+	콘텐츠헤미투	111111-1234567	실거래가	456	3,000	0	0	3,000	다운로드																																														

- 집중심사화면에서 [비상장상세] 클릭하여 비상장주식 상세 목록 확인
- 비상장 상세 목록에서 + 클릭하여 법인별 세부내용 표시
- 최종결정가액유형은 실거래가, 평가액, 액면가로 표시
- 소유자별 보유수량, 자가진단 진단결과, 진단가액유형, 진단가액, 가액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확인
-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다운로드 클릭하여 내려 받을 수 있음
- 실거래가액인 경우 진단결과 클릭하여 신고가액 자가진단(실거래요건 충족여부) 내용 확인

[홍길동 - 배우자(배우자)] 신고가액 자가진단 결과	
최근매매일자(매입,매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기준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 없음
국세신고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제3자거래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이해관계자(본인, 직계존비속)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1주당 액면가	(원)
발행주식총수	(주) ※ 최근매매일자 기준 현재 발행주식 총 수를 입력하세요.
매매수량	(주) ※ 최근매매일자의 매입 또는 매도 수량을 입력하세요. 기존 보유수량은 제외합니다.
1주당 실거래가격	(원) ※ 최근매매일자의 매입 또는 매도한 1주당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세요.
진단결과	
진단가액유형	평가액 1주당진단가액 (원)
<p>④ 실거래가격 인정 요건</p> <p>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물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를 한 경우 마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에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 최종결정가액유형이 평가액인 경우(진단가액유형은 평가액이었지만 액면가와 하한비교 후 액면가로 계산된 경우 포함)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액 계산 결과 상세 확인 가능

[홍길동] 평가액 계산 결과 ✕

◎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우아한가죽들	대표자성명	박대표
법인등록번호	222222-1234567	① 발행주식총수	100,000 (주)
사업 개시일	2010-01-06	1주당 액면가	10,000 (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세요.

법인이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 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경우

◎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② 자산총액	1,750,080,000 (원)		
③ 부채총액	450,000,000 (원)		
④ 순자산가액 (②-③)	850,000,000 (원)		
	최근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전 사업연도
	2018-02-01 ~ 2018-12-01	2017-01-01 ~ 2017-12-31	2016-01-01 ~ 2016-12-31
⑤ 당기순이익	1,100,000,000 (원)	1,930,000,000 (원)	1,234,000,000 (원)
⑥ 발행주식총수	100,000 (주)	100,000 (주)	90,000 (주)
⑦ 1주당 당기순이익 (각 사업년도별 ⑤÷⑥)	⑧ 11,000 (원)	⑨ 19,300 (원)	⑩ 13,711 (원)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⑧×3/6+⑨×2/6+⑩×1/6)	14,670 (원)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10%))	1,467 (원)
⑬ 1주당 순자산가치(④÷①)	9,000 (원)
⑭ 1주당 평가액(⑫×3/5+⑬×2/5)	9,000 (원)

- ※ 소유자가 2명 이상이고, 진단가액유형이 각 실거래가격, 평가액으로 다를 경우 최종 결정가액유형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됨
- ※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보다 액면가가 높을 경우 최종결정가액유형은 액면가로 계산됨
- ※ 법인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 등의 이유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폐업, 휴업 중인 경우에는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으로 계산됨

최종결정가액유형	설 명				
실거래가격	실거래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결정 * 실거래요건 ① 등록기준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거래 ②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등록대상 친족)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③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거래 ④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매매를 한 거래				
평가액	실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액으로 결정되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 * 1주당 평가액 산정방식 $(1주당 \text{당기순이익가치} \times 3/5) + (1주당 \text{순자산가치} \times 2/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주당 당기순이익가치</td> <td>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① ÷ 이자율(10%)^②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②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주당 순자산가치</td> <td>(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td> </tr> </table>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① ÷ 이자율(10%) ^②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②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① ÷ 이자율(10%) ^②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②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액면가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로 결정 기업이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가액 계산을 위한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액면가로 결정(소명자료 첨부)				

TIP 집중심사법에서 조회되는 재산의 종류		
구 분	항목별 탭(조회)	집중심사(비조회)
토지/건물	소유권	전세권 등 소유권을 제외한 항목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를 제외한 항목
현금	-	전체
예금	전체	-
증권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항목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채무	금융채무	금융채무를 제외한 채무
채권	-	전체
금/보석류/골동품	-	전체
지식재산권/출자/출연	-	전체

○ 메모

- 심사대상자의 주요사항을 메모해 두고,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다음 신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알림용 메모를 작성

구분	설명
개인별 특이사항	다음 심사담당자가 참고하도록 현 심사대상자의 주요 사항을 기록·관리
등록의무자 알림용 특이사항	등록의무자가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신고서 작성 시 등록의무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알림내용을 작성 → 저장된 내용은 다음 신고서 작성 시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팝업으로 나타남
메모 목록	심사대상자의 과거신고서 목록을 보여주고, 목록에서 선택 시 과거의 메모내용이 표시

메모
✕

◎ 심사메모 - 2019.06.06 (변동등록)

개인별 특이사항

등록의무자알림용 특이사항

메모 목록

- ☰ 2018.12.31 (변동등)
- ☰ 2017.12.31 (변동등)
- ☰ 2017.08.10 (최초등)
- ☰ 2016.12.31 (변동등)
- 2015.12.31 (변동등)
- 2014.12.31 (변동등)
- 2013.12.31 (변동등)
- ☰ 2012.12.31 (변동등)
- 2011.12.31 (변동등)

○ 변동요약서

변동요약서									
등록 의무자	종교	주민등록 번호	등록 기준일자	신고서 종류	변동등록(정기변동)	직위 (직급)	과장(4급)	소속	인사혁신처
		920710-1234567	2019-12-31						
구분	재산증가				재산감소				
	금액(천원)	변동사유			금액(천원)	변동사유			
01.토지	0				22,100	부천에게 증여함			
02.건물	0				0				
03.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0				22,000	가액 감소			
04.현금	0				0				
05.예금	34,100	저축			20,820	생활비			
06.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0				0				
07.증권	4,750	평가액 증가			4,500	평가액 감소			
08.채권	0				0				
09.채무	10,000	채무상환			1,000	신규 채무			
10.금 및 백금	0				0				
11.보석류	0				0				
12.골동품 및 예술품	0				0				
13.회원권	500	평가액 증가			0				
14.지식재산권	0				0				
15.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0				0				
16.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0				0				
합계	총재산 증가				49,350	총재산 감소	70,420		
	-가액변동 증가				2,000	-가액변동 감소	4,000		
	= ① 순재산 증가				47,350	= ② 순재산 감소	66,420		
(순재산) ③ 변동금액(①-②)		④ 재산증가·감소 사유							
-19,070(천원)		증여, 저축등으로 전체적인 변동							
⑤ 본인소득	45,000(천원)	⑥ 본인외 소득	50,000(천원)	본인외 소득자수	2(명)	⑦ 총 소득	95,000(천원)		

- 재산신고서가 변동신고(정기변동, 의무면제, 퇴직, 재등록)인 경우만 표시되며, 최초신고(신규, 승진)의 경우 내용이 표시되지 않음
- 현재 심사대상자의 재산변동액이 재산항목별로 재산증가와 재산 감소로 구분되며, 순재산 변동금액이 자동계산됨

순재산 변동금액 : 순재산증가액에서 순재산감소액의 차감
= | (총재산증가액-가액변동증가액) - (총재산감소액-가액변동감소액) |

【주의】 채무 변동액은 순재산과 반비례함
 (채무 증가는 순재산액 감소, 채무 감소는 순재산액 증가)

- 해당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본인 및 본인의 소득이 나타나므로, 신고소득 적정성 및 신고소득 대비 순재산 과다증감 내역 확인 시 참조
- ※ 본인 소득 및 본인외 소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단위 착오인지를 확인, ‘누락 및 허위신고자료’ 소명과 더불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

○ 소명 대상 등록

- 등록의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소명요구 내용 작성 및 소명제출요청

※ 소명제출요청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구 분	설 명
금융거래대상 등록	심사결과 특정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입·출금 내역) 확보를 통해 자금흐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금융거래내역조회 대상자로 선정
누락친족재산 확인	[친족]에 추가하여 조회·회신된 누락친족의 재산을 확인 → 조회자료를 확인하여 재소명여부 결정 ※ 누락친족 재산조회는 [친족]의 누락친족으로 등록해야 함
소명대상등록	심사대상자를 소명요구대상으로 등록
소명대상제외	소명대상으로 등록한 심사대상자를 제외 ※ 제외 시 소명요구서가 삭제되므로 주의
소명요구서생성	개별항목의 '누락 및 허위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소명요구서 생성
소명요구서 삭제	생성된 소명요구서 삭제
항목추가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소명을 받을 경우 사용
오프라인 소명서 등록	오프라인으로 제출받은 소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려는 경우 사용

< 소명진행 단계 >

단 계	설 명
소명요청작성	심사대상자에 대한 소명요청을 작성하는 단계
소명요청	심사대상자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낸 상태
소명서소명중	심사대상자가 소명서를 작성중인 상태
소명서제출	심사대상자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

소명요구서작성

소명대상제외 | 소명요구서작성 | 소명요구서삭제 | 소명진계 | 소명요구서출력 | 소명서출력 | 금융거래대상등록 | 누락전속재산확인 | 저장 | 항목추가 | 항목삭제 | 액셀 | SMS

연번	관계	소유자	재산 종류	신고 금액	조회 금액	차액	구분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대상		소명 제외
								대상	내용	
1	본인	홍길동	토지	0	0	0	누락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이오리 10번지 [신고면적: 0㎡, 조회면적: 5,000㎡]	▶ 해당지번 토지가 누락으로 조회되었으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거래)부동산매매계약서 등	<input type="checkbox"/>
2	본인	홍길동	건물	600,000	0	600,000	과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8 번지논현 두산위브아파트(2단지) 202동 101호[신고면적: 84㎡, 조회면적: 0㎡]	▶ 해당지번 건물이 과다신고로 조회되었으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실상소유)재산세납입증명 등	<input type="checkbox"/>
3	본인	홍길동	예금	6,000	5,000	1,000	과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 45761501333333	▶ 등록기준일(19.12.31) 현재 예금 보유여부 및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13 count(s)

소명정보 | 소명제출요청취소 | 소명제출요청 | 수정불허 | 수정승인 | 소명종결 | 재소명요청 | 재소명생성

소명요구일자	YYYY-MM-DD	소명기한일자	YYYY-MM-DD	소명수정기한일자	YYYY-MM-DD
오프라인 소명서등록	<input type="checkbox"/> ※ 오프라인으로 소명서를 등록할 경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진행상태	소명요청작성
소명일자	YYYY-MM-DD	소명수정요청일자	YYYY-MM-DD	소명차수	1
비고	※ 최대 글자수는 650자입니다.				

첨부정보 | 파일선택

번호	파일명	등록일	삭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대 9개의 첨부파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요구 및 소명서 제출

- 심사대상자가 소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화면이 변경되며, 작성중인 소명 내용이 화면에 표시됨
- 소명서제출 후 소명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소명 요청 가능
- 소명기한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소명수정기한일’을 입력하고 수정승인

소명요구서작성

소명대상제외 | 소명요구서작성 | 소명요구서삭제 | 소명진계 | 소명요구서출력 | 소명서출력 | 금융거래대상등록 | 누락전속재산확인 | 저장 | 항목추가 | 항목삭제 | 액셀 | SMS

연번	관계	소유자	재산 종류	신고 금액	조회 금액	차액	구분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대상		소명명 제출자료 내용	소명 제외
								대상	내용		
1	본인	홍길동	토지	0	0	0	누락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이오리 10번지 [신고면적: 0㎡, 조회면적: 5,000㎡]	▶ 해당지번 토지가 누락으로 조회되었으니 보유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거래)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해당 토지는 부친에게 증여 완료한 토지로, 본인 소유권이 상실됨	<input type="checkbox"/>

13 count(s)

소명정보 | 수정불허 | 수정승인 | 소명종결 | 재소명요청 | 재소명생성

소명요구일자	2019-05-29	소명기한일자	2019-06-18	소명수정기한일자	YYYY-MM-DD
오프라인 소명서등록	<input type="checkbox"/> ※ 오프라인으로 소명서를 등록할 경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진행상태	소명서제출
소명일자	2019-05-29	소명수정요청일자	YYYY-MM-DD	소명차수	1
비고	※ 최대 글자수는 650자입니다.				

첨부정보 | 파일선택

번호	파일명	등록일	삭제
1	Hydrangeas.jpg	2019-05-29	

※ 최대 9개의 첨부파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누락친족 재산확인

- 회신기관에서 누락친족의 심사자료가 회신되면, 담당자는 소명요구서에서 누락친족재산확인으로 누락친족의 조회자료 확인이 가능함
- 누락친족의 조회자료(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를 확인하여 등록의무자에게 해당건에 대한 재소명요청 여부를 결정
- 소명요구서에 재소명 내용으로 추가가 필요하다면, 해당 권리명세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반영]을 클릭
- 반영된 모든 내용을 원 상태로 변경 하려면, [초기화]클릭

누락친족재산조회
✕

④ 예금·보험 등 ※ 1천만원이상 확인 필요 초기화 삭제 반영

연번	관계	소유자명	권리명세	예금잔액	대출잔액	
<input type="checkbox"/>	1	조모	홍조모	공직은행 계좌번호 10101112131, 보통예금	15,050	0
<input type="checkbox"/>	2	조모	홍조모	공직은행 계좌번호 10102222222, 일반예금	5,897	0
<input type="checkbox"/>	3	조모	홍조모	윤리은행 계좌번호 11223344-55667788, 적금	1,001	0
<input type="checkbox"/>	4	조모	홍조모	공직생명보험 계좌번호 1234567890, 연금보험	28,971	0

④ 증권 ※ 1천만원이상 확인 필요 초기화 삭제 반영

연번	관계	소유자명	권리명세	평가금액	예수금	대출잔액	
<input type="checkbox"/>	1	조모	홍조모	공직증권 계좌번호 12101210-11, 공직펀드	1,500	0	0
<input type="checkbox"/>	2	조모	홍조모	윤리투자증권 계좌번호 0011331210, 공직전자	38,100	0	0
<input type="checkbox"/>	3	조모	홍조모	윤리투자증권 계좌번호 111222333444, 공직파크	0	200	0
<input type="checkbox"/>	4	조모	홍조모	윤리투자증권 계좌번호 0010031100, 재산은행	3,000	0	0

④ 부동산 (토지, 건물, 회원권) 초기화 삭제 반영

연번	구분	관계	소유자명	권리명세	금액	
<input type="checkbox"/>	1	토지	조모	홍조모	경기도 남양주시	0
<input type="checkbox"/>	2	토지	조모	홍조모	경기도 남양주시	0
<input type="checkbox"/>	3	토지	조모	홍조모	경기도 화성시	0
<input type="checkbox"/>	4	토지	조모	홍조모	경기도 화성시	0

라. 심사보고서 작성

○ 실무자 검토

- 소명내용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소명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내용과 제외할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
- 제출된 소명서를 검토한 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재산 종류별로 ‘경미한사항’, ‘비조회성재산’, ‘심사보고서 제외’로 체크하여 심사 시 반영 할 수 있음

- “경미한사항” 체크(☑)시 잘못 신고한 금액에 합산되지 않지만 신고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경미한 사항 외에 다른 잘못 신고한 항목이 없더라도 최소 “보완명령” 처분을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신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비조회성재산” 은 사인간채권·채무, 현금, 골동품 등 조회가 되지않는 재산항목으로 체크(☑)시 잘못 신고한 금액에 합산되며, 비조회성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결과가 표시
- “심사보고서 제외” 체크(☑)시 해당항목은 의무자가 타당하게 소명한 항목으로 잘못 신고한 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심사보고서의 상세심사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음

실무자검토														
등록 의무자	종류	주민등록 번호	등록 기준일자	신고서 종류	직위 (직급)	소속								
홍길동	홍길동	920710-1234567	2019-12-31	변동등록(정기변동)	과장(4급)	인사혁신처								
(총 13건) 홍길동님은 소명등록대상자입니다.							차수 1	소명이력조회	항목추가	항목삭제	저장	엑셀		
연번	관계	소유자	재산 종류	신고 금액	조회 금액	실보유 금액	차액		구분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	소명내용 및 제출자료 검토	경미한 사항	비조회성 재산	보고서 제외
							당초	정정						
1	본인	홍길동	토지	0	0	0	0	0	누락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이오리 10번지 [신고면적: 0㎡, 조회면적: 5,000㎡]	해당 토지는 부친에게 증여 완료한 토지로, 본인 소유권이 상실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	홍길동	건물	600,000	0	0	600,000	600,000	과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8 번지 논현두산위브아파트(2단지) 202동 101호[신고면적: 84㎡, 조회면적: 0㎡]	해당 건물에 대해 소유하고있고, 임대채무도 하고있음. 관련 증빙자료 첨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본인	홍길동	예금	6,000	5,000	5,000	1,000	1,000	과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 4576150133333	금융정보 오회신으로 직접 금액 확인 해서 수정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본인	홍길동	채무	50,000	40,000	40,000	10,000	10,000	과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 1124512345612	잘못신고한 것이 맞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본인	홍길동	자동차	0	20	20	20	20	누락	2006년식 그랜저 배기량(2,656cc), 51보1084	19.04.01 신규 매입한 자동차 해당 등록기준일 시점 소유 맞음 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무상 비밀 이용 <input type="checkbox"/> 타법 위반 재산형성과정 심사 ※ 최대 글자수는 2,000자입니다.														

구 분		설 명
신고금액		심사대상자가 신고한 재산신고 금액 ☞ 수정불가
조회금액		회신기관에서 조회된 금액 ☞ 수정불가
실보유금액		소명내용 확인 후 심사대상자가 보유한 실제금액 입력 (실보유금액에 따라 정정금액 반영) ☞ 누락재산이 토지, 건물인 경우 보유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면적㎡×단가) 확인 후 입력 ☞ 자동차는 취득가액으로 조회되므로, 기준일이 취득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평가액 등 시세 확인 후 입력 ☞ 잘못 신고한 금액 계산을 위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차액	당초	심사대상자가 신고한 신고금액과 회신기관 조회금액의 차이 ☞ 조회금액 - 신고금액(자동계산)
	정정	심사대상자가 신고한 신고금액과 실보유금액의 차이 ☞ 실보유금액 - 신고금액(자동계산)

- 실무자검토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생성
 - [실무자검토]에서 검토한 ‘경미한 사항’, ‘비조회성재산’, ‘심사보고서제외’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반영
 - 심사대상자의 소명내용과 관련하여 심사담당자 본인이 조사·확인한 결과를 ‘소명내용’에 작성
 - 심사담당자는 [심사처분결과계산]과정에서 심사대상자의 ‘최종처분결과’를 ‘실무검토의견’에 반영하면, 심사대상자의 처분결과와 사유 및 근거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총평을 ‘심사의견’으로 등록
- ※ 수임기관의 경우 실무검토의견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이면 ‘위원회 상정’ 버튼이 표시되며 클릭하면 위원회에 상정됨

✕
심사보고서작성

엑셀

심사보고서작성
심사보고서작성제
심사처분결과계산
상세심사내역
심사보고서출력
저장

○ 심사내용
등록의무자(홍길동)

심사내용	심사참고사항	소명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input type="checkbox"/> 잘못 신고한 금액 34,000천원 - 누락·과소 금액 34,000천원 - 과다 금액 0천원 → 보완명령 * 정정할 금액 : (+)34,000천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 경미한 사항 : 2건 (보완명령) - 건물 2건 143,000천원 * 잘못 신고한 건수(1천만원 이상) : 2건 * 비조회성 재산 : 해당없음 * 천족누락 : 해당없음 * 고지거부 : 해당없음 * 과거처분미력 : 해당없음 * 가중·감경사항 : 해당없음 * 총 신고소득 : 95,000천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 부 명의의 토지 누락 3건은 중증재산으로 부친이 고지거부였다가 금번 재심사시 불허되면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 모친의 보험 누락 1건은 이모가 보험업계종사자로써 명의만 빌려서 모친모르게 저축한 것으로 소명 ▷ 문인 채무 과다신고 1건은 변제하였으나, 비교란에 '상환변제'라고 기재만 하고 금액 수정을 하지 않아 과다신고로 신고됨 </div>
※최대 글자수는 1,600자입니다.	※최대 글자수는 1,300자입니다.	※최대 글자수는 1,300자입니다.

○ 심사의견 (작성예시)

글자전하게

○ 순누락금액이 ○○원이나, 본인채무에 대해 변동사유란에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보완명령에 해당
 -본인채무 변동사유란에 변제라고 신고하였으나, 금액 미수정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

※최대 글자수는 1,300자입니다.

○ 심사보고서 출력 옵션

출력구분 표준1 표준2 금액단위 천원 만원

※ 심사보고서 출력 시 소속구분/금액단위를 선택한 후 출력하십시오.
 ※ 출력구분을 '표준1' 선택 시 [정정후 재산총액] 표시되고, '표준2' 선택 시 [전년도 재산총액] 표시됩니다.

○ 심사결과

심무자검토역전	보완명령	위원회심사일자	2019-05-29	보완신고기한일자		심사진행단계	심사보고서작성
위원회결정	보완명령	심사담당자	홍길동				
비고							

※ 최대 글자수는 200자입니다.

○ 심사처분결과계산

- 심사보고서에서 [심사처분결과계산]을 클릭하면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기준 결과’에 자동으로 계산
 - ☞ 실무자검토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계산하기]를 통해 결과반영
- 심사담당자가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선택 후 [저장]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선택된 ‘가감결과’가 심사결과에 반영되고 해당 내용이 [심사보고서]의 ‘심사 참고사항’에 표시됨

✕
심사처분 결과 계산

다시계산하기

다시계산하기
저장

기준	결과	내용
잘못 신고한 금액	보완명령	
비조회성재산	-	
천족사항	-	
경미한사항	보완명령	

※ 가중·감경 적용 대상기준 : 비조회성 재산,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	선택	내용
가중	<input type="checkbox"/>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가중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 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가중	<input type="checkbox"/>	최근 2년 이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가중	<input type="checkbox"/>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감경	<input type="checkbox"/>	최초심사자인 경우 단,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감경 제외

※ 특이사항
 + 가중·감경은 3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보완대상은 그대로 보완명령)

○ 최종처분결과

기준결과	보완명령
가감결과	

○ 심사종결

- 심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결 사항을 등록하면 심사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이 표시됨
- 심사종결 처리된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서관리] 목록에서 ‘심사종결’ 항목이 ‘○’로 표시됨

TIP 재산등록사항 심사 운영지침

- ▶ 재산심사 과정상 필요한 소명요구서(증빙자료 포함), 심사보고서, 메모 등은 반드시 PETI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력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마. 보완신고서 생성

(PETI) [재산심사] - [소명/심사결과관리] - [심사결과 사후처리]

- 심사처분결과가 ‘보완명령’ 이상에 해당되면 등록의무자는 보완신고서 제출대상 이므로 **보완신고서를 생성**
 - 대상자를 선택한 후 [보완신고서생성] 버튼으로 보완신고서 생성
 - ※ 보완신고서는 심사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해당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이후 신고서가 있으면 보완신고서는 생성되지 않음

등록기준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공계구분	심사권한구분	위원회 결정사항	보완신고서 생성여부	제출여부	제출일자	보완신고 기한일자	심사종결 여부
2019-05-13	이공직	70-01-01	인사혁신처			비공계	수임기관	보완명령	미생성	미제출		2020-02-20	○
2019-05-10	박윤리	81-07-07	인사혁신처			비공계	수임기관	보완명령	미생성	미제출		2020-03-19	○

공직윤리업무편람

1997년 10월 초 판 발행
 2001년 11월 중 판 발행
 2009년 2월 중 판 발행
 2012년 8월 개정판 발행
 2014년 1월 개정판 발행
 2015년 6월 개정판 발행
 2016년 9월 개정판 발행
 2020년 6월 개정판 발행

발행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과, 취업심사과

인쇄 : 중 앙 인 쇄

집 필 진

윤리정책과장	재산심사과장	취업심사과장
행정사무관 이 재 원	서 기 관 배 원 초	서 기 관 김 창 주
행정사무관 임 미 영	행정사무관 유 미 란	행정사무관 정 한 기
행정사무관 서 은 희	행정사무관 안 진 숙	행정사무관 최 경 화
행정사무관 김 재 원	행정사무관 구 정 기	행정사무관 김 세 호
전산사무관 이 윤 경	주 무 관 송 성 민	주 무 관 광 미 경
수석책임역 이 광 섭	주 무 관 장 현 근	주 무 관 신 현 주
주 무 관 조 현 주	주 무 관 이 춘 호	주 무 관 임 소 희
주 무 관 홍 유 순	주 무 관 한 재 형	주 무 관 이 승 현
주 무 관 정 선 옥	주 무 관 한 지 은	주 무 관 장 혜 경
주 무 관 이 수 은	주 무 관 이 룰 이	
주 무 관 박 수 진	주 무 관 오 창 훈	
	주 무 관 김 병 흥	
	주 무 관 이 동 규	